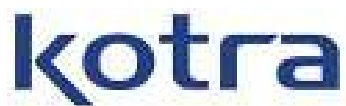


영국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 1. 국가개요 /1
- 2. 정치사회동향 /3
- 3. 한국과의 주요이슈 /7

II. 경제

-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9
- 2. 주요 산업 동향 /12
-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19

III. 무역

- 1. 교역동향
 - 수출입 동향 /20
 -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22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 수입규제제도 /24
 - 대한수입규제동향 /27
 - 관세제도 /28
 - 주요인증제도 /29
 - 지적재산권 /32
 - 통관운송 /35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40
- 외국기업 투자동향 /45
- 우리기업 투자동향 /48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55
- 진출형태별 절차 /66
- 투자입지여건 /74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81
- 조세제도 /86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88

V. 기타 유용한 정보

- 1. 시장특성 /90
- 2. 물가정보 /95
- 3. 바이어발굴 /98
- 4.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98
- 5. 무역,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102
-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104
- 7. 이주정착 가이드 /106
- 8. 출장가이드 /109

United Kingdom



1993 MAGELLAN GeographixSM Santa Barbara, CA (800) 929-4627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영국(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위치	서부 유럽(북해와 대서양 사이의 섬)
면적	244,100km ² (한반도의 1.2배)
기후	서안해양성
수도	런던(London)
인구	○ 총 인구 60,587,300명(2006년 중순 공식 통계 기준) - 잉글랜드 50,762,900명(83.8%), 웨일즈 2,965,900명(4.9%), 스코틀랜드 5,116,900명(8.4%), 북아일랜드 1,741,600명 (2.9%)
주요도시	런던(738만 명), 버밍엄(99만 명), 리즈(71만 명) 글라스고우(57만 명), 셰필드(51만 명)
민족	앵글로색슨 백인(92.1%), 흑인(2%), 인도(1.8%), 파키스탄(1.3%) 등
언어	영어
종교	성공회(영국 국교), 로마 가톨릭, 개신교
건국(독립)일	○ 10세기 통일국가 유지 ○ 1927년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 공식 국호 명칭
정부형태	입헌군주제
국가원수 실권자	○ 국가원수: Her Majesty Queen Elizabeth II - 1926. 4. 21생 - 1952.2.6 즉위 ○ 정식명칭: Elizabeth the Second, by the Grace of God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of Her other Realms and Territories Queen, Head of the Commonwealth, Defender of the Faith ○ 총리(실권자): Gordon Brown - 1951. 2. 20 생 -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우에서 출생, - 에딘버러 대학교 역사학과 졸업. - 1983년 노동당 하원의원 당선. 1997년 5월부터 최장수 재무장관 역임 - 2007년 6월 27일 전총리 토니블레어의 사퇴로 수상 취임

자료: 영국 통계청, 영국 정부, The World Fact book

나. 경제지표

GDP	GDP: 2조 3851억 달러
실질경제성장률	2.9%(2007)
1인당 GDP	31,400 달러
실업률	5.3%
물가상승률	2.2%
화폐단위	영국 파운드(GBP)
환율	£1 = 2118.5원, £1=1.854달러(2008년 9월 23일 매매기준율 기준)
외채	8조2,800만 달러(2006년)
외환보유고	388억3,000만 달러(2006년)
산업구조	1차 산업: 1%, 2차 산업: 25.6%, 3차 산업: 73.4%
교역규모	○ 총 수출(3,571억 파운드): 9.5% 증가 ○ 총 수입(4,081억 파운드): 6% 증가
교역품	○ 수출: 기계류, 자동차, 원유, 항공/선박기기 ○ 수입: 자동차, 사무용기기, 전자, 전기기기

자료: 영국 통계청, 영란은행, The World Fact book

다. 한-영 관계

체결협정	○ 1883.1, 한영 우호통상항해조약 체결 ○ 1884.4, 한영 국교수립(서울에 총영사관 설립) ○ 1900, 주한영국총영사관 공사관으로 격상 ○ 1901, 주영국 공사관 개설(초대 공사 민영돈 부임) ○ 1906, 을사보호조약 체결 후 총영사관으로 격하 ○ 1949.1.13, 영국정부, 대한민국정부를 한반도 내 유일합법정부로 승인 ○ 1950.2.17, 주영 한국공사관 개설 ○ 1955.7.11, 양국, 공사관에서 대사관으로 승격 ○ 1969.12.18, 사증면제협정(60일간 유효, 30일간 연장가능) ○ 1978.2.19, 공업소유권 보호협정 ○ 1978.5.13, 이중과세 방지협정 ○ 1979.3.4,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83.9.22 개정) ○ 1982.7.12, 문화협정 ○ 1984.3.5, 항공협정 ○ 1985.6.14, 과학기술협력협정 ○ 1990.10.24, 항공협정 개정 ○ 1991.11.27, 원자력협력협정(92.5.12 제1차 한영 원자력협의회-런던개최) ○ 1996.10.25(서명), 이중과세방지협정(신협약) ○ 1999.4.20, 사회보장협약(2000.8.1)
교역규모	○ 수출: 12위(68억 7,000만 달러) ○ 수입: 26위(35억 8,100만 달러)
교역품	○ 수출: 기계류, 약제품, 술, 철강 ○ 수입: 전기기기, 자동차, 기계, 고무, 귀금속, 광학기기
투자교류	○ 우리나라의 대 영국 투자 - 1968~2007년까지 우리기업의 영국투자는 누계(총 투자금액 기준)는 534 건, 22억 달러 - 국내기업의 대 유럽 투자는 2001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 다만 동구 유럽 국가의 EU 가입으로 국내 주요기업의 유럽 내 생산기지가 동구권으로 이전하는 추세임. ○ 영국의 대한투자 - 1962~2007년까지 영국의 대한국 투자 누계액 (신고 기준)은 68억 달러를 기록, EU 국가 중 네덜란드 (158억 달러), 독일 (77억 달러)에 이어 3위 - 주요 투자기업: BT(통신), TESCO(유통), PowerGen(에너지), Allied Domecq(주류제조), British American Tobacco(담배), e-Bay(전자상거래), Total Holdings UK(항공), Prudential Corporation Holdings(보험), TI Automatic Holding(자동차부품 제조), AMEC Investments (건설) 등임. ○ 2007년 영국의 대 한국 직접투자(신고기준)는 85건, 3.4억 달러
교민	○ 체류자: 29,000여 명 ○ 정부, 민간지상사 주재원, 유학생 및 동반가족 등 14,000여 명 ○ 어학연수생 15,000여 명 ○ 지역별: 런던(25,000여 명), 기타(10,000여 명)

자료: 영국 정부,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한국 외교통상부

2. 정치 사회 동향

가. 정치 동향

1) 고든 브라운 신임총리 취임 이후 지지율 계속 떨어져

- 영국 역사상 최장수 재무부장관이었던 노동당의 고든 브라운이 높은 지지율 속에 2007 년 6 월 27 일 영국 총리로 취임했다. 그러나, 정치적 악재에 경기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고든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
- 여론조사기관 유거브가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야당 보수당의 지지율은 15 년 내 최고인 45%까지 올라간 반면, 집권 노동당은 보수당보다 13% 포인트 뒤진 32%에 머물렀다.
- 브라운 총리의 지지율은 전례 없는 속도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총리가 일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자와 총리가 일을 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사이의 차이를 측정한 총리의 순 지지율은 취임 초기인 8 월에 48%까지 올랐으나 현재는 마이너스 26%까지 폭 떨어졌다.
- 지난 10 월 이래 조기총선 거부, 모기지은행 노년록의 긴급구제금융 조치, 국세청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차명 정치자금 스캔들 같은 악재들이 줄줄이 터지면서 노동당과 총리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 여기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경기 전망마저 나빠져 10 년 재무장관을 지낸 경제통인 총리의 경제운용능력마저 의심받게 됐다.

2) 고든 브라운 총리의 주요 정책은 교육개혁

- 6 월 28 일 개각 발표에서 새로운 정부 기구로서 Children, Schools and Family 부를 신설하고, 최측근을 장관으로 임명한 고든 브라운 신임 영국 총리는 특히 교육개혁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 교육개혁을 위해 현재 GDP 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교육예산을 10%까지 대폭 늘릴 계획이며,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업을 적극 참여시키기 위해 산-학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2007 년 12 월 11 일 아동·학교·가정부장관은 향후 10 년간 추진할 '교육 청사진' (Children's Plan)을 발표하였는데, 동 계획안에 따르면 교사의 능력 향상에 큰 비중을 두어 앞으로 3 년간 교사 연수를 위해 4,400 만 파운드(약 830 억 원)를 투입할 예정이며, 신임 교사는 반드시 석사 학위를 취득하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과학과 기술·공학 전공의 교사를 늘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교장의 자격 기준도 강화할 것이며, 실력이 떨어지는 교사는 쉽게 퇴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외에 학교에 운영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대신 비용만 축내는 학교는 퇴출하도록 하며, 학생들에 대해서는 개인별 학업 이수 능력에 맞춘 맞춤형 개혁을 추진하고 학교와 전문가·기업·대학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3) 현직 주요 각료 명단

- 총리: Gordon Brown
- 재무부장관: Alistair Darling
- 외무부장관: David Miliband

- 내무부장관: Jacqui Smith
- 보건부장관: Alan Johnson
- 법무부장관: Jack Straw
- 환경부장관: Hilary Benn
- 국방부 및 스코틀랜드 장관: Des Browne
- 국제개발부 장관 Douglas Alexander
- 교통부장관: Ruth Kelly
- 웨일즈/연금부 장관: Peter Hain
- 혁신/대학/기술부 장관: John Denham
- 비즈니스/엔터프라이즈/규제개혁부 장관: John Hutton
- 커뮤니티부 장관: Hazel Blears
- 아동, 학교 및 가정부장관: Ed Balls
- 올림픽 장관(필요한 경우만 내각회의 참석): Tessa Jowell

나. 북아일랜드 관련 동향

- Blair 수상은 아일랜드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을 기반으로 북아일랜드 신·구교계 주요 정파들과의 협상을 주도하여 98년 Good Friday Agreement를 타결 시키고, 이에 의거하여 신·구교계 정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북아일랜드 자치정부를 출범시켰다.
- 그러나 IRA에 의한 북아일랜드 자치정부 비밀문서 탈취사건을 둘러싼 신교계와 Sinn Fein 측간 대립 격화로 2002년 10월 북아일랜드 자치정부의 기능이 중단되고 영국의 직접통치체제에 돌입하였으며, 신·구교계 간의 갈등지속 및 2003년 5월로 예정된 총선에서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신·구교계 제정파의 강경입장 고수 등으로 자치정부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었다.
- 2003년 4월 IRA 측은 민병대 활동 중단 및 무장해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으나, Blair 수상은 민병대 활동의 전면중단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 부재를 이유로 북아일랜드 총선을 2003년 가을로 다시 연기하였다.
- 2003년 11월 26일 마침내 실시된 총선에서 Sinn Fein 측과 어떠한 형태의 협상에도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신교계 강경파인 DUP 측이 최대 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총선 이후에도 자치정부 정상화에 별 진전이 없자 Blair 수상과 Ahern 수상은 막후에서 제정파를 설득, 협상에 참여토록 독려하여 2004년 9월 16~18일간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협상은 별 성과 없이 종결된 바 있다.
- 2003. 11 총선 정당별 득표현황: () 1998년 선거 시 의석 수
 - DUP(Democratic Unionist Party, 강경 신교계): 30 석(20 석)
 - UUP(Ulster Unionist Party, 온건 신교계): 27 석(28 석)
 - Sinn Fein (IRA의 정치단체): 24 석(18 석)
 - SDLP(Social Democratic and Labour Party, 온건 구교계): 18 석(24 석)
 - 기타: 9 석
- 2005년 5 하원 선거 시 총 18석인 북아일랜드에서 DUP 9석, Sinn Fein 5석, SDLP 3석, UUP 1석을 각각 획득, 신교계와 구교계 모두 강경파가 득세함에 따라 북아일랜드 평화 과정에 난관이 예상됨.

다. 대외 관계

1) 테러와의 전쟁 및 대 이라크 전쟁

- 영국은 2001 년 9 월 11 일 미국에 대한 테러사건 이후 미국의 전통 우방국 입장에서 대 테러 전쟁 관련 미국의 정책 및 입장을 강력 지지하였다. 아프간 탈레반 정권 붕괴 이후 2002.6 월 국제안보지원군(ISAF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주도 다국적군에 1,800 여 명의 대 테러 작전부대를 파견한 바 있다.
- 영국 정부는 UN 안보리 결의 1441 및 그 이전의 결의에 따라 이라크가 자발적으로 WMD 를 제거해야 하나, 동 이행을 거부한 사담 후세인 정권의 WMD 제거를 위해 군사 행동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따라 45,000 명의 병력을 파견, 미국의 최대 동맹국으로 이라크전에 참전하였다.
- 2007 년 12 월 16 일 영국군은 이라크 남부 바스라 주의 치안 유지권을 주둔 5 년 만에 이라크 정부로 이양함으로써 영국군 관리 아래 있던 이라크 4 개 주의 치안권을 모두 이라크 정부로 넘겼다. 바스라 주 주둔 영국군은 5,000 명 정도이나, 지난 10 월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이를 내년 중반까지 2,500 명 정도로 감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한편, 아프가니스탄 문제와 관련해서 고든 브라운 총리는 군사행동에서 벗어나 탈레반과 대화론으로의 선회를 공식 천명하였다.

2) 대 유럽정책

- EU 확대 및 통합 관련, 전 유럽의 안보 및 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에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입장 및 중심역할을 추구하고 있다.
- EURO 가입 문제는 국민여론을 감안 신중히 추진 중이다.
 - 5 가지 경제적 조건 충족 여부 평가 후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 예정
 - 5 개 경제조건
 - 수렴성(convergence): 영국 경제와 유로권 경제간 경기 순환, 이자율 등이 상호 비슷한 수준일 것
 - 유연성(flexibility): 영국 정부가 유연하게 경제 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을 것
 - 투자: 유로 가입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기여할 것
 - 금융: 런던의 금융 서비스 산업이 계속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 고용과 성장: 고용 및 성장 증대에 기여할 것
- EU 제도개혁 관련, EU 의 효율성 증대 및 자국 이익증대 사이에 균형적 추구 입장을 밝힘.
 - 특히, 가중다수결제도 적용을 조세·사회보장, 국방, 외교 등 주권과 관계된 분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견지, EU 헌법 조약안에 영국 측 입장 반영
 - 농업보조금 대폭 감축 등 공동농업정책(CAP) 개혁 적극 주장
- EU 장래 문제와 관련, EU 가 개별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Superstate 가 아닌 Super power 로 발전하기를 희망하면서 EU 정상회의 및 EU 의회의 권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3) 대 미주정책

- 미국·캐나다와는 민주주의 및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특별동반자 관계 유지 및 강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미국과의 관계 강화가 유럽 및 영국의 안보와 번영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인정, NATO 및 UN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특히 핵, 국방, 정보분야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관계 유지하고 있다.
 - 미국의 MD 계획 추진관련, 현재는 Fylingdales 공군기지의 레이더 시설을 미군측이 이 용토록 협력하는 수준이나, 향후 MD 계획의 발전 여하에 따라서는 전면적인 참여 가능성이 상존한다.
- 경제분야에서도 영·미 양국은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하고 있다.
 - 영국은 미국 내 최대 투자국(825 억 파운드 투자)이며, 미국의 영국 내 투자는 유럽 전체 투자 중 약 40%를 차지한다.
-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발전 지원을 통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 중이다. (이 지역에서 영국은 미국 다음의 최대 투자국)

4) 대 아시아 정책

- 1997.7 홍콩 이양 이후 중국과 새로운 협력관계 수립 노력 중이다.
- 일본과의 기존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 아시아에서의 경제 실리 추구하고 병행, 도덕외교 정책 추구를 견지하는 입장이다.
 - 동티모르, 미얀마 인권문제 등에 적극적인 관심

5) 대 중동정책

- 동 지역의 안정 및 평화달성에 적극 기여를 추진하고 있다.
- 중동평화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Quartet 의 노력을 지지하면서, 특히 미국에 대해 중동평화 road map 이행 등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라. 주요 국제 문제에 관한 입장

1) 인권문제

- 영국 정부는 인권문제를 외교의 중심과제로 설정, 다자 및 양자차원에서 인권가치, 시민자유권,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
 - 영국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고 여타 국가들에게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외교정책이 민주주의, 정의, 법의 지배 등 국제사회의 공통 가치 보호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 테러리즘 및 WMD

- 9.11 테러 이후 영국정부는 국제테러리즘으로부터 국민과 재산 보호를 외교 정책을 최고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 테러리스트들이 WMD 를 이용한 테러를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규정, 이를 막기 위하여 WMD 및 관련 물질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 EU 회원국간 그리고 EU 와 미국간 또한 UN 차원에서의 위협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강화
 - 수단, 코소보 등 주요 분쟁해결을 지원, 테러리즘 및 WMD 사용 요인 제거
 - 아프간 및 이라크 재건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 제공
 - 이란 및 북한의 핵개발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
 - EU 회원국 및 미국과 협조하여 아랍세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아랍세계의 평화적 정치·경제 개혁 증진
 - 재래식 무기와 WMD 및 관련 기술, 물질에 대한 다자 수출통제 체제 강화
 - 국내외 국민 및 자산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 비상사태 시 인명과 재산보호 및 구조능력 증진을 위해 국제적 협조 체제 강화

3) 지구환경보존

- 지구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환경변화, 생물다양성, 에너지 보존, 주요자원 공급, 유해화학물질 문제 등에 적극 대처

4) 아프리카 빈곤문제

- 국제원조
 - 2005~2006 년간 아프리카에 대한 연간 원조액을 10 억 파운드로 증가하였다.
 - 콩고, 이디오피아, 가나 등 16 개국을 중점 대상국가로 지정, 분쟁해결, 재건, 경제 원조, AIDS 척결, 빈곤퇴치, 부패방지 등 문제의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 아프리카 위원회
 - 아프리카 위원회는 Blair 총리의 발의로 2004 년 2 월 창설, 전세계에 대한 아프리카의 참여 증진을 위해 전문가, 행정가의 회합을 도모
 - 2004.5 월 런던에서 회의 개최
 - 2004.10 월 아디스아바바에서 회의 개최
 - 2005 년도 보고서 발간

(자료: 재영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양국 간 항공편 증편

- 2001년 6월 한.영 항공회담 시 양국은 한국 측의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는 시점에 양국 간 항공편을 현행 5회에서 8회로 증편할 것을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06년 8월 이후 대한항공은 런던-서울간 매일 운항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아시아나 항공은 화, 목, 토, 일 4회 운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Convention) 발효

- 1995년 3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동 협정체결에 합의하고 1999년 4월 양국 정부 간 서명을 거쳐 2000년 8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 동 협정체결로 영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상사주재원이 지금까지 이중으로 납부하여 온 사회보장세(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가 면제되어 연간 약 65억 원의 세금면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 한국 운전면허증이 영국 면허증으로 교환될 수 있도록 1996년 4월부터 영국정부와 교섭하여 온 바, 지난 2001년 4월 말 양국간 원칙적 합의(1997.1.1 이전 면허에 대해 5년 무사고 증명 조건부)에 도달하였다.
- 2002년 3월 조건부 운전면허증 교환이 영국 국내 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1997년 전후를 불문하고 조건 없이 우리 운전면허증이 영국 면허증과 교환될 수 있도록 재교섭한 결과, 한.영 양국은 2002년 9월 20일 동 방안에 합의하였으며, 이로 인해 영국에 거주하는 우리 상사 주재원, 교민의 생활의 불편 완화는 물론 양국 간 경제·통상·투자 활동 증진과 인적 교류에 기여하고 있다.

라. 최근 주요 인사 교류 현황

- 2004.12 노무현 대통령 국빈 방영
- 2006. 1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방영
- 2006. 6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방영
- 2006.10 존 프레스콧 부총리 방한
- 2007.1 국제의원연맹 (IPU) 대표단 방영 (단장 유재건 의원)
- 2007.3 박명재 행자부장관 방영
- 2007.4 존 메이저 전 영국총리 방한
- 2007.5 권오규 경제부총리 방영
- 2007.5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방영
- 2007.5 영국 의회대표단 방한 (상원의원 존 커 경 등)
- 2007.7 이용섭 건교부장관 방영
- 2007.9 이용훈 대법원장 방영
- 2007.10 남기명 법제처 장관 방영
- 2007.11 김우식 과기부총리 방영

(자료: 주영 한국대사관)

마. 한국 문화원 개관

- 영국의 수도 런던에 한국문화원이 문을 열었다. 런던 중심가 트라팔가 광장 인근에 자리잡은 문화원은 2008년 1월 30일 개원식을 갖고 한국 문화 전파에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거시경제 지표

1) 주요 거시 경제 지표(2007년)

- GDP: 2 조 7,591 억 달러
- 1 인당 GDP: 31,400 달러
- 경제 성장률: 3%
- 실업률: 5.3%
- 물가상승률(CPI): 3.0% (2008 년 5 월 기준)
- 환율: £ 1 = 2,032 원, £ 1 = \$1.972 (2008 년 5 월 30 일 매매기준율 기준)
- 무역수지: 1,110 억 달러 적자

(단위: 십억US 달러, %)

	2003	2004	2005	2006	2007*
GDP(GBP기준)	1,118.20	1,184.30	1,234.00	1,301.90	1,377.80
GDP(US\$ 기준)	1,825.80	2,168.30	2,243.60	2,395.50	2,759.10
실질 GDP 성장률	2.8	3.3	1.8	2.8	3
물가인상률(CPI)	1.4	1.3	2	2.3	2.4
수출	307.8	349.7	384.3	450.3	415.6
수입	387.3	461.1	509.4	604.2	595.6
수지	-24.5	-35.2	-55	-88.1	-111
외환보유액(금 제외)	35.3	39.9	38.5	40.7	
환율(달러 대비)	0.612	0.546	0.55	0.543	0.499

주: * 2007년은 잠정

자료: 통계청, EIU

2) 영국의 경제성장지표 및 향후 전망

(단위: 전기 대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GDP성장률	1.8	2.2	3.5	1.8	2.7	2.9
소비	3.3	2.3	3.1	1.6	2.3	3.3
투자	2.6	2.2	6.0	4	3.5	5.3
수출	0.1	0.9	2.2	4.9	4.6	△4.5
수입	4.1	1.8	4.3	4.8	3.9	△2.9
물가(CPI)	1.3	1.4	1.6	1.9	2.4	2.3

자료: 영국 통계청 및 재무부

나. 최근 경제 동향

1) 경제 성장세, 소폭 둔화 조짐

- 전년에 이어 2007년 들어서도 경기 상승기조는 계속되어 3/4분기중 전기 대비 0.7% 성장하였다.
- 성장은 투자와 가계소비가 견실한 신장세를 지속한 데 기인한다.
- 그러나 8월까지 활발한 모습을 보이던 주요 산업활동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9월 이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특히 11월에는 그간 성장을 주도하던 서비스업 및 건설업 둔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실업률은 경기호조 및 이에 따른 서비스업 등의 고용 증대에도 불구하고 2005년 4/4분기 이후 5%대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
- 실업률 상승은 동구권 저임금 노동력 유입, IT분야의 해외 아웃소싱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영국의 실업률 변동 추이

(단위: %)

2005					2006					200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4.7	4.7	4.8	5.1	4.7	5.2	5.5	5.5	5.5	5.4	5.5	5.4	5.4	5.2	5.4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ONS)

2) 물가 상승세 완화

- 물가는 2006년에 이어 2007년 들어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여 3월에는 소비자 물가(CPI) 상승률이 1992년 10월 물가안정 목표제 도입 이후 최고치(3.1%)를 기록한 후 오름세가 다소 완화되었다.
- 신용팽창과 함께 소비지출이 호조를 지속한 데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물량 감소에 따른 음식료품 가격 오름세가 상승을 주도하였다.
- 10월 물가는 가스, 전기 요금 인하효과에도 불구하고 유류 및 음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상승하였다.

3) 주택가격 상승세 크게 둔화

- 2006년에 이어 금년 들어서도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2007년 9월 이후에는 고금리(2.5%→ 5.75%),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문제에 기인한 신용경색 등의 영향으로 내림세로 돌아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 그간의 주택가격 상승세는 금융기관간 모기지 대출경쟁 심화, 임대용 매입(buy-to let) 수요 증가, 이민자 증가 등에 기인한다.

주택가격 상승률 추이

	2006				2007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0월	11월	12월
주택가격 상승률 (전월 대비, %)	1.0	△0.8	1.1	△1.3	1.2	0.4	△0.6	△0.7	△1.3	1.4

자료: Halifax and Bank of Scotland

4) 경상수지 적자 지속

- 경상수지 적자기조(2006년 중 419억 파운드, GDP 대비 3.2%)는 2007년 들어서도 지속되어 3/4분기중 상품 및 서비스 수지 적자는 140억 파운드를 기록하였다.
- 이는 유류 수출입 적자규모 증가 등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폭 확대에 기인한다.

다. 2008년도 경제 전망

1) 2008년 경제 성장률 2.0% 내외 전망

- 2008년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금융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2007년에 비해 크게 둔화된 2.0%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신용경색 등에 따른 경기둔화 현상이 2007년 4/4분기 이후부터 가시화되면서 가계 소비 및 기업투자 증가세가 다소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소비자물가는 2%를 다소 상회할 전망

- 소비자물가(CPI)는 원유 등 국제원자재 및 음식료품 가격 오름세를 소비 및 투자 수요 증가세 감소가 상쇄하면서 영란은행 목표치(2%)를 다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3) 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음

- 영란은행 정책금리는 최근까지 5.75%까지 인상하였다가 지난 연말 이후 재인하를 통해 현재 5.0%를 유지하고 있다.
- 최근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주택가격 하락세 전환 등 성장세 둔화로 지속적 인하가 요구되는 반면, 최근의 인플레이션 우려 확산으로 그 정책 결정의 완급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 2008년의 잠재적인 영국경제 불안요인

- 기업의 가격인상을 자극하는 임금인상, 원유가 급등세의 재현, 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 오름세의 지속 등 공급측면에서의 물가상승 및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확산
- Northern Rock 사태 및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영향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금융서비스업 활동이 부진해질 가능성

- 주택가격 하락세 심화, 기업투자 및 가계소비 위축 등에 따라 성장세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될 가능성 등

영국의 2008년 경제성장 전망

(단위: %)

	2006	2007	2008 ¹⁾
GDP 성장률	2.8	2.9	2.0
(제조업)	1.5	0.8	0.7
내 수	3.0	3.3	2.0
(민간소비)	1.9	2.9	1.8
(정부소비)	2.4	1.9	2.2
(고정투자)	7.5	5.3	2.6
수 출	11.6	△4.5	3.9
수 입	11.8	△2.9	3.6
경상수지(억 £)	△478	△434	△462
물가(CPI)	3.0	2.0	2.1

주: 전망치

자료: HM Treasury

2. 주요 산업 동향

가. 전체 산업 구조 개관

영국은 무역과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를 토대로 경제대국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농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완전 탈피하여 2%이하의 노동력 투입을 통한 생산이 전체의 약 60%에 달하고 있어 그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풍부한 석탄, 천연가스, 오일을 보전하고 있어 에너지 생산이 전체 GDP의 10%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은행, 보험, 비즈니스 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은 영국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으로 GDP내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주요 산업별 성장률

산업		2004	2005	2006
1차산업	농, 수산, 임업	-2.1	-1.0	-1.8
생산	광업, 오일, 가스발굴	-5.1	-7.9	-8.0
	제조업	0.2	2.0	1.2
	전기, 가스, 수자원 공급	1.6	1.1	-3.8
	총계	-0.3	0.8	-0.1
건설업		4.7	4.0	1.1
서비스	호텔, 요식업	3.8	5.2	3.3
	교통, 통신	1.9	2.5	2.9
	금융, 사업지원	3.9	5.1	5.4
	공공서비스	2.4	2.0	2.1
	총계	3.2	3.9	3.7
전체		2.7	3.3	2.7

자료: 통계청

나. 2008년 산업 동향

- 전년도 활발한 모습을 보이던 주요 산업활동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특히 그간 성장을 주도하던 서비스업 및 건설업 활동 둔화 양상이 뚜렷이 보이고 있다. 반면 제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산업활동 동향

(PMI¹⁾ 지수, 기준치 = 50)

	2006				2007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8월	9월	10월	11월
제 조 업	50.8	55.1	54.4	51.9	54.4	54.3	56.3	55.1	52.8	54.4
서비스업	57.4	58.7	57.0	60.6	57.6	57.7	57.6	56.7	53.1	52.9
건 설 업	54.7	50.8	53.6	57.5	58.9	60.1	64.8	60.3	57.4	54.3

주: PMI는 Purchasing Managers Index

자료: Chartered Institute of Purchasing & Supply(CIPS)

다. 영국의 산업별 비중

- 1 차 산업: 1%
- 2 차 제조산업: 25.6%
- 3 차 서비스산업: 73.4%

라. 영국의 주요 산업 소개

1) 핵심 산업 요약

□ Automotive

영국은 유럽 내 5대 자동차 생산국가로 8개의 자동차 생산업체와 500개 이상의 관련 업체들이 존재하고 있다. 세계 20대 자동차 부품 회사 중 17개사가 영국 내 생산 설비를 구비하고 있으며 엔진 디자인과 독립적인 애프터마켓에 특히 강점을 지니고 있다. 영국의 자동차 산업 관련 총 수출액은 연 200억 파운드를 초과한다.

□ Biotechnology

유럽 내 바이오테크놀로지 산업의 주도하고 있다. 유럽 내 바이오테크놀로지 업체 중 3/4 정도가 영국 회사로 추산되며 The Bio-industry Association에 따르면 유럽의 바이오 테크놀로지 시장은 약 600억 파운드 규모이다.

□ Pharmaceutical

영국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 중 하나로 120억 3,710만 파운드 수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대표적 인 고용시장으로 약 83,000 명의 직접 고용 창출하고 있다.

□ Electronic & IT Hardware

디지털 카메라, 휴대용 게임기,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등 첨단 전자제품의 소비가 꾸준히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컴퓨터 하드웨어 시장 또한 꾸준한 성장을 보이며 118억 2,000만 파운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최근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75%의 영국 성인인구가 집에 컴퓨터 보유하고 있으며 53%의 성인이 집에서 인터넷 접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영국 내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는 대략 800만 명에 이른다.

□ Broadcast Technology

영국이 세계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약 200개의 관련 회사가 존재하며 방송 기술과 방송가전제품을 통해 각각 약 8억 9,000만 파운드와 25억 5,000만 파운드의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현재 디지털 TV 시장에 있어 66%의 가구 보유율을 나타내는 성장 분야이다.

□ Telecommunications

현재 6,000만 명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이동통신회사인 보다폰과 BT 등 유수의 기업들이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유럽시장은 세계 최대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고로 한 해 약 1억 4,400만 개가 판매되고 있으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 금융업

영국 런던 금융시장은 뉴욕, 동경과 더불어 세계 3대 금융시장으로 유럽 내에서는 제1위 시장이다. 뉴욕과 동경 금융시장이 자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에 기반을 두고 성장한 반면, 런던은 국제 도매금융을 기반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타 금융센터에 비해 외국 금융 기관의 역할과 비중이 크다.

영국 런던 금융시장은 Bank of England 본점 건물을 중심으로 Tower of London, Liverpool Street, Holborn, Embankment 를 잇는 1평방 마일 면적의 City of London 에 형성되어 있다. 세계 최대 외환 및 국제 주식거래 시장으로 외환거래액의 32%, 국제 주식거래의 59%를 점유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 최대 펀드매니지먼트 센터로 기관투자자의 주식 보유액이 1조 8,000억 달러 상회하는 세계 4위 보험시장이다.

3) 에너지산업

영국은 천연석유 및 가스, 석탄 등 다양한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는 유럽 내 자원 강국 이다. 1980년대 후반 가스 부문을 필두로 시작된 에너지산업 민영화에 따라 1999년 5월까지 전기, 석탄, 원자력 부문이 모두 완전 민영화되었다. 특히 전기산업의 경우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가정용 전기 판매업을 완전 개방, 각 가정은 원하는 전기공급 업체를 선택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내외국인 무차별 정책에 따라 지역 전기공급 업체들의 상당수가 외국 기업, 주로 미국기업들에 인수됨으로써 상당 수준의 민간경쟁 체제 하에 운영되고 있다.

영국 정부의 기본 에너지정책은 '민간 자율경쟁을 통해 다양한 에너지원을 경쟁적인 가격에 소비자에 안정공급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영국 전체 에너지 소비량은 약 25,000만 톤(석유단위 기준)으로 교통, 운송용 32%, 산업용 20%, 주거용 32%, 상업·농업·공공 서비스 12.8%, 비 에너지부문 사용이 7.7%를 차지하고 있다.

4) 유통업

영국의 전체 소매판매액은 연간 약 2,000억 파운드(약 380조 원 규모)정도 규모가 되며, 그 가운데 식료품 소매판매가 전체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영국에는 부가세 납부 기준으로 약 20만 개 정도의 소매업자가 소매유통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다수는 영세규모로 전체 소매 유통업체의 약 85%가 연간 매출액이 50만 파운드(약 9억 원)이하이다. 1% 미만의 유통 업체가 연간 매출액 500만 파운드 이상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 소매유통구조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는 반면, 0.1%미만의 유통업체가 100개 이상의 아웃렛(매장)을 가진 소매업체로 전체 소매 매출액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90%가 하나의 상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단일 상점 운영 소매업체가 전체 소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전체 소매업체수는 90년대 들어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소매업체수가 감소에도 불구하고 초기 시장 진입장벽이 타 산업이 비해 낮은데가 최근 인터넷을 활용한 소매업체 등장으로 업체간 시장경쟁은 매우 치열해지고 있다.

5) 전자부품, 반도체 시장 동향

유럽 전자부품 시장은 대략 106개의 회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약 226,000명 정도의 직접 고용효과 및 477억 유로의 시장 가치를 지니며 이는 세계시장의 19% 수준이다.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 부문 시장이 전체의 51%를 차지한 가운데 Automotive, 소비가전, 산업 부문 순으로 점유율을 유지한다.

EU내의 통계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우선 'EU15' 외의 국가들의 성장세가 크게 돋보이고 있으며 특히 영국(아일랜드 포함)의 경우 15억 유로 성장으로 총 100억 유로를 돌파함으로써 22.51%의 점유로 1위 독일을 근소한 차로 추격하고 있다.

한편, 세계 반도체 시장의 굴곡이 심한 시장주기에 불구 유럽시장은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약 350억 달러 내외의 시장규모로 추산된다. 제품별 반도체 시장을 분석해보면 DRAM이 +48.3%, Flash EEPROM이 +26.5%, Special Purpose Logic이 42.8%, Micro controllers가 +33.7%, Optoelectronics가 +64.5%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유럽 내 반도체 시장의 큰 특징은 제품수명주기의 급격한 단축과 지속적인 가격인하로 인한 세계시장의 공격적인 압력으로 보다 속도감을 더한 혁신적인 시장이 형성된 것을 들 수 있다.

반도체 생산 공정의 복잡성과 높은 투자 부담(약 20억~30억 유로)으로 인해 생산업체 극히 제한되어 있어 2005년 기준 22개 회사가 유럽 전체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다.

최근 영국 시장의 추세는 직접적인 칩 생산보다는 SoC(System-on-chip) 등 차세대 칩 디자인이나 코어 개발을 통한 혁신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IP) 판매 및 라이선싱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System-on-chip 솔루션이나 나노기술 등과 같은 보다 기술집약적인 분야에 대한 성능향상에 집중하고 있으며 영국의 전자 칩 업체들은 차세대 반도체 개발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 공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 각종 산업의 화두인 컨버전스 추세와 각종 휴대 전화기나 디지털 카메라, 이동형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등 모바일기기의 확산에 따라 성능 향상과 소형화 추세로 인해 SoC 시장의 확대가 예상된다.

영국은 유럽 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디자인 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대략 9,500만 달러 규모로 유럽 전체 전자 디자인 판매이익의 60%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영국은 스코틀랜드에 세계적인 SoC 개발센터인 알바(Alba)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1997년 반도체, 전자제품 설계기술의 세계적 중심지 육성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세계적인 해외기업과 투자 유치 성공의 예로 들 수 있으며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인 ISLI과 지적재산(IP) 판매소인 VCX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 외 영국 내에는 유럽 내에서 최대 수준의 전자 시스템 관련 약 150개의 독립 디자인 하우스가 존재하며 최근 동 분야는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대표적인 영국 내 대형 디자인 하우스로는 Plextek, Cambridge Consultants, Generics, Cadence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RF,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전반적인 전자부품 디자인을 주도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유통시장은 제조업체들이 집중되어 있는 The North East, Central Scotland, South Wales 등에 위치하고 있다.

6) 정보 통신 산업 동향

영국의 정보통신시장은 Ofcom(the Office of Communications)이 통제 관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 기관은 정보통신시장 전반에 걸친 전략수립 및 검토를 담당하고 있다.

영국의 통신시장은 가격 경쟁의 심화와 강화된 가격 규제 그리고 새로운 기술 개발 압력 등으로 둔화된 성장세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6년도에도 2.7%의 성장을 통해 546억 7,000만 파운드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추산된다.

유선통신 부문의 축소가 계속되는 가운데 무선통신 부문이 가장 큰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 부문은 인터넷 서비스 부문과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G 서비스가 무선통신 시장의 발전을 주도 해 나갈 것으로 여겨지며 비디오 메시지, 비디오 텔레포니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무선 데이터 서비스와 광대역 ADSL 등이 주요 성장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는 한편 '유무선 컨버전스'도 또 다른 시장의 화두로 등장하며 이미 브리티시 텔레콤이 유무선 복합 전화 단말기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신사업 규제완화 정책의 영향으로 200개 이상의 기업들이 국내 혹은 국제 통신사업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규모가 큰 기업고객에게 국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우 영국의 이동통신 시장은 지난 5년간 8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총 6,000만 명을 넘어 선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국의 이동통신 시장은 휴대폰이 선두를 유지한 가운데 Orange, O2, T-mobile이 그 뒤를 따르고 있으나 가입자 수 기준으로는 T-mobile이 Virgin을 포함하여 약 1,600만 명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인터넷 시장의 경우 현재 영국 성인인구의 75%가 집에 컴퓨터 보유하고 있으며 2005년 말 영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약 64%의 성인 (약 2,900만 명)이 최근 3개월 내 기간에 인터넷 접속을 하였으며 총 92%의 성인인구가 한 번 이상의 인터넷 접속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53%의 성인이 집에서 인터넷 접속을 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약 1,300만 가구에 해당된다.

ISP review에 따르면 영국 내에는 총 730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ISP가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 방식에 따라 141개의 비정량제 다이얼업 접속 ISP와, 가입비 없이 로컬 전화요금을 부과하는 다이얼업 접속 ISP 229개, 로컬전화요금 및 가입비 부과 다이얼업 접속 ISP 63개, 무선 ISP 43개, ADSL ISP 209개, 그리고 3개의 케이블 모뎀 브로드밴드 공급업체와 45개의 위성접속 ISP 등을 포함하고 있다.

7) 제약산업

현재 영국의 제약 산업 전반은 주로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그들이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의 수는 70,000여 명, 여기에 직간접적인 모든 고용인구를 합친 수는 25만 명에 이른다. 또 한 해에 투자되는 연구비만 해도 £3.3bn수준이며 R&D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만해도 27,000명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연구기술이 핵심적인 산업이다. 또한 1만8,400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약 310개의 중소 생명공학 회사들이 있으며, 보다 넓은 의미의 생명과학계까지 포괄하면 430여 개의 회사와 약 23,000명을 추가할 수 있다.

영국의 제약시장은 정부의 의료보험 비용 감소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120억 3,710만 파운드 수출을 기록하고 있다.

8) 의료기기 산업

영국은 세계에서 5번째이자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의료기기 시장이며, 매년 시장이 계속 팽창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예측으로는 2006년에는 평균 8.8%, 그리고 2008년에는 9.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영국의 의료시장의 특징은 의료기기부터 의료 소모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세분화 되어있으며, NHS(영국국가의료시스템)이 전체 의료기기 시장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관리형 시장인 것이 특징이다. 정부에서는 현재 많은 기금을 들여 구조를 개혁하고 병원 및 시스템의 현대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Private Finance Initiative를 통한 민간부분의 의료시스템도 발전하는 추세이다.

영국의 의료기기 시장은 2006년 기준 약 33억 파운드 수준으로 이는 2007년에도 8%의 성장을 통해 36억 파운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세계 시장의 약 3%에 해당된다.

9) 디자인 산업

영국 내에는 185,500 명의 디자이너가 활동 중에 있으며 이 중 61%가 남성, 60%가 40 세 이하인 것으로 확인 되고 있으며 백인 남성이 주도적인 가운데 6%만이 소수 인종인 것으로 확인된다.

총 116 억 파운드 규모의 매출액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중소기업의 업체들이 대부분으로 약 60%의 디자인 업체들은 종업원 수가 5 명 이하이며 80%의 업체들이 10 만 파운드 이하 규모의 매출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 & 멀티미디어 관련 디자인 업체가 29,177 개로 14,841 개인 제품/산업 디자인 업체보다 거의 두 배수가 많다.

10) 영화 산업

영화 산업은 영국 GDP에 31억 파운드의 매출 (텔레비전, 비디오/DVD 판매 제외)을 공헌하고 있으며 8억 5,000만 파운드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간접적으로도 관광산업의 진작을 통해 8억 파운드의 경제 공헌 효과를 올리고 있으며 비디오/DVD 등의 판매를 통해 3억 파운드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영화산업 내 활동분야별 매출을 살펴보면 지난 2002년 기준 배급/상영부문이 23억 6,300만 파운드로 전체의 66.6%로 가장 높은 점유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제작부문이 8억 8,000만 파운드 (25.1%), 포스트프로덕션 부문이 1억 5,300만 파운드(4.3%), 프리프로덕션 부문이 1억 4,000만 파운드(3.9%)시장을 형성한다.

특히 영국의 영화 포스트프로덕션 산업은 미국, 뉴질랜드와 함께 세계 3강 중 하나로 빠른 성장을 통해 2004년에는 그 매출을 약 3억 7,000만 파운드까지 끌어 올렸으며 이는 전체 영국 산업 중 포스트 프로덕션 부문의 14%, 영국 영화 산업 전체 매출의 16%에 해당된다

영화 판매 산업은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으로 현재 35개의 기업들이 존재하며 7개의 외국 기업과 28개의 영국 소유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11) 해양기기/ 조선 산업

영국의 해양기기산업은 상업용 선박, 군함, 레저용 보트의 프로펠러부터 내비게이션까지 다양한 품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약 1만7천명이 종사하며 총 부가가치는 약 24억 9,000만 파운드 수준으로 연 매출액은 약 17억 파운드로 이 중 62%정도를 수출하고 있다

조선 산업의 경우 선박 수리 산업을 포함 약 2만 5,0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19 억 5,000만 파운드 수준이다. 동유럽이나 한국, 중국 등으로부터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상업용 부문에 있어서의 대형 조선소가 아직 운영 중이며 Portsmouth, Plymouth, the Clyde, Barrow, the Tyne and Rosyth 등에서 향후 해군 함정 조선 거대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어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영 보트 제조산업 또한 내 약 1만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약 7억 7,000만 파운드의 연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수퍼요트’ 부문의 시장 내 중요도가 급상승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영국 내 업계 선두 업체로는 Sunseeker, Princess Yachts, Fairline, Sealine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의 영국 시장 점유율은 80%에 이른다.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EU FTA 추진현황

영국은 EU회원국으로서 단독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EU집행위가 회원국으로부터 협상권을 위임 받아 제 3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모든 EU회원국은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내용을 적용한다.

1) EU의 FTA 정책

EU의 기본적 통상정책 방향은 새로운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시장을 개방하고 유럽산 상품 서비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해외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EU의 통상부문 중점 추진 과제는 자유무역 및 시장개방, 해외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DDA협상에서의 균형된 결과 도출, MERCOSUR, GCC(걸프협력회의), ASEAN 등 지역협력체와의 FTA 추진, 지적권, 투자, 정부조달 시장접근개선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FTA 추진과 관련, EU는 MERCOSUR, GCC와 같은 지역협력체와 FTA 협상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ASEAN, Andean, 중미국가들과의 FTA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WTO에 가입할 경우 관계를 심화시켜 나갈 예정이며 조달시장 개방관련 EU 기업에 조달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EU 시장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2) EU의 FTA의 주요 특징

□ 지중해지역과의 경제통합 가속화

EU는 현재 9개 지중해국가(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튀니지,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시리아)와 양자 FTA를 체결한 상태이며 2010년까지 지중해 지역 국가들과 양자 FTA를 지역간 FTA(Euro-Med Agreement)로 확대하여 서비스 및 투자부문까지 자유화를 추진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EU 집행위는 2006년 이라크와 무역협력협정(TCA)을 위한 회담 개시를 2005년 말 제안한 바 있다.

□ MERCOSUR와의 협력 강화

2000년 4월 지역간 협력을 위한 첫 회담 개최 이래 지금까지 16차례 회담을 가졌으며 이후 잠시 교착상태를 보였다가 2005년 9월 2일 장관급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MERCOSUR와의 정치적 경제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이래 기술적인 차원에서 토론이 계속되고 있다.

EU는 MERCOSUR에 있어서 세계 최대의 무역지대로 무역비중이 22.9%에 이른다. 양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인구 7억 명의 세계최대의 공동시장이 탄생될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은 기술적 협의에 그치고 있으며 실질적인 협상은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 한-EU 기본협력협정, 신 가입국에 확대 적용 의정서 체결

한-EU 기본협력협정의 신규 10개국에 대한 확대 적용 의정서가 2005년 11월 16일 브뤼셀에서 체결되었다.

한-EU 기본협력협정은 1996년 10월 28일 우리나라와 EU 간 체결된 것으로 2001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2004년 5월 1일 EU 회원국으로 중동구 등 신규 10개국이 확대되면서 동 기본협력협정의 확대적용을 위해 동 의정서를 체결하게 되었다.

한편, 2007년 5월부터 한국과 EU는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EU의 FTA 추진현황

	기체결	협상 중	검토 중
국가	EU, EFTA, 유로-지중해 협정 멕시코, 터키, 칠레, 남아공	MERCOSUR, GCC, 한국	ASEAN, 러시아, 인도, 우크라이나, 중남미 6국, 안데안 4국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영국의 주요 수입상대국은 독일,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중국 순으로, 수출대상국은 미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으로 나타나는 등 영국은 EU 역내국과 교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영국의 주요 교역품을 살펴보면 주요 수입품목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원유 및 기타 오일류, 자동차 전산 기기 등이며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의약품, 원유 및 기타 오일류, 터보엔진류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국가별 수입 현황(2005-2007년 중 상반기 통계 비교)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1-6월 중 통계			비중			증감률 07/06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총계	248,588	282,090	302,874	100	100	100	7.37
1	독일	35,525	35,936	44,081	14.29	12.74	14.55	22.67
2	미국	20,743	25,305	28,841	8.35	8.97	9.52	13.97
3	프랑스	19,433	19,796	21,781	7.82	7.02	7.19	10.03
4	네덜란드	17,274	18,339	21,424	6.95	6.5	7.07	16.82
5	중국	14,235	15,924	20,624	5.73	5.65	6.81	29.52
6	벨기에	12,525	13,221	13,769	5.04	4.69	4.55	4.14
7	이탈리아	11,442	11,468	12,587	4.6	4.07	4.16	9.76
8	노르웨이	9,742	13,522	12,551	3.92	4.79	4.14	-7.18
9	아일랜드	8,928	9,148	10,564	3.59	3.24	3.49	15.48
10	스페인	9,053	10,907	10,056	3.64	3.87	3.32	-7.8
11	일본	8,679	8,085	8,340	3.49	2.87	2.75	3.15
27	한국	2,626	2,636	2,501	1.06	0.94	0.83	-5.13

자료: World Trade Atlas

영국의 국가별 수출 현황(2005-2007년 중 상반기 통계 비교)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1-6월 중 통계			비중			증감률 07/06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총계	193,997	241,441	211,565	100	100	100	-12.37
1	미국	27,362	28,679	30,718	14.1	11.88	14.52	7.11
2	독일	21,504	26,215	23,536	11.09	10.86	11.13	-10.22
3	프랑스	18,181	33,325	17,966	9.37	13.8	8.49	-46.09
4	아일랜드	14,544	15,379	16,674	7.5	6.37	7.88	8.42
5	네덜란드	11,130	17,420	13,851	5.74	7.22	6.55	-20.49
6	벨기에	10,393	12,849	11,651	5.36	5.32	5.51	-9.32
7	스페인	9,304	13,647	9,678	4.8	5.65	4.57	-29.08
8	이탈리아	8,428	9,361	9,006	4.34	3.88	4.26	-3.79
9	스웨덴	4,367	5,121	4,845	2.25	2.12	2.29	-5.39
10	스위스	8,568	4,697	3,967	4.42	1.95	1.88	-15.54
11	일본	3,476	3,688	3,711	1.79	1.53	1.75	0.6
27	한국	1,584	1,393	1,773	0.82	0.58	0.84	27.28

자료: World Trade Atlas

영국의 주요품목별 수입 통계

(단위: 백만 달러, %)

HS	품목명	1-6월 중 통계			비중			증감률 07/06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총계	248,588	282,090	302,874	100	100	100	7.37
8703	자동차	18,791	18,580	22,119	7.56	6.59	7.3	19.05
8708	자동차 부품	6,999	7,223	10,666	2.82	2.56	3.52	47.67
2709	원유	8,862	13,061	9,078	3.57	4.63	3	-30.5
2710	오일(원유 제외)	5,670	8,211	8,665	2.28	2.91	2.86	5.53
8471	자동화 전산기기	8,302	8,223	7,497	3.34	2.92	2.48	-8.83
3004	의약품	6,505	6,360	6,995	2.62	2.26	2.31	9.97
8517	전화기	3,280	3,207	6,586	1.32	1.14	2.18	105.39
8802	항공기	3,829	5,568	6,172	1.54	1.97	2.04	10.85
7108	금	1,277	8,697	5,992	0.51	3.08	1.98	-31.11
9907	오일 프로세싱	1,151	7,918	5,837	0.46	2.81	1.93	-26.28
8411	터보젯트, 터보엔진 등	4,003	3,864	4,254	1.61	1.37	1.4	10.08
7102	다이아몬드	4,396	4,439	4,186	1.77	1.57	1.38	-5.7
8473	사무기기	3,942	5,073	3,806	1.59	1.8	1.26	-24.96
8704	화물자동차	2,638	2,741	3,148	1.06	0.97	1.04	14.83
2711	석유가스	1,713	3,249	3,133	0.69	1.15	1.04	-3.55
8528	TV 수상기	1,493	2,555	2,846	0.6	0.91	0.94	11.37
9403	가구와 부분품	2,154	2,124	2,500	0.87	0.75	0.83	17.72
8803	항공기 부품	2,379	2,231	2,361	0.96	0.79	0.78	5.8

자료: World Trade Atlas

영국 품목별 수출통계

(단위: 백만 달러, %)

HS	품목명	1-6월 중 통계			비중			증감률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총계	193,997	241,441	211,565	100	100	100	-12.37
8703	자동차	12,350	12,249	13,799	6.37	5.07	6.52	12.65
3004	의약품	9,310	10,590	11,876	4.8	4.39	5.61	12.14
2709	원유	10,114	12,445	11,438	5.21	5.16	5.41	-8.09
8411	터보젯트, 터보엔진 등	6,605	7,567	7,378	3.41	3.13	3.49	-2.5
2710	오일(원유 제외)	5,735	7,717	7,323	2.96	3.2	3.46	-5.11
8803	항공기 부품	5,011	5,231	5,341	2.58	2.17	2.52	2.09
7102	다이아몬드	4,540	4,442	4,250	2.34	1.84	2.01	-4.32
8708	자동차 부품	4,091	3,992	3,867	2.11	1.65	1.83	-3.14
8471	자동화 전산기기	4,397	7,484	2,953	2.27	3.1	1.4	-60.54
8473	사무기기	3,101	5,393	2,786	1.6	2.23	1.32	-48.33
2208	주류	2,349	2,177	2,608	1.21	0.9	1.23	19.77
8517	전화기	1,641	2,564	2,294	0.85	1.06	1.08	-10.51
9701	회화	1,762	1,411	2,030	0.91	0.58	0.96	43.87
7110	백금	858	1,345	2,008	0.44	0.56	0.95	49.32
8429	불도저 등 건설기계	1,244	1,227	1,838	0.64	0.51	0.87	49.83
8704	화물자동차	1,216	1,338	1,837	0.63	0.55	0.87	37.27
2933	질소헤테고리 화합물	1,047	1,509	1,761	0.54	0.63	0.83	16.68
7113	신변장식용품	1,186	1,393	1,686	0.61	0.58	0.8	21.04

자료: World Trade Atlas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 2007 년 한-영 교역액: 105 억 달러
- 1964 년 1000 만 달러에 머물렀던 한-영 교역량은 최근 10 년간 급속한 성장세를 보 이면서 2007 년에는 최초로 100 억 달러를 넘는 수준으로 증가
- 2007 년 한국의 대영국 수출은 69 억 달러, 수입은 36 억 달러로서 전년대비 각각 20% 이상 증가
- 한국의 대 영국 수출입실적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01	3,490(-35.1)	2,354(-8.6)	1,136
2002	4,255(21.9)	2,437(3.5)	1,818
2003	4,094(-3.8)	2,703(10.9)	1,391
2004	5,516(34.7)	3,793(40.3)	1,723
2005	5,339(-3.2)	3,149(-17.0)	2,193
2006	5,635(5.6)	2,977(-5.5)	2,658
2007	6,870(21.9)	3,581(20.3)	3,289

자료: 무역협회,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 대 영국 주요 수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순 위	품목명	2006		2007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1	농약 및 의약품	254	60	285	11.9
2	기호식품	226	-2	269	19.1
3	강반제품 등	159	4.2	231	45.5
4	계측제어분석기	181	-18.4	196	8.2
5	원동기 및 펌프	133	10.9	190	42.8
6	반도체	137	67.5	147	7
7	합성수지	111	41.6	132	18.7
8	금은 및 백금	28	-43.4	99	251.3
9	자동차부품	99	-7.6	97	-2
10	동제품	82	32.8	91	10.7
총 계		2,977	-5.5	3,581	20.3

자료: 한국무역협회(KOTIS), MTI 3단위(상품분류기호) 기준

○ 대 영국 주요 수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순 위	품목명	2006		2007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1	농약 및 의약품	254	60	285	11.9
2	기호식품	226	-2	269	19.1
3	강반제품 등	159	4.2	231	45.5
4	계측제어분석기	181	-18.4	196	8.2
5	원동기 및 펌프	133	10.9	190	42.8
6	반도체	137	67.5	147	7
7	합성수지	111	41.6	132	18.7
8	금은 및 백금	28	-43.4	99	251.3
9	자동차부품	99	-7.6	97	-2
10	동제품	82	32.8	91	10.7
총 계		2,977	-5.5	3,581	20.3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MTI 3단위 (상품분류기호) 기준

- 2007 년도 기준 영국은 한국의 12 위 수출대상국으로 EU 국가 중 독일에 이어 2 위를 차지하였으며, 수입은 전체 수출 대상국 가운데 26 위를 기록

한국과 EU 주요회원국과의 교역현황 (2007)

(단위: 백만 달러)

국 가	수 출	순위	국 가	수 입	순위
독 일	11,542	6위	독 일	13,534	6위
영 국	6,870	12위	프랑스	4,043	20위
네덜란드	4,489	714위	네덜란드	3,703	21위
이탈리아	4,151	21위	이탈리아	3,583	23위
프랑스	3,478	32위	영 국	3,581	26위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 규제 제도

수입의 급격한 증가 또는 덤핑 등 불공정한 교역 행위로 인하여 EU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조사 결과 판단될 때 EU 당국은 산업 피해 구제 조치로서 EU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관세부과, 상계관세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입규제 조치는 각 회원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독단적으로 취할 수 없고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 위 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기초하여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1) 반덤핑

수출국의 기업이 덤핑가격으로 수출하여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EU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입규제조치이다.

EU집행위는 EU기업으로부터 한 일정 수출국 기업이 덤핑 수출을 하고 있어 EU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제소를 받으면 반덤핑 규정(384/96/ec)에 의거, 조사 후 반덤핑 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한다.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좌우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덤핑 존재: 해당 수출국(제 3역외국) 기업의 EU 수출가가 자국 내수 가격보다 낮을 때 덤핑으로 간주한다.
- EU 산업에 피해 존재: 덤핑 수입으로 EU 역내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음이 입증될 때 EU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EU 역내 산업이 시장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 EU의 전반적 이익: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반덤핑 조치가 EU의 전반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EU집행위는 석탄과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또는 확정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나 석탄과 철강제품 이외 상품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의해 확정 반덤핑관세 부과가 결정된다.
- EU집행위는 덤핑제소 접수일로부터 45일 내에 사전조사, 공식 조사를 개시할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제소업체(들)의 생산이 EU 총 생산의 25% 미만일 경우에 공식 조사가 거절된다.

2) 반보조금(Anti-subsidy) 및 상계관세

보조금에 대한 국제적 규율은 보조금과 상계 조치에 대한 WTO의 협정에 의해 상당히 강화되었다. EU는 WTO의 협정 내용을 EU 보조금 규정에 통합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수출 보조금을 받고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반보조금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EU 규정은 EU 역외국 정부의 수출보조금을 받고 EU에 수출되는 상품에만 적용되고 해당 제품에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 수출보조금 또는 한 일정 산업, 일정 기업에 한정된 보조금
- EU산업에 물질적 피해(material injury) 초래: 수출보조금을 받고 싼 가격으로 들어온 수입 제품으로 인해 EU역내 산업이 시장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 EU연합의 전반적 이익: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 반덤핑 조치와 마찬가지로 집행위가 조사하고 잠정 조치를 취하나 최종 조치는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제소와 조사 절차는 반덤핑 조치와 유사하다.

3) 세이프가드

EU 수입제도는 자유 수입을 일반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세이프 가드 조치를 취하는데 예외적 경우란 급작스러운 대폭의 수입 증가의 경우로 EU역내 산업과 기업, EU 공익에 위협적인 요인이 될 때를 의미한다. EU 집행위는 회원국으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하고 case-by-case 형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처럼 기업이 직접 세이프가드 조치의 도입을 요청할 수 없다. 세이프 가드 조치는 WTO의 세이프 가드 협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세이프 가드 조치로는 수입쿼터로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조치와 감시조치가 있는데 감시(surveillance) 조치는 엄격한 의미에서 수입 제한 조치가 아니다. 다만 해당 제품의 수입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수입 라이선스가 요구된다. 현재 감시제도는 일부 국가의 철강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나. 수입 쿼터 제도

EU는 원칙적으로 수입 쿼터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WTO 협정 내에서 2004년까지 일부 섬유제품에 대해 쿼터 제도가 적용되었으나 2005년 1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전면 폐지되었다. 그러나 섬유쿼터제도 폐지 이후 중국산 섬유제품과 신발이 대량 수입되어 EU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업계 및 EU 회원국 정부의 압력으로 EU 당국은 중국산 일부 섬유 제품과 신발류에 대해 긴급 수입제한 조치(세이프 가드)를 취하여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물량을 제한하고 있는 한편 신발류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 관세제도

영국은 EU회원국으로서 EU 관세제도를 따른다. 영국은 EU 공동 관세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68년부터 여타 EU회원국과 동일한 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EU의 주요 관세 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가입국 뿐 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관세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쌍무특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의 감면, 면제 등 관세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또한 EU연합의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민감성에 따라 제품의 관세율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EU산업이 완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하나 EU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자재 또는 반제품 등에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한다.

- 관세율: 관세는 EU가 정하여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하여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한다.
- EU 관세율 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 (Harmo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된다.
-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농업정책에 의한 농업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 표를 EU 관보를 통해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일정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라 수입부과금(Import Levy)을 부여한다.

- EU 관세율은 EU 집행위 관세(CUSTOM) 사이트(TARIC)에서 참조할 수 있음:
- 해당 인터넷 사이트 주소: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en/tarhom.htm

교역관련 주요법규는 영국은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서 EU의 통상법규를 따른다.

EU 통상 정책의 실제 수단은 공동관세, 산업피해구제조치(반덤핑, 상계관세, 긴급 수입 제한 조치)와 더불어 제 3국의 무역 장벽 및 시장접근 정도에 관한 조사, 분석을 기초로 대외 통상 교섭과 협정체결 등인데 다자 또는 양자 간 협의를 통해 통상 조치의 결정을 내리기도 하지만 일방적인 조치를 통해 이행 하기도 한다.

1) 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정은 기타 통상조치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 수입제한조치, 원산지 표기 요건 및 여타 차별적인 수량 제한 또는 관세쿼터 등과 같은 무역정책 수단으로 사용된다.

- EU 원산지 규정의 기초법: 1992년 10월 12일 자 이사회 규정 2913/92

2) EU 공동관세

매년 EU 집행위는 EU 공동 관세율을 관보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EU 관세율은 EU 집행위 관세부서 사이트를 참조할 수 있다.

- 사이트(TARIC): http://ec.europa.eu/comm/taxation_customs/dds/en/tarhome.htm

3) 수출입 관련 규정

EU 수입규정(Regulation 3285/94)은 EU로 수입되는 물품에 공동 적용되는 규정으로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수량제한을 금지하고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제한적인 시장 접근을 보장한다. 단, 수입상품이 EU산업에 심각한 손실을 끼치는 것을 예방 또는 치유하는 조치로 절차 규정에 의거,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조치 등을 취한다.

수출도 마찬가지로 수출규정(Regulation 2063/69)에 의거, 개인과 기업은 특별한 제한 없이 석유와 가스, 무기, 위험 폐기물을 제외한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을 수량제한 없이 제 3국에 수출할 수 있다. 단, 수출로 인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상품이 결여될 위험성이 있거나 회원국의 공익상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상황에서 집행위는 회원국의 요청이나 독자적인 결정으로 수출 허가제도를 취할 수 있다.

4) 통상장벽 규정

통상장벽 해소를 위해 별도의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주로 WTO제소 또는 WTO 협정에 따른 보복조치(양허 철회, 중지, 관세인상, 수량규제 도입 등)를 취한다.

5) 산업 피해 구제 조치

산업 피해 구제 조치는 수입의 급격한 증가 또는 불공정한 교역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될 때 EU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로서 주로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관세부과, 상계관세부과 등을 의미한다.

상기와 같은 통상법규 이외에도 환경분야의 각종 규정과 산업분야에 있어서 각종 공업 규격과 기술표준 인증제도, 안전규정(CE마킹), 상품 관련 제조자의 책임제 등이 영국을 비롯하여 EU 시장을 접근하는데 기술장벽이 되고 있다

4. 대한수입규제 동향

2008 년 9 월 19 일 기준 EU 로부터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제품은 5 개 품목이며, 그 외 2 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받고 있다.

구분	조치 유형	대상 품목
규제 중	반덤핑 관세	폴리에스테르단섬유(PSF), PET 칩, 양문형 냉장고, 실리콘(우회덤핑관세), 철강제 관연결구류
조사 중	반덤핑 관세	스텐레스스틸 냉연강판(신규조사), 철강제관연결구류(만기재심),

5. 관세제도

가. 개황

영국은 EU회원국으로서 EU 관세제도를 따른다. 영국은 EU 공동 관세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68년부터 여타 EU회원국과 동일한 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EU의 주요 관세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가입국 뿐만 아니라 비 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관세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쌍무 특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의 감면, 면제 등 관세혜택을 부여 하기도 한다.

또한 EU연합의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민감성에 따라 제품의 관세율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EU산업이 완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하나 EU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자재 또는 반제품 등에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를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면제한다.

- 관세율: 관세는 EU가 정하여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하여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한다.
- EU 관세율 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 Harmo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6단위까지는 HS code와 동일)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농업 정책에 의한 농업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 표를 EU 관보를 통해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일정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 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고 수입부과금(Import Levy)을 부여한다.

EU 관세율은 EU 집행위 관세(CUSTOM) 사이트(TARIC)에서 참조할 수 있다.

- 해당 인터넷 사이트 주소: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en/tarhom.htm

나. 통관 시 적용되는 규정

1) 상품분류 번호

모든 상품의 수출입 시, 통관서류에 상품분류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분류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영국은 모든 EU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상품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 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상품분류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시 정확한 상품분류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2)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영국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3) 관세부과가액

상품의 실질 거래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단, 인도조건에 따라 송 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송장금액과는 별도로 관세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 들이 있다.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한 것 들이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율을 회원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17.5%가 적용됨)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또한 특별세의 세율도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6. 주요인증제도

가. CE마킹 제도

- 전자파적합성 지침(89/336/ EEC)
 -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기준을 준수하고 CE 마킹을 획득해야 한다.
-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
 - 85/374/eec(1999/34/EEC 수정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자 포함)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일반제품 안전
 - 92/59/EEC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는 시판 상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환경규격
 - 2000/14/EC 지침에 의거하여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동 지침의 소음 발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27개 EU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EFTA국가에 수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22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킹 지침(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 부착해야 한다.

CE 마킹 대상품목 및 규정 지침

품목	규정 지침
가스기기(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90/396/EEC
사람수송용 케이블(Cableway Installation to Carry Persons)	2000/9/EC
저압 전기 기기(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73/23/EEC
건설자재(Construction Products)	89/106/EEC
폭발용 기기 및 보호제품 (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 for used in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94/9/EC
민간용 폭발물(Explosives for Civil Uses)	93/15/EEC
온수보일러(Hot Water Boiler)	92/42/EEC
가전 냉장·냉동고(Household Refrigerators & Freezers)	96/57/EC(에너지효율지침)
승강기(Lift)	95/16/EC
기계(Machinery)	98/37/EC
선박(Marine Equipment)	96/98/EC
의료기기(Medical Devices)	93/42/EEC
의료용 임플란트(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90/385/EEC
시험관 치료용 기기(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98/79/EC
수동저울(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90/384/EEC
무선전신 및 통신 말단기기 (Radio Equipment &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99/5/EC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89/686/EEC
단순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s)	87/404/EEC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	97/23/EC
여가용 보트(Recreational Craft)	94/25/EC
장난감(Toys)	88/378/EEC
Trans-European Conventional Rail System	96/48/EC, 2001/16/EC

나. 에너지라벨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에너지라벨 대상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기-건조기 콤비, 식기세척기, 램프, 전기 오븐, 에어컨 등이다.

- GEEA(Group for Energy Efficient Appliances)
- 화란, 덴마크,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국들이 운영하는 에너지 절약제품 보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포럼이며 GEEA 규격에 적합하는 제품은 GEEA의 에너지라벨을 사용할 수 있음.
- 대상품목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배터리 충전기 등(19품목)
 - 정회원
 - Switzerland: The 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SFOE)
 - Denmark: The Danish Energy Authority (DEA)

- Netherlands: The Netherlands Agency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 SenterNOVEM)
- Germany: The German Energy Agency (dena) / Gemeinschaft Energielabel Deutschland(GED)
- 준회원
- Sweden: The Swedish 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STEM)
- Austria: The Austrian Energy Agency(E.V.A.)
- France: The French Agency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Ademe)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Energie
Hersteller
Modell

Niedriger Energieverbrauch
A
B
C
D
E
F
G
Hoher Energieverbrauch

Energieverbrauch kWh/Waschprogramm
0.95

Wasserverbrauch l/Waschprogramm
5.0

Geräusch
49

■ **개요**
에너지 소비 효율에 따라 A~G까지 Energy효율 등급 라벨 표시 및 최저 효율 기준, 적용 에너지 효율등급, 연간 에너지 소비량 등 표시

■ **대상품목**
라벨 표시: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10품목)
최저 효율: 냉장고, 냉동고, 냉동냉장고, 보일러, 안정기 등(5품목)

■ **시행기관** EU위원회(EU Commission)

■ **근거법령**
에너지라벨링 지침(Council directive/92/75/EEC, 1992)

▶GEEA



■ **개요**
스위스, 독일 등 유럽 9개국이 운영하는 대기전력 감소를 위한 에너지절약제품 보급프로그램이며 Energy라벨 사용

■ **대상품목**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배터리충전기 등(19품목)

▶Energy 2000



■ **개요**
대기전력 절감하는 제품을 보급하는 유럽의 대표적 프로그램GEEA와 동일기준 적용하며 같은 Energy라벨 사용

■ **대상품목**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DVD플레이어 등(15품목)

시행기관: 스위스 에너지부(SFOE: The 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다. 에코 라벨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는 라벨로 현재까지 24개 품목 군에 대하여 기준이 제정되어 있으며 4개 품목 군에 대하여 기준 제정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32개 품목군에 대하여 EU 집행위와 관련 업계 단체들이 에코라벨 기준 제정의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 기준 기 제정 품목
 - 세제: 일반 청소세제, 식기세척기 세제, 설거지세제, 세탁용 세제
 - 기기: 식기세척기, 전구, 휴대용 컴퓨터, PC, TV, 냉동고, 진공청소기, 세탁기
 - 종이제품: 복사용지, 화장지
 - 가정, 정원용품: 침대매트리스, hard floor coverings, 실내용 페인트 및 안료, 토양 개선제, 가정용 섬유제품
 - 의류: 신발, 섬유제품
 - 관광: 캠프장 및 서비스, 관광객 편의 시설 서비스
 - 윤활유: 윤활유
- 기준 제정 추진 품목: heat pump, 비누와 샴푸, 프린트용지, 가구
- 제정 가능성 검토 품목: 문구류, 벽지, 쓰레기봉투, 소핑백, 필기도구, 전화, 복사기, 소형 가정용 전기기기, 패션 액세서리, 장갑, 가죽제품, 스포츠 장비, 완구 및 게임, 포장지, DIY 제품, 에어컨류, 난방기기, 물 끓이는 시스템, 절연기, 건축부분품, 건축서비스, 소매서비스, 건조기, 금융서비스, 배달서비스, 자동차수리서비스, 자동차, 부속용품, 위생용품 등

7. 지적재산권

가. 일반 사항

- 영국 내 특허신청 및 지적 재산권 관련 업무는 통산부(DTI)의 후신인 비즈니스/기업/규제 개혁부(BERR;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 Regulatory Reform) 산하 기관인 '영국 지적재산권 관리청(The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http://www.ipo.gov.uk>)'이 관장하고 있다.
- 영국의 지적재산권 관리청에서는 지적재산권을 Copyright, Designs, Patents, Trade Mark 등 4 종류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 1977 년의 특허법은 최장 20 년 동안 특허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특허신청에 대해서 혁신성 이 부족하거나 이미 사용 중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영국은 유럽특허 조약의 가맹국이고 특허 협조협약의 비준국으로 가맹되어 있다.
- 상표는 7 년간 보호되는데 이후로 14 년 마다 갱신할 수 있다. 상표등록은 제조업체 및 서비스업 모두에 해당되며, 특정한 명사의 사용이나 관련상품에 대한 서술식의 표현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저작권은 문학이나 음악, 드라마 등의 원작의 경우에는 신고나 등록이 없이도 권리가 발생하며 이의 적용범위는 기타 예술작품이나 녹음, 영화필름,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등에도 적용된다.
- 이 외에 1949 년 의장등록법과 1988 년 지적재산권 및 디자인, 특허법을 통해서 산업 디자인이 보호를 받는다.

나. (기술)특허신청 절차

- 특허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신청서 1/77 양식을 기재하여 필요시 발명품 설명을 돕기에 용이한 도안(Drawing)이나 상세기술(description)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특허 신청서 제출 시 수수료는 없으나 특허인증 및 발급 절차에 대한 총 비용은 특허 기술에 대한 배타적 권리 획득까지 200 파운드가 부과된다.
- 신청자가 직접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대행사(에이전트)에 의뢰했을 경우에는 대행사별 별도 수수료가 추가된다.
- 일단 신청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12 달 간의 무료 임시 특허 보고가 적용되며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시일이 만료되면 특허는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 신청 후 다음단계의 특허조치를 위해서는 1 년 이내에 '9A/77'양식의 원서를 필요시되는 클레임이나 개요와 함께 접수해야 함. 동 원서의 접수비는 130 파운드이다.
- 이후 특허청의 기술평가관(Technical Examiners)들이 접수된 신청서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의 신규개발 진위를 판단하게 된다.
- 기술 평가단은 보통 접수 후 3~7 개월 이내 연구 리포트를 통보하게 된다.
- 신청된 특허사양(Patent Specification)은 첫 신청서 작성 이후 18 개월 이내에 공식 발행되며 이는 특허정보가 일반 회원들에게 공개 열람됨을 뜻한다.
- 공개 열람은 6 개월 간 계속되며 이 기간 내 신청자는 10/77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 서류 접수를 통해 특허청은 동 특허조사 진행을 계속하게 된다. 신청비는 70 파운드이다.
- 특허 신청에 대한 인증 및 발급 종료는 첫 신청일로부터 4 년 6 개월 이내 또는 첫 기술 평가 후 12 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일단 특허인증을 획득하면 매년 갱신을 통해 20 년간 유효하다. 특허권의 갱신수수료는 연차에 따라 다르고, 매년 납부해야 한다.
- 특허기술 열람은 특허청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http://gb.espacenet.com/>)하며 이 외에 보다 구체적인 유료 조사 자문 서비스(Search and Advisory Service)를 이용할 수 있다. 조사 자문 서비스의 이용료는 조사방법이나 경우에 따라 상이하다.

- 영국 특허 외 기타 EU 나 세계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The European Patent Office(www.european-patent-office.org)
 -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sation(www.wipo.int)

다. 디자인 등록 절차

- 영국 내 특허 등록된 디자인은 최장 25 년간 보호되며 5 년마다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신청료는 60 파운드이고 (섬유제품의 디자인만 35 파운드) 반환되지 않는다.
- 우선 작품의 디자인등록이 필요한지와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 참조; <http://www.ipo.gov.uk/design/d-applying/d-should.htm>)
- 기본적으로 '고유 디자인 관련 권리'는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생성되며 15 년간은 유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배타적인 권리(Exclusive right against copying)일 뿐이어서 '독점적인 상업적 이용(Monopoly protection)'의 확대 및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특허 등록이 필요하다. 또한 기본적인 디자인 권리는 표면장식 등이 배제된 '3 차원적인 제품의 기본 형태'만을 보호하게 되어 있어 보다 궁극적인 작품 디테일 보호를 위해서도 등록이 중시된다.
- 등록 신청시 우선 'Application Form DF2A'(<http://www.ipo.gov.uk/design/d-applying/d-apply.htm>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을 작성 한 후 신청수수료 60 파운드(수수료 납부 용지: FS2), 디자인 도해 1 부를 동봉하여 지적재산권 관리청으로 송부한다.
- 일단 신청 접수가 이루어지면 접수확인과 함께 1 주일 이내에 영수증 발급이 이루어진다.
- 그 후 관리청의 심사를 통해 결과서를 받는다. (신청 접수 후 보통 2 달 내)
- 디자인 특허 취득에 실패했을 시는 2 달 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일단 디자인 특허 취득 허가를 득한 경우라면 UK 디자인 등록소에 디자인이 자동 등록되며 등록정보 및 디자인 도해가 'Patents and Designs Journal' 및 'Designs in View'책자를 통해 각각 게재된다.

라. 특허업무 관련 연락처

- The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Concept House
 - Cardiff Road
 - Newport
 - South Wales NP10 8QQ, UK
- 저작권 담당 사무소(런던)
 - The Patent Office
 - Harmsworth House
 - 13-15 Bouverie Street
 - London EC4Y 8DP, UK

- 인콰이어리 의뢰:
 - The Central Enquiry Unit
 - Tel: +44 (0)1633 813930
 - Fax: +44 (0)1633 813600
 - Email: enquiries@ipo.gov.uk

8. 통관/운송

가. 일반 통관

- 수입 물품의 통관 절차란 수입 신고를 받은 세관 당국은 신고 사항을 확인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이 부합한지 여부와 수입과 관련된 제반법 규정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여 외국물품을 내국 물품화 하는 절차다. 영국 수입 절차를 완료하여 수입된 외국물품(EU 역 외국 물품을 의미)은 영국에서 출시 및 소비될 수 있는 동시에 여타 EU 시장으로 자유이동 될 수 있다.

1) 통관절차

출항→입항→하선(보세운송 또는 타소 장치)→물품 보세 구역 반입→장치 확인→수입 신고→심사→물품검사→수입 신고 관리→관세 등 제세납부

□ 수입신고 방법

- 화주가 직접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 수입신고가 가능하다.
- 에이전트의 경우 대부분 세관과 전산 연결되어 전산으로 신고 가능, 서류는 전산 입력 후 별도로 제출한다.
- 수입신고서류를 세관에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 수입신고 시 제출 서류

- 수입신고서(Single Administration Document)
- 선하증권(B/L), 화물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L)
- 가격신고서, 수입허가서
- 수입신고서에는 반드시 상품의 해당 관세 분류 번호(TARIC CODE: EU 관세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 EU의 관세분류번호는 EU 집행위 사이트에서 입수할 수 있음.
 - http://europa.eu.int/comm/taxation_customs/dds/en/ebticau...htm

□ 긴급통관요청

- 장기 보관할 경우 부패, 손상이 우려되는 물품은 긴급통관 요청이 가능하다
- 긴급통관 요청서(Request for Urgent Clearance)에 긴급통관이 필요한 사유를 기재해 세관에 제출한다.
- 세관에서 요청사유를 심사한 후 타당한 경우 긴급통관 처리한다.

2) 물품검사

- 세관에서는 화물송장 등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다. 물품 검사는 일반적으로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 구역인 부두,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하며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플랜트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 수요 물자, door to door 로 운반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세관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검사하기도 한다.
- 일반적으로 관세, 특별세(excise), 부가가치세(17.5%)는 통관 절차 때 지불한다. 대부분의 수입상들은 통관절차를 운송업체 내의 통관담당부서나 전문 통관 업체에게 위임하고 있다.

3) 통관 시 적용되는 규정

□ 상품분류 번호

- 모든 상품의 수출입 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영국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 자리의 EU 상품분류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 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 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 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 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상품분류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시 정확 한 상품분류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 원산지 규정

-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EU 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 원산지 규정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혜택,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된다.

□ 관세부과가액

- 상품의 실질 거래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단, 인도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송장금액과는 별도로 관세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다.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한 것 들이다.

4) 통관방법의 결정(Cargo Selective)

□ 수입신고 즉시 세관에서 통관방법을 결정한다.

- 전산으로 수입 신고하는 경우 전산입력과 동시에 컴퓨터 화면에 통관방법이 자동 표시되어 수입 신고인이 통관방법 확인이 가능하다.
- 통관방법의 결정은 세관의 화물 선별시스템(Cargo Selective)에 의해 자동 결정된다

□ 통관방법의 종류

- 서류심사와 실물검사가 병행된다.
- 서류심사 및 실물검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24 시간 이내에 통관된다
- 품목에 따라 전산신고를 통해 서류심사와 실물검사를 하지 않고도 통관이 가능하다

5) 과세가격의 신고

□ 신고대상

- 일부 예외물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물품이 가격신고대상이다.
- 예외물품
 - 총 수입가격 2,000 파운드 이하 수입물품
 - 이사물품, 개인용품 등 비상용물품
 - 과일, 채소 등 간이가격평가절차 적용 물품
 - 일반 과세가격 신고자가 수입하는 물품

□ 신고 시기

- 수입신고 시 가격신고서(Valuation Declaration)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수입신고 시 가격신고서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가격 신고제출보증서를 제출한 후 수입 신고 후 14 일 이내 사후제출 가능하다.

나. 간이 통관 및 우편 배송물에 대한 관세

1) 수하물 통관

- 방문 시 판매상품을 직접 소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Merchandise in Baggage'라고 표현되며 이는 각 통관소의 붉은색 "Goods to Declare"채널이나 Redpoint 전화기를 사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2) 특송업체 및 우편배송

- 국제우편협약에 따라 배송자는 반드시 관세신고서(CN22/CN23)를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물건에 대해 관세(customs), 소비세(excise),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됨
- 면제조건
 - 관세의 경우 부과금이 7 파운드 이하이면 면제된다.
 - 수입 VAT 의 경우 알코올, 담배, 향수, 화장수 등을 제외한 제품 중 구매금액이 18 파운드를 넘지 않으며 면제된다
 - 개인 선물용인 경우 알코올, 담배, 향수, 화장수 등을 제외하고 38 파운드 이하인 경우 면제된다
 - 알코올, 담배의 경우 원칙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소비세가 부과된다
 - 향수, 화장수의 경우 각 중량 50mg, 025l 를 초과할 경우 선물의 경우도 VAT 는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 수입보세가공 제도(Inward Processing Relief)

- EU 지역 내 가공무역의 지원을 위해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 생산한 제품을 EU 지역 외로 수출하는 경우 원자재 수입 시 관세(물품세, VAT 외)를 면제하거나 완제품 수출 후 관세를 환급 하는 제도이다
- EU 내에서 원자재의 충분한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EU 이 외 지역으로부터 원자재의 수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 수입보세가공 제도의 종류

- 원자재 수입 시 관세의 징수유예
 - EU 지역 이외의 국가로부터 보세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입 시 수출이행 기간까지 관세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 징수 유예 받은 원자재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의 일부를 내수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내수 판매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수입원자재의 관세와 유예기간 동안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 보세가공물품 수출 시 관세환급
 - 원자재의 수입 시에는 관세를 납부하고, 당해 원자재를 사용해 생산된 제품을 수출 이행 기간 내에 수출한 경우 원자재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지 않고 내수판매, 폐기를 한 경우와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웨이스트, 스크랩 등은 관세환급이 불가하다.

라. 운송

1) 국제공항

- 런던 및 인근 지역에만 Heathrow, Gatwick, Luton, Stansted, City 등 5 개 공항이 있으며 맨체스터, 글래스고우, 에버딘, 에딘버러 등 주요 지방도시에도 국제공항이 있다.
- Heathrow 공항의 경우 4 개 터미널이 있는 바(터미널 5 신축 중), 공항 출영송 시에는 반드시 터미널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히드로 공항은 사정에 따라 마지막 순간에 터미널이 바뀌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히드로 터미널 1,2,3 는 지하로 연결되어 있으며 터미널 1,2,3 에서 터미널 4 까지는 자동차로 약 20 분이 소요된다. 히드로 공항에서는 지하철, 버스 및 택시를 이용하여 시내로 진입할 수 있으며, 199 년부터 공항-시내중심지인 패딩턴역까지 무정차 특급기차(히드로 익스프레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소요시간은 15 분이다.
- 게트윅 공항에서도 빅토리아역간에 특급 전철 (게트윅 익스프레스) 및 AIR BUS 를 이용하여 시내로 진입할 수 있으며 스탠스테드 공항과 리버풀 스트리트 역을 잇는 스탠스테드 익스프레스도 운용 중이다.

2) 국제항구

- 영국 내에는 London(Thamesport), Tees and Hartlepool, Grimsby and Immingham, Sullom Voe, Milford Haven, Southampton, Liverpool, Forth, Felixstowe, Medway, Dover 항이 위치하고 있다.

3) 운송비용(컨테이너 비용)

- 제시 가격은 최근 시점 영국-한국간 참고 가격으로 화주 및 물동량에 따라서 RATE 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선사에 따라 영국 내 출입항구가 다르며 보통 한국과의 운송은 Felixstowe, Southampton, Thames port 항을 이용하고 있음.
- EXPORT 의 경우영국 내 위치한 선사나 운송업체에서 가격 결정을 하며 IMPORT 의 경우에는 보통 한국에 위치한 본사나 업체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음.
- 2008 년 5 월 기준, 운송가격은 영국 기준 Export 의 경우 Door-Port 의 경우 20ft 가 대략 700 파운드, 40ft 가 1,000 파운드 수준이며 Import 의 경우 Port-Door 의 경우 20ft 가 대략 1,800 파운드 40ft 가 2,600 파운드 수준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세부 가격은 아래 표 참조)

	OFC		BAF		CAF	THC	DOC	ISPS	CC / BL
	20ft	40ft	20ft	40ft	OFC의	Per CNTR	Per BL	Per CNTR	Per BL
EXPORT	\$300	\$450	\$247	\$494	9.4%	£69	£25	£7	£25
IMPORT	\$2,100	\$3,600	OFC에 포함			£69	£25	£10.50	£45

범례

OFC	해상요금(OCEAN FREIGHT CHARGE)
BAF	유가상승치(BUNKER ADJUSTMENT FACTOR)
CAF	환율조절치(CURRENCY ADJUSTMENT FACTOR)
THC	항만 수수료(TERMINAL HANDLING CHARGE)
DOC	서류서비스(DOCUMENTATION FEE)
ISPS	항구 보안요금(PORT SECURITY CHARGE)
CC	통관요금(CUSTOM CLEARANCE FEE)

4) 주요 운송업체

□ 한진해운

- Calder House, 1 Dover Street, London W1S 4LA
- 전화: 020 7629 9997
- 팩스: 020 7495 6588
- 홈페이지: www.hanjin.com

□ 현대상선

- 4th Floor, City Reach, 5 Greenwich View Place, Millharbour, London E14 9NN
- 전화: 020 7477 7200
- 팩스: 020 7477 6950
- 홈페이지: www.hmm21.com

□ 범한 판토스

- 720 Weston Road, Trading Estate, Slough, Berkshire SL1 4HL
- 전화: 01753 610 400
- 팩스: 01753 610 418
- 홈페이지: www.pantosuk.com

IV. 투자

1. 투자환경

1) 투자지로서의 장점

가. 숙련되고 적응력이 뛰어난 노동력

- 영국은 전일제와 시간제 고용을 합해 총 2,800만의 숙련되고 적응력이 뛰어난 근로자들을 보유, 유럽 연합 내에서 두 번째로 큰 노동시장을 갖고 있다. 영국의 교육은 직업 교육과 훈련을 대단히 강조하는 수준 높은 것으로 이러한 교육은 영국 정부에 의해 매우 강화되어 왔다.

나. 낮은 공공요금(Utillities)

- 영국은 규제 철폐와 민영화로 유럽 연합 내에서 가장 저렴한 공익시설 사용료를 지불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영국은 북해유전과 천연 가스 보존층으로 인해 유럽 연합 회원국 중 유일한 에너지 자급국이다.
- 전기와 가스, 물을 포함한 영국의 공익 시설은 민영화 되어 있다. 실제로 수 많은 이러한 시설들은 해외 투자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다. 지역 에너지 공급자들 사이의 경쟁으로 산업용, 상업용 이용자들에게는 상당한 가격할인 협상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영국의 공익 시설들은 새로운 시설 설치 경험과 산업용 대용량 사용자들과의 협정 경험도 있다.
- 영국은 통신산업의 자유화로 유럽을 선도해 오고 있으며 기업체들에 대해서도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영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통신망 중 하나를 갖추고 있으며 그 비용도 대단히 경쟁력이 있다.

다. 기업 설립 용이

- 양질의 현대적 산업 부지는 녹지 지역과 개발지 내의 미사용 부지와 더불어 영국 전역에 걸쳐 있다. 영국은 또한 복합적인 대규모 산업 설비를 신속하면서도 훌륭한 수준으로 건설한 탁월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건설 및 토목공사 산업을 갖고 있다.
- 지정된 '지원(assisted)'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해내는 기업체들은 보조금과 다른 재정적 지원 또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북 아일랜드에는 투자 지원 사항들이 풍부하다.

라. 세계적 수준의 연구, 디자인 그리고 개발

- 영국의 많은 대학과 과학 연구소들은 그들의 학문적 성과들을 상업적 영리 사업에 응용하기 위해 기획된 공동 벤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 영국 정부는 기업에 도움이 되는 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협동적인 연구 프로그램들은 영국과 유럽 연합의 재정 지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많은 외국 기업들은 영국 대학들과 연구 협력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사의 연구소는 캠브리지 대학의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의 명성으로 인해 그 회사 최초의 미국 국외 연구실을 영국으로 선택했다. 영국은 170개 이상의 계약 연구 단체들과 더불어 다른 어느 유럽 국가들 보다 더 많은 임상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들을 두고 있다.

마. 유럽의 선도적 통신 시장

- 영국은 전 세계 고객들에게는 매력적인 통신 중심지로 유럽 전체 국제통신사업 대리점의 약 40%가 그들의 본부를 두고 있다.
- 영국의 통신 사업은 다른 어느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더 빨리 규제가 해제되었고 자유화 정책에 있어서도 훨씬 더 앞서 있다. 지난 십 년 동안 British Telecom(BT) 사는 유럽에서 가장 발달된 전화망을 설립했으며 CONCERT 사업으로 BT사는 텔레마케팅, 영업, 연구, 직접 응답, 고객 지원 망과 고객 서비스 부문에서 유럽을 선도하고 있다. Cable & Wireless, AT&T사와 같은 다른 주요 통신사들 역시 영국에서 국내 및 국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또한 유럽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이동 통신시장 중 하나이다.
- 인가를 받은 200 개 이상의 공급자들간의 경쟁은 현실적 견지에서 영국의 통신 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예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은 또한 유럽에서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우편 서비스 중 하나도 갖추고 있다.
- 영국은 양질의 통신과 저렴한 운영비로 점차 국제 본부나 유럽 본부 그리고 공동 서비스 센터를 개설하고자 하는 다국적 회사들의 선택지가 되고 있다.

바. 언어

- 영어는 전 세계의 비즈니스 언어이다. 유럽 연합에서는 다른 어느 외국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제 2의 언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영어를 상업상 가장 유용한 언어로 생각하고 있다. 영국은 또한 190 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본거지이자 다국어를 구사하는 자국민과 자국민에 가까운 대규모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사.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 개인소득세

- 영국은 기업에게 낮은 법인세, 개인세, 경제적 안정 그리고 성장과 이익을 장려하는 규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다른 주요 산업국들 중 가장 낮은 주요 법인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익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부가 지방세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 비록 기업들에 대해 개별적인 근거에서 과세가 되고 있지만 영국에서 기업들은 그룹 내 한 회사가 낸 세금 손실을 그룹 내 다른 회사가 낸 이익으로 상쇄할 수 있다. 과학 연구공제 (SRA)는 건물, 공장, 기계 설비에 드는 자본경비를 포함 모든 연구 개발 비용을 처음 일 년 간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기계 설비와 공장에 대한 투자는 수지감소 원칙에 의거하여 일년에 25 퍼센트의 세금 공제를 받을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 영국은 어떠한 외환 관리도 없고 해외로 이익금을 보내는 일에 대해서도 아무 규제를 하지 않다. 해외 배당금 송금에 대한 원천 과세도 없고 많은 이중과세협정 역시 원천 과세 없이 이익금을 지불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이중과세 협정망을 갖추고 있다.
- 낮은 법인세율은 낮은 개인세율과 고용 비용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는 낮은 사회보장 기부금으로 보완되고 있다.

아. 런던, 유럽의 금융중심지

- 런던은 뉴욕, 동경과 함께 밤낮 없이 움직이는 전 세계의 자금 및 투자 시장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가 되고 있다. 런던 시는 유럽의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규모가 큰 증권 거래소, 외환 사업체, 국제 채권 업체들이 많으며 유로화 거래, 유로 은행 거래, 보험업, 선물매매, 선택매매, 펀드 운용의 주요한 중심지이다. 파리에 280 개, 프랑크푸르트의 250 개에 비해 런던에는 70개국 550 개 이상의 은행들이 자리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금융서비스 단체들이 브리스톨, 에딘버러, 리즈 그리고 맨체스터를 포함한 영국의 도시들에도 산재해 있다.

자. 신속한 시장 접근

- 영국에 있는 외국 기업 10 개사 중 9 개사가 이 곳에서 전세계로 수출을 하고 있다. 영국의 통합 수송망은 유럽 경제구역 전역으로 원자재와 제품들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배달할 수 있게 해 주며 광범위한 무료통행 고속도로와 도로망은 모든 주요한 영국의 대도시들과 산업 중심지들을 공항과 항구로 연결시켜주고 있다.
- 영국 전역에는 100 마일 이내에 컨테이너 항이 있으며 대부분의 영국의 항구들은 민영화되어 있고 트럭이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포함, 많은 양의 컨테이너 운송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영국의 항구들은 유럽 본토로 향하는 배들의 출항이 매일 300회 이상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매 년 5억 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다.
-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약 2만 여 개에 달하는 운송 회사 수는 화물 요금이 대단히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으며 영국에 기반을 둔 일련의 국내 물류회사들과 범 유럽 중개인들은 포괄적인 서비스와 계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Channel Tunnel은 육로와 철로로 영국을 다른 유럽지역과 연결 시켜주고 있으며 파리와 브뤼셀 등도 런던에서 기차로 3 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다.

- 런던의 히드로 공항은 유럽 내 다른 어느 도시보다 더 많은 100 곳 이상의 유럽 내 행선지에 직항로를 개설하고 있으며 20 곳 이상의 지방 공항들도 영국 내에 있는 모든 주요 중심지로 취항하고 있다.
- UPS, DHL, Federal Express와 Amtrak과 같은 많은 세계적인 물류 회사들 또한 영국 내에서 주목 할만한 사업을 하고 있다.

차. 유럽에서의 기회

- 영국 자체만도 약 6천만의 소비자를 보유한 거대한 시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곳은 단지 세계 최대의 자유교역 지역인 - 아이슬랜드와 노르웨이를 포함, 15 개 유럽 연합 국가에 3억 7,700만의 고객을 보유한 - 유럽 경제구역의 일부이다.

카. 투자자를 위한 영국정부의 지원

- 영국 정부는 R&D 분야의 업체에 상당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세금 우대 정책을 도입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해외 기업의 R&D 분야 투자를 촉진하고 영국을 이 분야에 있어서 매력적인 투자지역으로 인정 받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지원 정책은 업체의 규모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적용된다. 업체의 규모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되는데, 중소기업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해당한다.
 - 종업원 수: 250 명 미만
 - 연간 매출액: 4,000 만 유로 이하 또는 대차대조표상 총 잉여금 2,700 만 유로 이하
 - 자사소유지분: 25% 미만
- 단일기업이 아닌 그룹 형태의 경우, 모기업 및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모든 계열회사도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중소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 대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
 - 대기업의 경우에는 총 R&D 분야에 대한 비용의 최대 125%까지 세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R&D 분야의 비용항목이다.
 - 연구개발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력의 인건비
 - R&D 프로젝트에 투입된 외부 용역비용
 - R&D 업무에 소요되는 소모품비용
 - 2004 년 4 월 1 일 이후의 각종 소프트웨어비용,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용 등
 - 대학, 의료시설 등 특정 단체에 지급된 R&D 관련 비용
 - R&D 업무와 관련되어 타 연구소에 지급된 비용
 - 대기업의 경우에는 R&D 업무 이후에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의 소유 유무와는 무관하게 세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 해외의 모기업과 영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자회사간의 연구개발업무에 대한 계약에 의하여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영국 내 자회사만이 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 및 대기업은 공히 12 개월 내에 소요된 총 R&D 비용이 최소 10,000 파운드 이상이어야 세금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용 중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된다.
 - 한편, 토지매입을 제외한 해당 R&D 업무와 관련된 고정 자산에 투입된 모든 비용도 세금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
 -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은 총 R&D 분야에 대한 비용의 최대 150%까지 세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즉, R&D 분야의 세금공제(tax credit) 요건에 해당하는 자본손실(tax losses)이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감면은 국세청(the Inland Revenue)으로부터 현금 환불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R&D 분야의 비용 100 파운드당 최대 24 파운드까지 환불된다. 환불은 원천과세/정산(PAYE/NI) 형식으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처리된다.
- 다음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R&D 분야의 비용항목이다.
 - 연구개발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력의 인건비
 - R&D 프로젝트에 투입된 외부 용역비용
 - 2004년 4월 1일 이후의 각종 소프트웨어비용,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용 등
 - R&D 업무에 소요되는 소모품비용
 - R&D의 세부 분야에 대하여 제3자와 체결된 하도급 비용
 - 한편, 외부 보조금 또는 장려금으로 운영되는 R&D 업무와 다른 업체로부터의 하도급으로 진행되는 R&D 업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해당 연구개발 업무 이후에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은 반드시 해당 업체의 소유인 경우에만 세금 감면요청이 가능하다.

(자료: 주한 영국 대사관)

2) 투자지로서의 단점

가. 높은 물가 수준

높은 물가수준으로 인해 전반적인 기업운영비용이 크며 특히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사무실 임대료나 주재원 파견 시 주거비용 지출 부담이 크다.

나. 고임금

세계 최고 수준의 고임금 시장인 만큼 높은 수준의 인건비 부담 또한 기업 투자의 기본 회피 원인이 된다.

다. 파운드화 사용

유로화와 독립된 파운드화의 사용으로 인해 재무관리에 있어서 환율변동이 큰 영향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EU권내의 타 국가와는 구분된 별도의 유의가 항시 필요하다는 것도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3) 주요 체크 포인트

- 지역 내 기 위치한 산업 부문과 비즈니스의 종류
- 관련 클러스터와의 연계 용이성
- 중앙정부나 지방자치정부 등의 지원/혜택 수혜 가능성
- 실질 설립 비용 (부동산/설비 구축 포함)

2.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영국, 2007년도 외국인 직접투자유치액 1,711억 달러로 세계 2위

- 2008년 1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FDI 규모는 전년도 1,395억 달러에서 22.6% 성장한 1,71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잠정 발표되었다.
- 영국은 유럽 내 최대 투자유치국임을 재확인하였으며 이는 EU 전체 투자유치액인 6,100억 달러의 28%에 달하는 수치이다.

나. 2006년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누적액 1조 원 초과

- 2007년 10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발간한 세계투자보고서(World Investment Report)에 따르면 영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누적액이 2006년 1조 달러를 넘어섰다.
- 2006년 말 기준 영국의 FDI 누적액은 1조 1,352억 달러로 유럽 내 단연 1등이었으며, 전 세계에서 미국에 이은 세계 제2위의 투자유치국으로 나타났다.
 - 유럽 내 2위이자 세계 3위인 프랑스에 비해 3530억 달러가 많았다.

주요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누적액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1990	2000	2006
1	미국	394,911	1,256,867	1,789,087
2	영국	203,905	438,631	1,135,265
3	프랑스	86,845	259,776	782,825
4	홍콩	45,073	455,469	769,029
5	벨기에	..	..	603,432
6	독일	111,231	271,611	502,376
7	네덜란드	68,731	243,733	451,491
8	스페인	65,916	156,348	443,275
9	캐나다	112,843	212,176	385,187
10	이탈리아	59,998	121,170	294,790
	한국	5,186	38,086	70,974

자료: UN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7

다. 영국, 2006년 FDI 유입 규모도 미국에 이어 2위 차지

영국은 2006년 FDI 유입규모도 1,395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2위로 나타났다. 다만 2005년에 비해 FDI 유입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5년도 수처 속에 로열 더치 셸(Royal Dutch Shell)을 네덜란드기업으로 재분류하면서 이 회사의 영국 내 자산을 외국인 투자 유입액으로 잡는 바람에 비정상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해의 FDI유치규모도 최근 10년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영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는 계속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국의 최근 3년간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04	2005	2006
1	미국	135,826	101,025	175,394
2	영국	55,963	193,693	139,543
3	프랑스	32,560	81,063	81,076
4	벨기에	43,558	33,918	71,997
5	중국(홍콩 제외)	60,630	72,406	69,468
	대한민국	8,980	7,050	4,950

자료: UN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7

영국의 연도별 투자통계(FDI 기준)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3	2004	2005	2006
대외투자	Flow	62,187	91,019	83,708	79,457
	Stock	1,187,046	1,268,532	1,237,997	1,486,950
투자유치	Flow	16,778	55,963	193,693	139,543
	Stock	606,158	707,924	816,716	1,135,265

자료: UNCTAD

라. 대영 외국기업 투자동향

영국에는 2만 개가 넘는 외국 기업들이 200만 명이 넘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북미지역의 회사가 전체의 1/4을 차지한다.

지난 2005년 영국의 FDI 실적은 작년 1,937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전년 한 해간 조성된 외국기업들의 영국회사 인수 붐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대표적으로 이동통신업체인 O2, 금융사인 Abbey National, 향만업체인 P&O등의 예를 포함한다. 2006년 영국의 FDI 유치액은 1,395억 달러였다.

국가별 투자유치 현황(프로젝트 건수 기준)

순위	국가	프로젝트 (건수)	일자리 창출 (명)
1	미국	446	14,431
2	일본	84	2,054
3	인도	76	1,449
4	캐나다	75	1,938
5	독일	67	1,822
6	프랑스	59	2,780
7	호주	53	1,047
8	아일랜드	44	1,104
9	네덜란드	30	680
10	노르웨이	28	212
기타	기타	258	6560(중국 1,017)
총계		1,220	34,077

자료: UK TI 2005 Annual Report

국가별 영국투자기업 현황(회사 수 기준)

국별	투자회사(단위: 개)
미국	14,393
독일	4,724
프랑스	4,262
네덜란드	3,818
아일랜드	1,985
스위스	1,944
일본	1,445
스웨덴	1,425
버뮤다	1,332
호주	1,218
캐나다	1,154
덴마크	930
이탈리아	877
벨기에	705
노르웨이	607
인도	406
말레이시아	187
중국	181
기타지역	5,202
전체	46,795

자료: UK TI 2005 Annual Report

산업별 투자유치 현황

순위	산업부문	건수
1	소프트웨어	150
2	IT, 인터넷, E-commerce	134
3	제약, BT	98
4	금융	75
5	전자	71
6	매니지먼트	70
7	자동차	59
8	기타	563
총계		1,220

자료: UK TI 2005 Annual Report

활동분야별 투자유치 현황

순위	산업부문	건수
1	서비스	486
2	제조업	288
3	R & D	164
4	HQ	151
5	유통	95
6	연락사무소	21
7	E-Commerce	15
총계		1,220

자료: UK TI 2005 Annual Report

영국의 투자 유치 성공은 '글로벌 경제 허브'로서의 확실한 자리매김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완화된 해외기업의 기업인수 규제, 이민 증가, 무엇보다도 강력한 영어기반의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을 주요인으로 들 수 있다.

한편 최근 UNCTAD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도 영국의 FDI는 약 1,700억 달러 규모로 3년 연속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은 지난 한 해 78% 성장을 보이며 1,773억 달러의 FDI를 유치 성공을 통해 투자1위국으로 재 등극한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으며 여전히 유럽의 최대 투자유치국의 자리를 지키며 유럽 전체 투자유치의 35% 점유를 나타냈다.

3. 우리기업 투자동향

우리나라의 대 영국 투자는 총534건에 22억712만 달러로 투자액 기준으로 영국은 우리나라의 제8위의 투자대상국이다.

2006년에는 42건 7,144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2007년에는 9월 말까지 44건에 8,444만 달러를 투자하여 증가세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대 영국 투자

(단위: 건,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 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1980년 이전	17	15	755	16	709
1981	2	0	442	1	379
1982	4	1	1,434	4	709
1983	0	0	0	2	732
1984	2	1	640	1	190
1985	2	1	315	3	628
1986	1	1	100	1	138
1987	7	5	4,788	5	4,040
1988	9	6	9,279	9	6,677
1989	12	3	14,973	9	8,121
1990	12	3	33,613	14	19,281
1991	14	5	51,308	16	32,579
1992	11	4	31,777	10	47,858
1993	9	4	31,713	13	27,298
1994	16	8	58,714	10	26,227
1995	26	16	82,165	23	71,032
1996	36	14	846,810	45	214,515
1997	23	7	148,898	30	113,802
1998	18	4	202,245	28	379,187
1999	23	5	153,192	31	96,269
2000	43	15	56,582	44	31,806
2001	15	8	323,058	20	320,240
2002	23	11	68,979	24	68,632
2003	13	4	125,893	12	95,333
2004	19	12	313,474	18	273,922
2005	50	22	92,881	61	74,978
2006	28	15	130,908	42	71,439
2007(1~9월)	38	24	93,950	44	84,443
총 계	473	214	2,878,886	536	2,071,16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영국에는 2008년 5월 기준 활성투자기업으로 제조업 50개사, 도·소매업 39개사, 서비스업 26개사, 기타 11개사 등 130여 개 업체 이상이 활동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LG 전자, 대우 전자 등 가전 3사와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SK텔레콤, 현대, 삼성, 한진 중공업, 국민, 신한, 삼성 증권 등이 대표적 현지 진출 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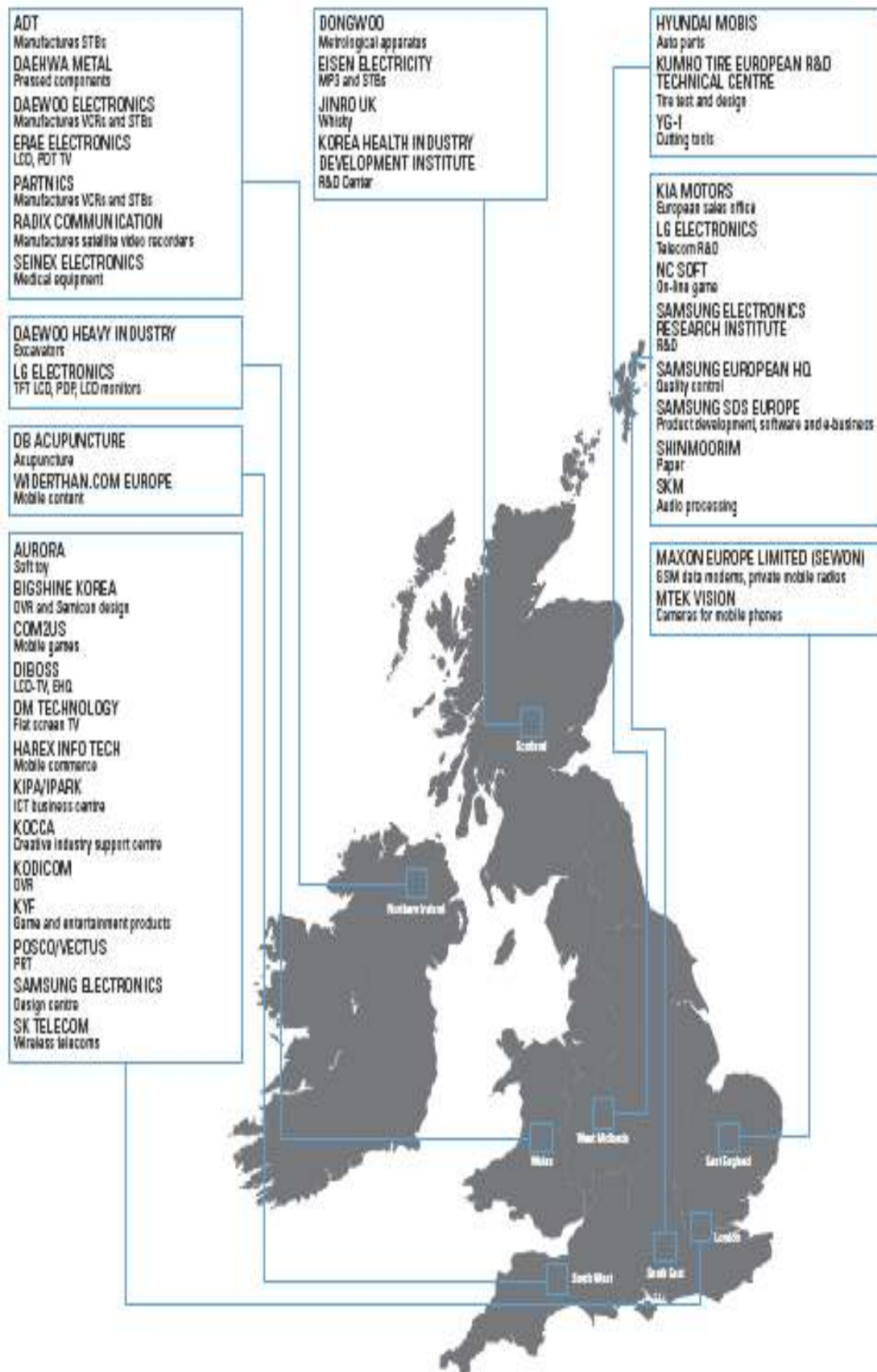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경우 고임금 등으로 현지 생산기지를 철수하거나(SKM 유럽 법인 등) 수출거점 확보 및 생산단가 인하 등의 이유로 동유럽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제조 부문 (삼성전자 및 LG전자의 생산파트 등)을 제외하고는 판매법인의 진출 성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한국 100대 기업 영국 현지 투자 현황(2008)

업체명	취급분야(업종)	진출연도
삼성전자 영국판매법인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판매업	1984
현대자동차 영국 법인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판매업	2005
엘지전자 영국판매법인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판매업	1987
삼성생명런던사무소	생명 보험업(*연락사무소)	2002
에스케이 에너지 유럽	원유 거래 등	2001
국민은행 런던현지 법인	은행업	n/a
지에스칼텍스 런던 사무소	원유 거래업(연락사무소)	1994
기아자동차 영국 판매 법인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판매업	2002
(주)케이티 런던사무소	전기 통신 회선설비 임대업	1995
우리은행 런던지점	은행업	1978
현대중공업 런던지사	강선 건조업(연락사무소)	1973
에스케이텔레콤 유럽법인	무선 전화업(리서치)	2002
삼성물산 런던법인	상품 종합 도매업	1975
삼성화재해상보험 런던사무소	손해 보험업(연락 사무소)	2005
대한항공 런던지점	정기 항공 운송업	1973
신한은행 런던지점	은행업	1991
한국외환은행 런던지점	은행업	1967
엘지상사 영국법인	상품 종합 도매업	1977
한진해운 영국지사	외항 화물 운송업	1988
하이닉스 반도체 영국법인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	1986
삼성중공업 런던지점	강선 건조업(연락사무소)	1977
대우인더내셔널 런던사무소	상품 종합 도매업	n/a
대우건설 런던지사	아파트 건설업(구매. 연락사무소)	2000
현대상선 영국법인	외항 화물 운송업(영업대행)	1996
대우조선해양 런던지점	강선 건조업(연락사무소)	2000
현대건설 런던지사	도로 건설업(연락 사무소)	1982
현대해상화재보험 런던사무소	손해 보험업(연락 사무소)	n/a
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코리안 데스크	은행업(코리안 데스크)	2005
동부화재해상보험 런던사무소	손해 보험업(연락 사무소)	1981
코리안리재보험 런던사무소	생명보험 재 보험업(연락 사무소)	1978
아시아나 항공 런던지점	정기 항공 운송업	2002
에스티엑스팬오션 영국법인	외항 화물 운송업	2005
씨제이㈜ 런던사무소	당류 판매업(연락 사무소)	1978
삼성테크윈 영국법인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n/a
한진 중공업 런던사무소	강선 건조업(연락사무소)	1992
대우일렉트로닉스영국생산판매법인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생산판매	1988

자료: KOTRA 런던무역관

영국 투자 진출도 현황(제조공장, 기술개발연구소)



자료: UKTI

영국 진출 주요 현지법인 및 투자금액

(단위: 천 달러)

현지법인	투자 금액
HYNIX SEMICONDUCTOR EUROPE HOLDING LTD.	552,000
HYNIX SEMICONDUCTOR WALES LTD.	46,200
LG ELECTRONICS WALES LTD.	332,033
SAMSUNG EUROPE PLC.	135,120
KOREA CAPTAIN COMPANY LTD.	98,680
DAEWOO UK HOLDINGS PLC.	89,609
UK SPC	49,738
DAEWOO ELECTRONICS U.K. LTD.	39,760
HYUNDAI CORPORATION U.K. LTD.	22,769
SK ENERGY EUROPE LIMITED	55,976
SAMSUNG U.K. LTD.	5,649
ACRET LIMITED	27,414
DAEWOO U.K LTD.	42,330
KOLON U.K. LTD.	38,648
PANTHER CAR CO., LTD.	26,869
LG ELECTRONICS U.K. LTD	23,054
HYUNDAI MOTOR UK LIMITED	34,850
SAMSUNG ELECTRONICS U.K. LTD.	34,673
SAMSUNG TRADING PLC.	15,250
KOLON IMPERIAL GRAPHICS PLC.	29,248
SYMBIAN LTD.	26,775
DAEWOO ELECTRONICS SALES U.K. LTD.	23,500
CELTIC OIL LIMITED	729
INTERNATIONAL METROLOGY SYSTEMS(SCOTLAND) LTD.	10,300
CODA SA1 LLP.	16,574
HAITAI CORPORATION EUROPE LIMITED	701
LG ELECTRONICS NORTH OF ENGLAND LTD	12,074
SAMSUNG HEAVY INDUSTRIES U.K. LTD	3,601
SK GLOBAL EUROPE LTD.	13,452
RADIX TELECOM LTD.	13,000
EURO E.LAND CO.,LTD	7,274
DAEWOO CARS LIMITED.	9,750
CHEVROLET UK LIMITED	9,530
FT(FCR)	5,269
SAMMI SOUND TECHNOLOGY (UK) LIMITED	1,213
JINRO UK LTD	7,652
JINRO SCOTLAND LTD.	7,553
NCSoft EUROPE LTD.	6,898
HALLA EURO ENTERPRISE LTD.	2,510
O1 INCORPORATED	6,250
VECTUS LIMITED	6,200
POSEC-EUROPE LTD.	5,300
STX PAN OCEAN(U.K) CO., LTD.	5,156
YOUNG SHIN UNITED KINGDOM CO.,LTD.	2,624

YG-1 UK HOLDINGS LTD.	4,841
LG INTERNATIONAL (U.K) LTD.	4,754
HOLTRONIC TECHNOLOGIES LTD.	3,600
SKM EUROPE, LTD.	3,943
TRESOR DATA LTD	3,700
TRIGEM COMPUTERS (U.K)LTD	3,829
DONG JIN PRECISION (U.K) CO.,LTD.	3,780
HAITAI ELECTRONICS(U.K) LIMITED	2,690
WOO ONE UK LTD.	1,758
CCA ELECTRONIC LTD.	3,000
CODA. UK LIMITED.	689
MOMUS VENTURES GROUP, INC.	2,750
SHINHO ELECTRONICS & COMMUNICATIONS(U.K) CO.,LTD.	1,648
YOUNG HEUNG INTERNATIONAL (BVI)LTD	2,400
LODGE STURTEVANT LIMITED	2,290
YU SUNG(UK) LTD.	2,265
TENZO LIMITED	1,600
ALPHAMERIC PLC	1,944
VK MOBILE (UK) LIMITED	1,862
ERAE ELECTRONICS EUROPE LIMITED	1,828
WONJIN REFRACTORIES INTERNATIONAL LIMITED	1,063
ELMSDALE MEDIA LIMITED	1,616
SK SHIPPING EUROPE LTD.	1,441
PARTSNIC U.K CO., LTD.	1,579
01 INCORPORATED	1,550
SUNGNAM U.K LTD.	1,501
NOVAURIS LABORATORIES UK LIMITED	1,383
SAMSUNG SDS EUROPE LTD.	1,479
A.D.T. EUROPE LIMITED	852
DAESUNG CIRCUITS LIMITED.	1,354
PJ ELECTRONICS(UK) L.T.D.	1,166
MARCRIST EUROPEAN DIAMOND CENTRE LTD.	1,008
FELIXSTOWE INTERNATIONAL COLLEGE	544
SK TELECOM EUROPE LIMITED	1,000
ANYSTEEL LIMITED.	1,000
SCANCELL LIMITED	100
KODICOM EUROPE LTD.	518
MS JANG AND BOLLAND LIMITED.	709
HANJIN OVERSEAS BULK LTD.	1,000
DACON ELECTRONICS PLC	972
OSSTEM UK LIMITED.	261
DAE HWA METAL U.K LTD	929
WIDERTHAN UK LTD.	459
A&A SOFT TOYS(UK)LTD.	800
HYUNDAI MERCHANT MARINE (EUROPE) LTD	772
DULSORI UK LTD.	674
WWW.1Z1.COM LIMITED	750
DM TECHNOLOGY UK., LTD.	677

KYF EUROPE LIMITED	638
CASS MARITIME LIMITED.	610
DHC UK LIMITED.	609
LG ELECTRONICS MIDDLE EAST CO.,LTD	600
NBUSTER UK LTD.	540
FINE U.K CO.,LTD.	411
GMP(UK) LIMITED	500
LEVELSEAS HOLDING LIMITED	500
LFP PRODUCTS LIMITED	500
CHINA PRIVATE EQUITY PARTNERS CO., LTD.	500
PLANET-M LTD.	479
BIONEER EUROPE LTD.	472
SUNG KWANG ELECTRO MECHANICS UK,LTD.	284
TECHSAN I & C UK LTD.	58
SEINEX ELECTRONICS LTD.	94
TAT-12/13	148
SAMHWA LTD.	384
GOODMANS INDUSTRIES LIMITED	353
MAXON CIC EUROPE LIMITED	380
GLOBAL SHIPPING MASTER UK LTD.	379
HANJIN EUROBULK LIMITED	375
SOFCO LTD	370
HNK TECH EUROPE LTD.	362
FNS UK LIMITED	358
PROLYSIS LIMITED	352
LOTTE TRADING LONDON CORPORATION LIMITED.	286
HEAT TRACE LIMITED.	337
GMP PROGRAPHICS EUROPE LTD.	330
SUPREME D LTD.	66
NEPES EUROPE LIMITED	284
JINDO (U.K.) LTD.	279
PEMBURY TRADING U.K. LIMITED	277
INNOCEAN WORLD WIDE UK LIMITED.	277
ROSEHILL ENERGY LIMITED	263
CAMBRIDGE 4 YOU CO., UKPIC	254
MAKE NOODLE HEAVEN LIMITED	189
GLOBAL PARTNERS LOGISTICS U.K	170
THE PHILANTHART FOUNDATION(JERSEY)LTD.	250
KIM CHEE CO., LTD.	245
DME	243
PENTAMEDIA LTD.	83
SSANGYONG(U.K.), LTD.	153
P AND J INTERNATIONAL LTD.	193
FIC PRE UNIVERSITY COURSE	9
BIGSHINE UK LTD.	188
SJ SHIPPING AND CONTAINER (UK) LTD.	182
MOORIM U.K., LTD	178

EURO MERCHANT MARINE CO., LTD.	2
PETER GREESON LTD.	167
SSAMZIE (UK) LIMITED	131
EURO CREATURE COMFORTS MSPECS LTD.	146
JR INTERNATIONAL UK CORP.	155
BATTLETOP UK LTD.	150
DIGICO UK LTD.	146
YNK FOOD UK	104
ICURIE LAB HOLDINGS LTD.	111
KUMHO U.K. LTD.	105
KOREA SHIPPING U.K. LTD	104
GANIANDGAI	70
IAE EDUNET LTD.	100
MBIZ GLOBAL CO., LTD.	97
DAEBONG SANUP	95
Y AND T LIMITED	97
MAXON SYSTEMS INC.(LONDON), LTD.	90
NORWEIGIAN CHURCH GLASS CO., LTD.	45
NORWEGIAN CHURCH GLASS COMPANY LTD.	27
DIGITRA SYSTEMS LIMITED	80
BAIKSAN OPC EUROPE LTD.	69
YUDO (UK) LTD.	46
PHANTAGRAM EUROPE LIMITED.	60
MODETOUR NETWORK UK	60
POCKETGAMES.COM LTD.	34
HUNGMYUNG (U.K) LTD.	50
HYOSUNG U.K. LTD.	49
YULSAN SILUP	48
HANIL HAPSUM.	47
VORTEC (U.K) LTD.	40
D2K GLOBAL LIMITED.	39
HANKOOK TYRE U.K. LTD.	38
SMI TECHNOLOGY EUROPE, LTD.	35
HAN'S HANCHESTER COLLEGE	29
PLANTYNET EUROPE LIMITED	29
PERSTEL LTD.	27
ESA-LOK LTD.	25
EMPOWER INTERACTIVE GROUP LTD.	24
KUKJE U.K. LTD.	23
KI-ON (U.K) LTD	21
SAMDO MULSAN	18
CAS CORPORATION UK LIMITED	16
SUNG BANG M.K.LTD.	9
HANATOUR EUROPE LIMITED	3
SAMSUNG U.K. CONSTRUCTION CO.,LTD	2
EUROPA TOOL CO.,LTD.	2,239
SAMSUNG OPTO-ELECTRONICS UK., LTD.(SOUK)	2,12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주요 투자법 내용

1979년 외환관리법이 폐지된 이래 외국인투자(해외투자 포함)를 포함한 국제 자본의 거래 및 이동이 완전 자유화 되었다. 즉, 외국인투자를 관리하는 법규 및 규제사항이 전혀 없으며, 외국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법규 및 제도도 운영되고 있지 않는다.

다만, 외국인 투자 및 해외투자를 포함한 자본 유출입에 대한 수지 파악과 일반적인 경제 활동에 관한 통계 정보를 수집, 조사하는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무역통계법(The Statistics of Trade Act, 1947)이 시행되고 있다.

□ 무역 통계법의 주요내용

- 통계청의 통계조사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
- 생산, 유통, 서비스에 대한 센서스
- 조사에 대한 회신방법, 회신기간
- 회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 추가적인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 조사결과 의회보고 관련사항
- 자문위원회
- 정보의 공개
- 정보조사에 따른 강제사항 등
- 기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1) 기업 환경

□ 외자에 대한 규제, 규제업종·금지업종 정부로부터의 인허가, 등록이 필요한 업종이 있다.

영국에는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것이 있다. 사업 인허가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업종의 예는 아래와 같다.

- 사업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업종의 예 : 금융서비스, 의약품, 우편, 주류판매, 유전개발, 전력, 가스, 통신, TV방송, 항공, 폐기물처리, 食肉(가공, 소매) 등
- 사업등록을 필요로 하는 업종의 예 : 의료기기, 의료·복지서비스, 도박장, 폐기물 수송·브로커, 식품판매, 양계장, 낙농업 등

□ 출자비율 제한은 특별히 없다.

□ 외국기업의 토지소유 가부가능. 조건 등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 있다.

영국에서는, 외국기업이 부동산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데 있어 규제는 없다. 영국에서 토지의 최종적인 소유권은 왕실(The Crown)에 있다. 토지소유의 형태로서는, freehold와 leasehold가 있고, 각각 일본의 소유권과 임차권에 해당한다. 영국에 거점을 설립하는 기업에서는 공업용 부동산은 freehold, 오피스물건은 leasehold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토지를 산업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있어, 각 자치체의 개발계획국으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상공업부동산 및 각 지방의 개발, 건축 규제에 대해서 각 지역의 투자유치기관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투자 제도, 투자촉진기관 - III 투자 촉진을 시행하는 기관을 참조

□ 개발·건축규제에 대한 상세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 웹사이트: <http://www.odpm.gov.uk>

영국에서는 비거주자도 국내규제에 따라서 토지소유가 가능하고, 외국기업의 토지소유에 대해서 제한은 없다. 토지소유의 절차는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 왕실토지등기소(Her Majesty's Land Registry)에서 토지소유권을 등록한다. 상업용 부동산의 leasehold는 통상 15년이고, 5년마다 갱신된다. 또 freehold는 무기한 계속될 수 있다. 토지의 구입, 임차에 있어서는, 양도증서 작성비용, 인지세(구입시, 상세한 것은 아래에), 지방자치체의 조사 비용, 은행송금 수수료 등의 법적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물건의 소개를 부동산업자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로 연간 임대료의 약 10%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

□ 토지등록에 관한 상세

- 잉글랜드 웨일즈: Her Majesty's Registry
 - Tel: 0845 308 4545(국내전용)
 - Tel: +44-(0)20-7917-8888
 - Email: enquiries.pic@landreg.gov.uk
 - Website: <http://www.landreg.gov.uk>
- 스코틀랜드 : Registers of Scotland
 - Tel: +44-(0)131-479-3620 / Fax: +44-(0)131-479-3688
 - Email: customer.relations@ros.gov.uk
 - Website: <http://www.ros.gov.uk>
- 북아일랜드 : Land Registers of Northern Ireland
 - Tel: +44-(0)2890-251700
 - Website: <http://www.ilrni.gov.uk>

투기목적의 부동산 투자나 개인적 사용을 위한 부동산 구입에 제한은 없다. 영국에서 사업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인지세(stamp duty)로 불리는 고정자산세가 부과된다. 인지 세율은 아래와 같다.

- 60,000파운드까지 비과세
- 60,000파운드~250,000파운드: 1%
- 250,000파운드~500,000파운드: 3%
- 500,000파운드 이상: 4%

또한, 비 거주용 부동산에 거주하는 기업이나 그 외 점유자에게는, 통일사업세(Business Rates)라는 지방세가 부과된다. 과세평가가 액은 5년마다 재평가가 시행되고, 점유물건의 임대료 해당금액에 정부에 의해 정해진 요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해서, 각 지방자치체에 의해서 설정된다.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에서 각각의 세액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하기 웹사이트에 기술되어 있다.

- 잉글랜드 웨일즈 Website: <http://www.local-regions.odpm.gov.uk>
- 스코틀랜드 Website: <http://www.scotland.gov.uk>
- 북아일랜드 Website: <http://www.dfpni.gov.uk>

□ 자본금에 관한 규제

외자규제 없다. 국내 기업이라도 공개유한책임회사(Public Limited Company)는, 사업 개시에 앞서 최저 5만 파운드의 발행 완료 주식 자본을 소유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외자에 대해서는 고용 창출, 지역 개발에 대한 공헌, 신제품, 신기술의 도입, 경영 관리 기술의 활성화 등의 견지에서 그 진출을 환영하고 있고, 국내 자본과 차별 없이 자유롭게 경합시키는 자세를 갖고 있다. 자기 자금 등의 규제에 관해서는 노동 허가, 입국 허가신청 등을 참조하면 된다.

□ 기타 규제

- 국산화율
 - WTO, OECD규정에 따라, 정부는 투자 프로젝트 관련 기계나 조립 부품 등의 현지 조달률을 강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WTO, OECD규정에 따라, 정부는 투자 프로젝트 관련 기계나 조립 부품 등의 현지 조달률을 강요할 수 없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운영 및 진출 지역에 대한 경제 공헌의 관점에서, 현지 조달율을 높이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2) 외자에 관한 장려

■ 장려 업종

고부가가치 분야나 영국이 앞서있는 산업 분야(IT, 전자공학, 바이오 등의 하이테크 산업, 자동차, 연구 개발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외국인 기업가에 의한 투자에 대해 체재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다. 또한, IT 등 전문직의 노동허가증 발급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 이노베이터즈·스킴(scheme)

전자상거래 등을 기본으로 한 기업을 우대하는 것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에 의한 영국으로의 투자에 대해, 지금까지 투자가로서 입국하는 경우에 필요로 했던 자기 자금이나 투자 금액 등에 관한 조건에 대신해서, 전자상거래나 그 밖의 기술혁신을 영국에 미치게 할 만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起業 後の 운영 방법을 명시할 것을 요건으로 했다. 2000년 9월부터 2년간의 시험적 조치로서 도입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현재도 신청을 받고 있다. 동 스킴의 예비 신청이 받아들여 지면, 이노베이터로서 18개월간의 체재 허가가 부여된다. 이 기간을 포함해 최장 5년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5년 후에는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다.

- 영국에서 2명 이상의 고용(풀 타임)을 창출할 수 있을 것
- 신청자는 해당 영국 기업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할 것
- 해당 영국 기업이 신청자에게 수입을 가져오게 되기까지의 기간, 수입 보조 등 영국의 공적 기금이나 아르바이트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이 가능할 것
- 입국 후 최초 6개월간은 자기 자금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자금을 갖고 있을 것

내무성 이민국이 아래 3분야를 점수제로 심사를 시행한다. 동 국의 Business Case Unit가 신청을 수령하고부터 통상 2주간 이내에 결과가 나온다. 비자는 거주국의 영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한다.

- 인격 : 업무 경험, 起業家로서의 명백한 능력, 학력·자격(특히 기술계, 과학계, 비즈니스계), 인격에 관한 추천장
- 사업 계획(일반) : 계획이 기술 면, 상업 면, 재정 면에서 현실적인 것, 경영진 설립에 관한 계획의 내용
- 사업 계획(영국 경제에 대한 공헌도) : 어떠한 숙련 노동자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지, 창출 고용 수, 사업 계획의 신규성 및 창조성(영국이나 특정 산업에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R & D 활동에 대한 투자액 등

□ 스킴에 관한 상세

- Business Case Unit Immigration and Nationality Directorate 18th
 - Floor, Lunar House, 40 Wellesley Road, Croydon, CR9 2BY, UK
 - Tel: +44-(0)20-8604-3101
 - Fax: +44-(0)20-8604-5933
 - Website: <http://www.ind.homeoffice.gov.uk>

□ 비자에 관한 안내 리플렛 청구장소

- Visa Correspondence Section Ukvisas London SW1A 2AH, UK
 - Tel: +44-(0)20-7008-8438(문의), +44-(0)20-7008-8308(신청용지청구)
 - Fax: +44-(0)20-7008-8359/8361

■ 노동허가증 발급규제 완화

2000년 10월에 IT관련산업이나 의료 등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구주경제영역(EEA) 지역 외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증 발급규제를 완화하였다. 상세한 것은 「현지인의 고용 의무」 페이지 참조요망.

- Work Permits (UK) Integrate Casework Directorate, North Home Office Level 5, Moorfoot Sheffield S1 4PQ, UK
- Tel: +44-(0)114-259-4074 / Fax: +44-(0)114-259-3776
- Website: <http://www.workpermits.gov.uk>

3) 외국인 취업규제·체류허가, 현지인 고용

□ 외국인 취업규제

외국인의 노동허가증 신청에 있어서는 영국인 또는 EEA국민을 고용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구주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가맹국민이 아닌 자, 또는 체류자격이 없는 자가 영국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한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노동허가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

- Work Permits (UK) Immigration and Nationality Directorate Home Office
- Level 5, Moorfoot, Sheffield S1 4PQ, UK
- Tel: +44-(0)114-259-4074 (일반적인 문의)
- Fax: +44-(0)114-259-3776
- Website: <http://www.workpermits.gov.uk> / <http://www.ind.homeoffice.gov.uk>

한국인이 비즈니스 목적으로 방영하는 경우, 협의나 계약교섭, 트레이드 페어, 회의, 트레이닝 등으로의 출석 등 한정된 범위 내의 상용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급 또는 무급의 노동, 영국 내에서의 제품생산 및 서비스 제공, 공공으로의 제품 서비스의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 입국 허가는 통상, 각 회 최장 6개월의 관광 비자 또는 상용 비자가 입국 시에 부여되고, 유효 기간 내라면 영국으로의 출입국은 무제한이다. 정기적으로 상용으로 방영하는 경우에는, 2년 또는 5년간 유효한 복수 회(複數回) 유효 비자도 있다.

- Ukvisas Visa Correspondence Section London SW1A 2AH, UK
- Tel: +44-(0)20-7008-8438 (문의 전반) / +44-(0)20-7008-8308 (신청용지청구)
- Fax: +44-(0)20-7008-8359/8361
- Email: visas.foruk@fco.gov.uk
- Website: <http://www.ukvisas.gov.uk>

□ 체류 허가

- EEA 가맹국민이 아닌 경우, 노동허가가 필요
- 영국으로의 대내직접투자에서 재류허가에 대해서는 자기자본과의 관계가 있다. 상세한 것은 「현지인의 고용의무」 페이지 참조.

□ 입국허가 기타 출입국관계

- 주한영국대사관 비자과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4번지 태평로 40 (우편번호: 100-120)

- Tel: 02-3210-5500
- Fax: 02-3210-5653
- Email: consular.seoul@fco.gov.uk
- Website: <http://www.britishembassy.or.kr>

□ 영국 내무성 이민국

- Immigration & Nationality Directorate Home Office Lunar House, 40 Wellesley Road, Croydon, CR9 2BY, UK
- Tel: +44-(0)870-606-7766
- Website: <http://www.ind.homeoffice.gov.uk>

□ 노동허가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노동자

통상 아래의 노동자가 영국에 입국하는데, 노동허가증은 필요 없다. 단 노동허가증 대신 입국허가증을 사전에 취득할 필요가 있다. 입국허가의 신청은 신청자의 거주국에 파견되어 있는 영국외무성의 정부기관에서 시행한다.

영국에 지점이나 자회사를 가지지 않고 이것을 설립하려고 하는 외국기업의 단독대표자(Sole Representative). 단독대표자는 영국 외에서 채용된 종업원에 한하며, 해당 외국기업의 대주주가 아닐 것. 우선 1년간의 재류허가가 부여되고, 통상은 그 후 3년간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영국에서 자영업자로서 사업을 설립하려고 하는 자. 영국의 기존 기업을 매수하는 자, 또는 영국 기업의 파트너가 되는 자를 포함. 이 경우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다.

- 사업설립을 위해 상당한 자기자금을 영국으로 가지고 들어오거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수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해당기업에 의해 풀 타임으로 고용이 행해지고, 기업은 최저 2명의 고용(풀 타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미 영국에 在住하는 자만)
- 자영업의 경우, 영국에서의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최저 200,000파운드를 소유하고 있을 것 등

□ 최근의 동향

- 정보기술(IT), 의료, 엔지니어링 분야 등 인원이 부족한 직종에서는 노동허가증의 발급요건이 완화되고 있다. 또한 2002년 1월부터 높은 수준의 技能 및 경험을 가진 개인에 대해, 영국으로의 이주와 노동을 허가하는 「고도기능(高度技能)이주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상세한 것은 「현지인의 고용의무」 페이지 참조
- 현지인 고용의무
 - 외국인의 노동허가증 신청에 있어서 영국인 또는 EEA 가맹국민을 고용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의 노동허가증 신청에 있어서, 고용자는 대상의 직위에 대해서 거주노동자로는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노동허가증은 고용자가 신청, 내무 성 Immigration & Nationality Directorate가 발행한다. 유효 기간은 최고 5년간. 또한 노동 허가증은 체류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시에 별도 입국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 노동허가증은 통상 아래 4가지의 기본 항목에 따라 발급 받을 수 있다.
 - 영국에서 결원이 생기고 있는지 여부
 - 업무에 필요한 기능, 자격, 경험은 무엇인가
 - 발급 대상이 되는 노동자가 업무를 행하는 데 있어, 적합한 자격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거주 노동자”(Resident Worker: EEA 가맹국의 국민 또는 1971년 입국 법에 의한 定住者) 가운데, 그 업무에 적합한 자격 또는 경험을 가진 노동자가 없는지 여부
- 노동허가증의 신청은 제1종(Tier 1)과 제2종(Tier 2)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제1종 신청은 간소화 신청절차로, 아래 4가지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 다국적 기업 내부에서 경험과 지식을 소유하는 자가 이동하는 경우
 - 임원 정도의 직위에 취임하는 경우
 - 영국으로의 대내직접투자를 동반하는 경우
 - 인원이 부족한 직종(Shortage Occupations)의 경우
 - 제2종 신청은 상기 제1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고, 신청은 제1종보다도 복잡하고 아래의 서류나 정보가 필요하다.
 - 해당 노동자의 자격·경험의 증명
 - 인원 모집을 어떻게 했는지 (채용 광고 등)에 대한 정보
- 노동허가증의 신청은 소정의 양식·방법으로 우송 또는 E-mail로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과거 5년 이내에 한번도 노동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기업이 신청을 하는 경우는, 영국에 거점을 가진 기업인 것을 명시하는 서류(감사완료 회계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 등)의 제출이 필요하다.
 - Work Permits(UK) Integrated Casework Directorate, North Home Office Level5, Moorfoot, Sheffield S1 4PQ UK
 - 일반적인 문의
 - Tel: +44-(0)114-259-4074
 - Fax: +44-(0)114-259-3776
 - Email: custmrel.workpermits@wpuk.gov.uk
 - 신청대상자가 영국 내에 체재 중인 신청에 대해서
 - Tel: +44-(0)114-259-4441
 - Fax: +44-(0)114-259-3728
 - Email: incountry-decision.workpermits@wpuk.gov.uk
 - Website: <http://www.workpermits.gov.uk> 및 <http://www.ind.homeoffice.gov.uk>
- 고도기능자(高度技能者) 이주 프로그램: 2002년 1월 28일부터 높은 수준의 기능 및 경험을 가진 개인에 대해, 영국으로의 이주와 노동을 허가하는 「高度技能 이주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아래 4분야에서 레벨을 점수제로 자기 평가하여, 합계 75점 이상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각 분야에서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학력, 실무경험, 과거의 수입, 전문분야에서의 달성업적)

- 신청은 현재의 거주지에 따라서 다르고, 영국 거주자인 경우는 Work Permit (UK) 앞으
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국의 영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자신청과 함께 제출한다.
특정 기능이나 직종에 대해서, 同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노동허가를 부여해
외국인의 영국이주, 취업을 촉진하는 경우가 있다.
- HSMP (Highly Skilled Migrant Programme) Team Work Permits (UK) Immigration and
Nationality Directorate, North Home Office Level 5, Moorfoot, Sheffield, S1 4PQ, UK
 - Tel: +44-(0)114-259-1113
 - Fax: +44-(0)114-259-1392
 - Email: hsmpt.workpermits@wpuk.gov.uk
 - Website: <http://www.workpermits.gov.uk> 및 <http://www.ind.homeoffice.gov.uk>

□ 투자허가

- 외국인 투자를 위한 특별한 인허가 절차 없음. 내국 기업에 준하여 자유로이 투자
 - 다만, 롤스로이스나 BAE 시스템 같은 전략물자 취급업체에 대한 투자는 외국인 1인당
전체지분의 15% 지분 소유 금지
 - 방송미디어의 경우 정부로부터의 인허가 획득 필요
 - 영국 은행지분의 10% 이상 초과 구매 시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신고의무 발생
- 외국기업의 회사설립 절차·필요서류
 - 기본정관, 부속정관, 선언서, 회사설립증명서 등이 필요.
 - 영국에서의 회사설립은 기업의 국적을 불문하고 동일한 룰이 적용된다. 기업형태에
따라 설립절차가 다르다.

4) 투자인센티브

■ 일반적인 인센티브

□ 선택적인 재정보조금제도(Selective Finance for Investment in England: SFI)

- 투자지원지역(Assisted Areas: Tier1, Tier2, Tier3로 분류)을 설정하여 실업문제 해결 및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지원 지역에 투자하는 업체에게 보조금을 제공
(세금이 면제되지 않는 보조금)
 - 동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생산성향 기술의 파급효과에 따라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최소 10,000파운드를 무상현금 형태로 분할 지급(주로 총 고정투자비용의 10~15%)
중소기업의 경우 좀 더 많은 지원이 있을 수 있음.
 - 100,000파운드 또는 그 이상의 재정 지원을 원할 경우 반드시 고용창출이 있어야 하
며, 프로젝트 또한 경쟁력이 있고 3년 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함.
 - 고정자산비용에는 대지구입, 부지조성 및 건물 건축, 플랜트 및 기계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에 지원되나 특허료, 자문료, 기계설치 비용도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 프로젝트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야 하며, 그에 대한 측정은 현재 다른 지역
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산업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함.
- 프로젝트는 또한 경쟁력이 있어야 하며 재정지원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5년 동안 성과
를 측정함.

- EU자원에서 경쟁력이 없는 철강, 석탄, 합성섬유, 자동차, 농업, 그리고 어업분야는 지원 가능 산업분야에서 제외. 또한 투자지원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아닌 고용대체 프로젝트일 경우 지원이 제한됨.
- 보조금 교부절차는 통산부 담당부서, 각 지역별 정부사무소, Business Link 등을 통해 신청 양식인 RSA1을 지역별 정부사무소에 제출하여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됨. 보통의 SFI 팀에서 보조금의 가능 여부, 범위 등을 심사하나 사업단위가 크고 복잡한 프로젝트의 경우 런던에 있는 DTI에서 평가함.
- 전담부서명
 - Yorkshire Forward SFI Team
 - Yorkshire Forward Victoria House
 - 2 Victoria Place, Leeds
 - LS11 5AE
 - Tel: 0113 394 9860 / Fax: 0113 394 9870
 - Email: sfi@yorkshire-forward.com
 - Website: <http://www.yorkshire-forward.com>

□ 지역선별 보조금(Regional Selective Assistance: RSA)

- RSA는 스코틀랜드 지역에 제공되는 국가 차원의 지원계획으로, 유럽 공동체법 (지원대상 지역: Assisted Area)에 의해 지역정부 지원 대상 지역의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장려하기 위함.
-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주된 형태는 무상현금보조로 자본투자비용, 고용창출규모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나 보통 총 프로젝트 자본 비용의 10~20% 형태로 제공됨.
- 자본투자가 비교적 적은 프로젝트의 경우, 지원금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창출하는 일자리에 주어지는 처음 2년간의 급여에 따라 산정됨.
- Website: www.scottishdevelopmentinternational.co.kr

■ 세제상의 인센티브

□ 개 요

- 영국은 철저한 내외국기업 평등주의에 입각하고 있어 외국인투자가만을 위한 특별한 세제 혜택은 없음.

□ 일반적 세제상의 인센티브

- 낮은 법인세율
 - 주요 EU 회원국 중 가장 낮은 법인세율 실시. 세금 공제 전 경상이익의 30%
- 연구개발 및 공장건설 경비 세금면제
 - 개발촉진지구에 투자하는 경우 공장건설을 위한 자본비용 및 연구 개발비의 100%에 대해 세금을 면제

- 고율의 감가상각 인정
 - 사업용도의 건물, 기계류구입 비용에 대해 연 25% 감가상각비를 인정, 세제혜택부여

■ 연구 및 개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 EUREKA

- 개요
 - 유럽 내의 첨단기술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국정부가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도(영국은 통산부가 주관함)
 - DTI 가 50%까지 경비를 부담
 - 인센티브의 내용
 - 첨단기술 개발프로젝트 또는 생산성향상을 위한 단독 혹은 공동 연구 개발 프로젝트 추진 경비지원
- Website: <http://www.eureka.be/contacts/fundingList.do>

□ LINK 제도(Link Collaborative Research Scheme)

- 개요
 - 영국 내의 제조업체와 연구기관을 상호 연결하는 산학 협동프로그램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각종 개발 프로젝트의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임.
- 대상: 첨단기술 또는 일반제조업의 산학협동 연구개발 프로그램(5개의 주 카테고리 분류)
 - Electronics/Communications/IT
 - Food/Agriculture
 - Bioscience/Medical
 - Materials/Chemical
 - Energy/Engineering
- 지원규모: 총 프로젝트 소요경비의 50% 한도
- 기업수혜 요건: 영국 내 제조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업 (영국기업 또는 영국 내 투자실적이 있는 외국투자기업)
- Website: <http://www.ost.gov.uk/link/funding.html>

□ UK Foresight 제도

- 영국 내의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임.
- 대상: 선정된 연구주제에 따라 적합한 선정을 통하여 보조
- Website: <http://www.foresight.gov.uk/>

□ EU Fifth Framework Programme for R&D

- 산업정보기술에서 일상생활, 사회과학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의 공동프로젝트 소요 자금 지원을 통하여 업체간 연구개발 및 산학협동체제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 지원대상
 - EU 회원국 회사 또는 EEA 회원국 국적회사로 경쟁력을 갖춘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 (영국 내 투자기업 포함)
- 지원조건
 - 연구결과의 유용성 즉 연구결과의 보급 및 경제적 이용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일 것
 - 기술혁신 내지 기술 활용의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일 것
- 지원범위: 공동프로젝트의 소요자금의 50%까지 지원

□ SMART

- 개요
 - 영국의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보조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지원범위
 - 기술평가(Technical Review) 지원
 - 250명 이하의 중소기업이나 개인에게 보조되는 것으로 2,500파운드까지 지원되는데, 이것은 기술사용에 대한 Best Practice에 보조됨. (Toward to a best practice review of technology usage)
 - 기술연구 (Technology Studies) 지원
 - 혁신적인 제품이나 프로세스를 이끌어 내는 기술적 기회(to help identify technological opportunities leading to innovative products and processes)의 확인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보조하는 것으로 5,000파운드까지 보조됨.
 - 마이크로 프로젝트 (Micro Projects) 지원
 - 1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12개월 이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20,000파운드 이내 총비용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함.
 - 2,500파운드 이하인 소액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금은 기술적 진보성과 독창성을 지닌 Low-cost 제품의 원형이나 프로세스의 개발(Developing low-cost prototypes of products and process involving technical advance and/or novelty)에 보조됨.
 - 신기술의 상업적 기술적 연구 (Research Projects) 지원
 - 5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6~18개월 이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75,000파운드 이내 총비용의 60%(Tier2 지역인 경우 65%)를 보조금으로 지급함.
 - 총비용이 20,000 파운드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금은 혁신적인 기술에 관한 기술적/상업적 타당성 검증 후(Undertaking technical and commercial feasibility studies into innovative projects)에 보조됨.
 - 개발 프로젝트 (Development Projects) 지원
 - 25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6~36개월 이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200,000파운드 이내 총비용의 35%(Tier2 지역인 경우 40%)를 보조금으로 지급함.
 - 지급금이 20,000 파운드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금은 중대한 과학적 진보성을 지닌 신제품이나 프로세스의 전-생산 원형의 개발에 보조됨. (Undertaking development up to pre-production prototype stage of a new product and process involving a significant technological advance)
 - 특별 개발 프로젝트 (Exceptional Development Projects) 지원
 - 25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6~36개월 이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500,000파운드 이내 총비용의 35%를 보조금으로 지급함.
 - 지원금은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고비용 프로젝트에 보조됨. (Exceptional high-cost development projects with a strategic significance)

5) EU로부터의 금융지원

EU 금융보조금은 직접적으로 기업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European Commission이 유럽 내 각국의 보조금 지원기관을 통하여 지원하게 되는데, 4가지 구조적 기금 (Structural Fund)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 보조금 종류

- Regional Development Fund(ERDF)
- European Social Fund (ESF)
- 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 (EAGGF)
- Financial Instrument for Fisheries Guidance (FIFG)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투자진출형태

영국에서의 회사설립은 기업의 국적을 불문하고 동일한 룰이 적용된다. 진출형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라이선스 계약(License Agreement)
- 주재원사무소(Correspondent Office)
- 지점(Branch)
- 자회사(Subsidiary)
- 개인 사업주(Single Trader)
- 합작 투자(Joint Venture)
- 매수·합병(Mergers & Acquisitions)

실제 회사 등기 등의 절차는 변호사 사무소나 회계 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그 비용은 진출 형태나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등에 따라서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으로 다르다. 영국을 비롯해서 구주에서는 이러한 전문가나 컨설턴트와의 비즈니스상 교제는 불가결하고, 그 때문에 비용을 염두에 두고 있을 필요가 있다.

- 주한 영국 대사관 투자과
 - 주소: 서울 특별시 중구 정동 4번지 태평로 40 (우편번호: 100-120)
 - Tel: 02-3210-5611/3
 - Fax: 02-728-2797
 - Email: investuk@britain.or.kr
 - Website: <http://www.britishembassy.or.kr>
- 영국 정부 투자국(Invest-UK)
 - 주소: 1 Victoria Street, London SW1H 0ET, UK
 - Tel: +44-(0)20-7215-2501
 - Fax: +44-(0)20-7215-5651
 - Email: invest.uk@dti.gsi.gov.uk
 - Website: <http://www.invest.uk.com>

- Companies House
 - 주소: Crown Way, Cardiff CF14 3UZ, UK
 - Tel: +44-(0)29-2038-0011
 - Fax: +44-(0)29-2038-0149
 - Website: <http://www.companieshouse.co.uk>

나. 투자방식 개요

외국기업이 영국에 진출했을 경우 택할 수 있는 회사형태로는 크게 i) 지점 또는 사무소로 등록하거나, ii) 새로운 영국회사(비공개/공개 주식회사) 설립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다. 지점 또는 사무소 등록

외국회사가 영국에 일정한 형태로 존재하는 때에는 영국에 사무소 또는 지점으로 등록해야 한다. 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하거나 영국에 출장 와서 호텔 등과 같이 임시적인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영국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1) 사무소(영업장, Place of Business) 등록

외국회사가 영국에서 보조적, 임시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소 등록규정(place of business regime)에 따라 영국에 사무소 등록을 해야 한다. 임시적인 기능으로는 창고 시설, 관리 사무소 및 내부자료 처리시설 등을 일컫는다.

외국기업이 영국 내에 사무소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회사등기소(Register)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영문이어야 하며, 영문 이외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공증된 번역을 첨부해야 한다. 등록 수수료는 20파운드이며, 개설과 동일자에 등록할 때에는 100파운드이다. (스코틀랜드 또는 북아일랜드에 사무소를 개설코자 할 때에는 각각 Edinburgh, Belfast 상업등기소에 별도 등록해야 함.)

- 공증된 회사의 정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규정의 사본(Certified copy of the Memorandum & Articles of Association)
-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는 양식 #691
 - 회사의 이사와 비서의 명단
 - 회사를 위하여 근무하도록 요청된 어떠한 통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 가능한 한 사람 이상의 영국 거주자의 성명과 주소
 - 이사 또는 비서에 의한 영업장 설립일자의 법적 공고

□ 사무소 등록 후 신고사항

- 회계자료 보고
 - 사무소는 본사 재무제표를 등기료(15파운드)와 함께 영국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본사 재무제표가 영국 파운드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경우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을 기재해야 한다.
 - 본사 재무제표 제출기한은 결산일로부터 13개월이다.
- 신고내용 변동
 - 등록 후 신고내용 변동 시 소정의 서식으로 변동사실을 영국 등기소에 신고

2) 지점(Branch) 등록

- 외국회사가 영국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보조적 또는 임시적이 아닌 경우에는 지점 등록 규정(branch registration regime)에 따라 지점 등록을 한다. 지점은 외국회사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직되며, 이는 영국 거주자가 외국회사 본사와 거래하는 대신 영국지점과 직접 거래함을 의미한다.
- 1개 이상의 지점 설치도 가능하다. 지점을 설립한 외국회사는 지점 개설 후 1개월 이내에 서식 BRI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등록사무소에 제출하며 등록 비용은 20 파운드이다. 모든 서류는 공증된 영문번역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최초 지사 개설 후 복수 개설되는 다른 지점은 최초의 지점등록번호를 서식 BRI에 기재하면 정관 등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 회사 현황소, 메모랜덤 및 회사 정관의 인증된 사본(만약 원본이 영어 이외의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 인증된 영문판 문서와 더불어)
-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 BR1 양식
 - 외국회사 본점에 관한 사항
 - 회사 명칭
 - 사업장 명칭(회사 명칭과 다른 경우)
 - 회사의 설립국가, 설립국가에서의 법인등록번호, 설립 국가의 등록기관
 - 회사의 형태
 - 회사의 이사와 비서의 명단, 주소, 국적, 직업, 생년월일 등
 - 제 3 자와 거래 및 소송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이사의 권한의 정도 신용 또는 금융기관인지의 여부
 - EU 회원국 이외에서 설립된 외국회사는 추가로 아래사항을 신고해야 함.
 - 회사의 설립근거 법
 - 설립국가 내 주소, 회사의 목적, 자본금 금액
 - 본사의 회계기간 및 본사 소재국의 법에 따른 회계보고서 작성 및 공시기한
 - 영국 지점에 관한 사항
 - 지점 주소
 - 개설일자
 - 지점에서 수행하게 될 사업내용
 - 회사의 명칭과 사업장 명칭이 다른 경우는 사업장 명칭을 기재
 - 지점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영국 내 거주자의 성명 및 주소
 - 권한의 행사범위(즉, 위임기관이 범위 내 또는 제한을 표시한 정도 내인지) 및 공동 대표인 경우 관련된 자의 성명

□ 지점 등록 후 신고사항

- 회계자료 보고
 - 본사의 회계보고서 작성, 회계감사 및 공시에 관한 본사 소재지국에서의 의무에 따라 상이
 - 회사 설립국가 내에서의 공시의무가 있는 경우
 - 지점 설치 후 1개월 이내에 최근 공시 회계보고서 사본을 번역공증을 첨부, 제출
 - 회사 설립국가 내에서의 공시의무가 없는 경우
 - 사무소 관련규정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

- 회계보고서 제출기한
- 본사 소재국의 법이 공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법에 따라 회계보고서를 공시할 때마다 공시 후 3 개월 이내에 영국의 회사등기소에 회계보고서 사본 제출. 회계보고서는 등록비 15 파운드와 함께 제출
- 등록사항 변경: 변경 후 21일 내에 변경 신고

라. 새로운 영국회사설립

□ 영국의 회사종류

- 비공개주식회사(private limited company)
- 공개주식회사(public limited company: PLC)
- 척허회사(Chartered corporation)
- 무한회사(unlimited companies)
- 보증부 유한회사(companies limited by guarantee)

□ 주식회사 설립 절차

- 비공개주식회사
 -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회사등기소(the Registrar of Companies)에 제출하면 된다. 모든 소정양식은 회사등기소에서 구할 수 있으며, 서류 등록 비용은 20파운드이다. (설립과 동일자에 등록할 경우 100 파운드)
 - 회사설립 시 (모든) 자본출자자가 서명하고 공증된 회사정관 사본 (이때 자본출자자는 한 명이라도 상관 없음)
 - 초대 이사 및 비서역에 관한 보고서: 이사 및 비서역의 취임 동의서
 - (서식 10)와 회사의 등록된 사무소 주소 첨부
 - 회사 법 1985 에서 규정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서약서. 이 서약서는 공증인 임 회 하에 변호사, 이사 또는 비서역에 의해 작성
 - 회사설립에 필요한 제반요건이 충족된 경우, 회사등기소는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을 발급함. 회사설립증명서의 발급은 사실상 회사의 영업개시를 인가한 것을 의미하며, 그 이전에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회사설립 후 신고사항
 - 회계연도의 신고: 1996 년 4 월 1 일 이후 설립회사는 자동적으로 회사설립일로부터 1 년이 되는 달의 말일이 되나, 요건 충족 시 현재의 회계 연도 변경도 가능한 데, 이 때는 서식 225 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 신주 발행: 신주 발행 경우에만 해당
 - 상호 및 정관의 변경: 회사 상호의 변경은 인가 받는데 통상 10 일이 소요 되나 100 파운드의 수수료를 내면 하루 만에도 가능하다. 새로운 회사명은 '회사명 변경증명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on change of name)가 발급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설립 후 이사회 의 소집: 이사는 회사설립 후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회사를 설립하는데 따른 절차를 승인하고, 거래은행 및 회계감사인의 지정, 주주에 대한 주권의 발행 등 제 절차를 마쳐야 한다.
 - 법인 설립후의 보고의무
 - 회계자료 보고: 결산일로부터 10 개월 이내 재무제표를 회사 등기소(registrar)에 제출
 - 연차보고서 보고: 매년 작성, 제출의무가 있으며 작성일로부터 28 일 이내에 회사등기소(Companies House)에 제출. 제출수수료 £ 15

- 연차주주총회 개최: 매년 1 회 이상, 이전 주주총회로부터 15 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개최해야 함.
- 공개주식회사(public limited company: PLC) 설립
 - 비공개주식회사는 주식을 공모할 수 없는 반면, PLC는 자금 조달방법으로 주식공모가 가능하다.
 - PLC는 비공개주식회사보다 엄격한 법적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비공개주식 회사로 설립할 것인지는 각각의 장단점을 회사의 상황에 비추어 결정해야 하는데, 비공개 주식회사로 설립한 후 PLC로 전환 하는 것은 처음부터 PLC로 설립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하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 일부 기업들은 회사 이름 뒤에 붙는 PLC에 대한 신뢰성 때문에 주식 상장을 않으면서도 PLC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 PLC 설립방법은 비공개주식회사 설립과 유사하나, 다음 사항에 차이가 있다.
 - PLC 정관에 public limited company 로 명기해야 한다.
 - PLC 의 회사명은 반드시 public limited company 또는 PLC 로 끝나야 한다.
 - PLC 는 최저 2 명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 비공개주식회사는 최저 1 명의 이사
 - PLC 의 수권자본금은 50,000 파운드 이상이어야 한다.
 - 비공개주식회사는 1 파운드 이상으로 사실상 수권자본금 제한 없음.
 - PLC 의 발행주식 총액은 수권자본금액의 25% 이상이고, 주식이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되는 경우는 프리미엄 금액 전액이 납부되어야 한다.
 - PLC 의 비서역(company secretary)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경험 및 적절한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 PLC 가 최저자본금에 관한 요건을 충족시키면 회사 법(Company Act) 117 조가 규정한 설립인가증이 회사등기소 (registrar)로부터 발급되며, 동 인가증 발급 이전에는 업무상 거래나 차입행위가 금지된다.

마. 공장설립

- 공장설립법과 같은 단일 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 지방자치단체(Council)별로 각 투자사안에 비추어 처리하고 있다.
- 이는 한국의 법체계 정서로는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국의 내외국인 투자 촉진 취지는 고용창출이기 때문에 기업이 각 지역개발청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역개발청은 부지 선정에서부터 인력확보, 공장가동까지 turn-key base로 일괄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일반적으로 공장설립과 관련된 설립허가(factory permit) 획득을 위한 행정절차 소요는 대략 5주 정도 소요되며 최근에는 온라인 등록도 가능하며 접수 시 계획서, 도면, 사진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 따라서 투자희망기업은 충분한 영국 시장 타당성 조사 후 각 지역개발청을 접촉, 투자 인센티브 및 개발청의 지원범위 등을 확인,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 연락처: 각 지역개발청(RDA; Regional Development Agency)
 - England 지역
 - Greater London : Think London
 - South East : South East England Development Agency

- South West : South West England Regional Development Agency
 - East of England : East of England Investment Agency
 - East Midlands : East Midlands Development Agency
 - West Midlands : West Midlands Development Agency
 - North West : North West Development Agency
 - Yorkshire and the Humber : Yorkshire Forward
 - North East : One North East
 - Wales 지역: Welsh Development Agency (WDA)
 - Scotland 지역: Scottish Development International
 - Northern Ireland 지역: Invest Northern Ireland
- 일례로 가장 모범적인 투자유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북아일랜드의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인허가를 위한 제출서류나 승인절차가 없으며, 투자계획서 및 최근 3개년간 재무제표, 투자금액, 공장부지 면적, 기계설치, 신규 고용계획 등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는 있으나 단지 지원을 위한 사전 참고자료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 1988년 북아일랜드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 D전자의 경우 북아일랜드 개발청(IDB)에 투자계획서와 재무제표를 제출함과 동시에 지역선택보조금 신청절차 및 IDB 공장 건설 팀과의 공장설립계획 검토가 시작되었으며, IDB 공장건설 팀은 투자기업으로부터 공장설계도를 접수한 날로부터 통상 6-8개월 내에 부지조성에서 생산라인 설치까지의 전 공정을 TURN-KEY BASE로 완성, 투자기업에 공장 소유권 이전을 해주었다.

바. 기타

1) 노동허가제도

- Work Permits(UK)
- Immigration and Nationality Directorate, North
- Home Office
- Level 5, Moorfoot, Sheffield S1 4PQ, UK
- Tel: +44-(0)114-259-4074
- Fax: +44-(0)114-259-3776
- Website: <http://www.workpermits.gov.uk>

2) 입국허가 기타 출입국 관계

- 주한영국대사관 비자과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4번지 태평로 40 (우편번호: 100-120)
 - Tel: 02-3210-5500
 - Fax: 02-3210-5653
 - Email: consular.seoul@fco.gov.uk
 - Website: <http://www.britishembassy.or.kr>
- 영국 내무성 이민국
 - Immigration & Nationality Directorate
 - Home Office
 - Lunar House, 40 Wellesley Road, Croydon, CR9 2BY, UK
 - Tel: +44-(0)870-606-7766
 - Website: <http://www.ind.homeoffice.gov.uk>

3)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 삼일 회계법인
 - PricewaterhouseCoopers LLP
 - Korean Service Group, 6th Floor, 1 Embankment Place, London WC2N 6RH
 - Tel: 020 7213 4939
 - Fax: 020 7804 6763
 - Website: www.pwc.com
- 삼정 회계법인
 - KPMG LLP
 - 38Floor, Canary Wharf, One Canada Square, London EC14 5AG
 - Tel: 020 7311 6404
 - Fax: 020 7311 4121
 - Website: www.kworld.kpmg.com
 - Email: sangmin.nam@kpmg.co.uk
- 한영 회계법인
 - ERNEST & YOUNG KOREAN DESK
 - 1 More London Place, London SE1 2AF
 - Tel: 020 7951 0707
 - Fax: 020 7951 9305
 - Website: www.ey.com/uk
 - Email: kbang@uk.ey.com
- RICHARDS BUTLER
 - Beaufort House, 15 St. Botolph Street, London EC3A 7EE
 - Tel: 020 7247 6555
 - Fax: 020 7247 5091
 - Website: www.richardsbutler.com
 - Email: law@richardsbutler.com
- STEPHENSON HARWOOD
 - One St. Paul's Churchyard, London EC4M 8SH
 - Tel: 020 7329 4422
 - Fax: 020 7329 7100
 - Website: www.shlegal.com
- (주) 우리 엔터프라이즈(영국이민국 공인 컨설턴트)
 - Woori Enterprise LTD
 - Suite 24 Fitzroy House, Lynwood Drive, Worcester Park, Surrey KT4 7AT
 - Tel: 020 8337 4994
 - Fax: 020 8337 9449
 - Website: www.woori-enterprise.com
 - Email: info@woori-enterprise.com

사. 기타

1) 노동허가제도

- Work Permits (UK)
- Immigration and Nationality Directorate, North
- Home Office
- Level 5, Moorfoot, Sheffield S1 4PQ, UK
- Tel: +44-(0)114-259-4074
- Fax: +44-(0)114-259-3776
- Website: <http://www.workpermits.gov.uk>

2) 입국허가 기타 출입국 관계

- 주한영국대사관 비자과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4번지 태평로 40(우편번호: 100-120)
 - Tel: 02-3210-5500
 - Fax: 02-3210-5653
 - Email: consular.seoul@fco.gov.uk
 - Website: <http://www.britishembassy.or.kr>
- 영국 내무성 이민국
 - Immigration & Nationality Directorate
 - Home Office
 - Lunar House, 40 Wellesley Road, Croydon, CR9 2BY, UK
 - Tel: +44-(0)870-606-7766
 - Website: <http://www.ind.homeoffice.gov.uk>

아.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 삼일 회계법인
 - PricewaterhouseCoopers LLP
 - Korean Service Group, 6th Floor, 1 Embankment Place, London WC2N 6RH
 - Tel: 020 7213 4939
 - Fax: 020 7804 6763
 - Website: www.pwc.com
- 삼정 회계법인
 - KPMG LLP
 - 38Floor, Canary Wharf, One Canada Square, London EC14 5AG
 - Tel: 020 7311 6404
 - Fax: 020 7311 4121
 - Website: www.kworld.kpmg.com
 - Email: sangmin.nam@kpmg.co.uk

- 한영 회계법인
 - ERNEST & YOUNG KOREAN DESK
 - 1 More London Place, London SE1 2AF
 - Tel: 020 7951 0707
 - Fax: 020 7951 9305
 - Website: www.ey.com/uk
 - Email: kbang@uk.ey.com
- RICHARDS BUTLER
 - Beaufort House, 15 St. Botolph Street, London EC3A 7EE
 - Tel: 020 7247 6555
 - Fax: 020 7247 5091
 - Website: www.richardsbutler.com
 - Email: law@richardsbutler.com
- STEPHENSON HARWOOD
 - One St. Paul's Churchyard, London EC4M 8SH
 - Tel: 020 7329 4422
 - Fax: 020 7329 7100
 - Website: www.shlegal.com
- (주) 우리 엔터프라이즈 (영국이민국 공인 컨설턴트)
 - Woori Enterprise LTD
 - Suite 24 Fitzroy House, Lynwood Drive, Worcester Park, Surrey KT4 7AT
 - Tel: 020 8337 4994
 - Fax: 020 8337 9449
 - Website: www.woori-enterprise.com
 - Email: info@woori-enterprise.com

6. 투자입지여건

가. 입지 선정

영국에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특정산업육성을 목적으로 공단을 조성하여 분양하고 있지 않으며 기업들은 지역선택 보조금을 받고 Greenfield에 공장을 건설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는 특정산업의 기업이 많이 입주한 공업지역이 있으나 엄격히 말하여 우리나라의 산업 공단과는 성격이 다르다. 민간 및 공공투자유치기관, 지방자치단체들이 특정지역을 Industrial Estate(공장지), 또는 Industrial Park(공업지), Business Park(사업장) 등으로 지정, 기업입주를 유치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정부는 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선택보조금(Regional Selective Assistance)제도를 통해 투자금액의 50%까지 지원하여 낙후된 지역의 경제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RSA제도에 따라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 잉글랜드 지역에 투자할 경우 공장부지구입, 공장건축비, 설비 투자비 등 공장설립 및 가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이러한 지역 선택 보조금제도

수혜를 위해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 잉글랜드 지역에 기업들이 공장을 많이 짓고 있어 이들 지역이 공업단지와 같은 성격을 띤 지역이 많다.

이와 같이 영국에는 한국과 같은 산업공단은 없으나 RSA수혜가능 지역별로 20개 이상 기업이 입주한 Industrial Estate 또는 Industrial Park 등의 숫자는 북아일랜드 40개, 스코틀랜드 37개, 웨일즈 21개, 북 잉글랜드 59개 등이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이 거의 없으며 영국 내 투자 외국기업은 모두 영국기업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영국은 전체적으로 12개의 경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는 잉글랜드에 9개 그리고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가 각각 독립된 경제지역으로 구분되며 이들 전체의 1년 예산은 05/06년 기준 21억 6,000만 파운드 규모이다.

공장 입지 조건은 각 사업 부문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며 공장 입지 조건과 관련해서는 영국 무역투자청(UKTI)이나 각 지역의 지역 개발청(RDA)들이 지역 내의 비즈니스 환경과 산업별 타당한 입지조건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런던지역의 경우 이미 16년째 유럽 내 최고의 비즈니스 도시로 뽑혀오고 있으며 가장 큰 장점으로서는 숙련된 인적 자원 확보의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나. 주요 기업 단지

영국 내에서 기업단지(Enterprise Zones)로 지정되는 것은 침체된 도시지역의 재활이라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이며 이미 거의 모든 단지들이 그 특혜가 보장되던 10년이 만료된 상태이다.

다. 주요 체크 포인트

- 지역 내 기 위치한 산업 부문과 비즈니스의 종류
- 관련 클러스터와의 연계 용이성
- 중앙정부나 지방자치정부 등의 지원/혜택 수혜 가능성
- 실질 설립 비용 (부동산/설비 구축 포함)

라. 지역별 투자여건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지방자치단체는 주택 법(Housing Act, 1989)에 의거 해당지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권한을 위임 받고 있어 인센티브의 내용이 자치단체별로 다소 상이하다. 주로 Grants(보조금), 저리의 자금대출, 지급보증, 투자기업에 자본참여, 건물 등의 부동산을 무료 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 잉글랜드 지역 투자 인센티브

잉글랜드 지역은 Great London, South East, South West, East of England, East Midlands, West Midlands, North West, Yorkshire and the Humber, North East의 9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방 관할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낙후 지역인 Yorkshire and the Humber와 North East의 대부분 지역을 투자지원지역(Assisted areas: Tier1, Tier2, Tier3-중소기업에 한함)로 지정해 보조금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 Yorkshire and the Humber 지역: 관할기관 Yorkshire Forward

- 선별적인 재정보조금제도(Selective Finance for Investment in England: SFI)
 - 실업문제 해결 및 당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지원 지역에 투자하는 업체에게 보조금을 제공함(세금이 면제되지 않는 보조금).
 - 동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생산성향 기술의 파급효과에 따라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최소 10,000파운드를 무상현금형태로 분할 지급(주로 총 고정투자비용의 10~15%) 중소기업의 경우 좀 더 많은 지원이 있을 수 있음.
 - 100,000파운드 또는 그 이상의 재정 지원을 원할 경우 반드시 고용창출이 있어야 하며 프로젝트 또한 경쟁력이 있고 3년 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함.
 - 고정자산비용에는 대지구입, 부지조성 및 건물 건축, 플랜트 및 기계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에 지원되나 특허료, 자문료, 기계설치 비용도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 프로젝트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야 하며, 그에 대한 측정은 현재 다른 지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산업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함.
 - 프로젝트는 또한 경쟁력이 있어야 하며 재정지원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5년 동안 성과를 측정함.
 - EU자원에서 경쟁력이 없는 철강, 석탄, 합성섬유, 자동차, 농업, 그리고 어업분야는 지원 가능 산업분야에서 제외. 또한 투자지원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아닌 고용대체 프로젝트일 경우 지원이 제한 됨.
 - 보통의 SFI 팀에서 보조금의 가능 여부, 범위 등을 결정하나 사업단위가 크고 복잡한 프로젝트의 경우 런던에 있는 DTI에서 평가함
 - 전담부서명
 - Yorkshire Forward SFI Team
 - Yorkshire Forward Victoria House
 - 2 Victoria Place, Leeds
 - LS11 5AE
 - Tel: 0113 394 9860 / Fax: 0113 394 9870
 - Email: sfi@yorkshire-forward.com
 - Website: <http://www.yorkshire-forward.com>
- Northeast England 지역
 - 관할기관: One North East Regional Development Agency
- 선별적인 재정보조금제도(Selective Finance for Investment in England: SFI)
 - 이전의 RSA(Regional Selective Assistance)와 EG(Enterprise Grants)가 통합된 형태로 투자지원지역(Assisted area)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확장, 현대화 할 경우 보조금을 제공. 이 제도의 목적은 생산성, 기술, 고용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촉진키 위함임.
 - 생산성, 기술향상, 고용 창출을 가져오는 산업에 대해서 보조금형태로 분할 지급되며, 보조금은 영국에서 투자하는데 있어서 추가적인 위험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될 때, 보조금이 상향 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지원
 - Micro Projects
 - 1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12개월 이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20,000파운드 이내 총비용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 총 예산이 2,500파운드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 Research Projects
 - 5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6-18개월 이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75,000파운드 이내 총비용의 60%(Tier2 지역인 경우 65%)를 보조금으로 지급. 지급금이 20,000파운드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 Development Projects
 - 25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6~36개월 이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200,000파운드 이내 총비용의 35%(Tier2 지역인 경우 40%)를 보조금으로 지급. 지급금이 20,000파운드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 Exceptional Development Projects
 - 25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6~36개월 이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500,000파운드 이내 총 비용의 35%를 보조금으로 지급함.
- 기타 투자 인센티브
 - NESTA
 -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지적 재산권의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NESTA에서 조사, 개발, 실험을 지원. 지원금은 개인당 65,000파운드까지 가능함.
 - 전담부서명: NESTA
 - Fishmongers' Chambers
 - 110 Upper Thames Street, London
 - EC4R 3TW
 - Tel: 020 7645 9500
 - Email: nesta@nesta.org.uk
 - Website: www.nesta.org.uk
 - Cultural Business Venture
 - 영국에서 가능한 문화산업의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이때 Prince's Trust 와 파트너십에 의해 운영. 25명 미만의 종업원을 갖추고 있는 신설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자문이 필요함.
 - 보조금은 1,000파운드에서 10,000파운드 범위 내에서 총 비용의 75%까지 지원 가능함. 지원단계에서 24%의 매치펀드 근거제시 필요함.
 - 전담부서명: Cultural Business Venture
 - Arts Council England, North East
 - Central SquareForth Street
 - Newcastle upon Tyne NE1 3PJ
 - Tel: 0191 2558500
 - Fax: 0191 2301020
 - Email: northeast@artscouncil.org.uk
 - Website: www.artscouncil.org.uk
 - Carbon Trust Grants
 - 산업/공적 분야에 산업적인 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온라인 지원이 가능함.
 - 전담부서명: Barrie Brass
 - Regional Manager
 - Carbon Trust
 - One NorthEast, Stella House
 - Goldcrest Way, Newburn Riverside
 - Newcastle/Tyne, NE15 8NY
 - Tel: 0191 229 6200
 - Email: barrie.brass@thecarbontrust.co.uk
 - Web: www.thecarbontrust.co.uk/foundation__

2) 북아일랜드 지역 투자인센티브

관할기관: Invest Northern Ireland(Invest NI)

□ 주요 인센티브 현황

- 자본지출에 대한 현금지원(Cash Grants)
 - 국제적으로 유망한 사업으로서 북아일랜드 산업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로 고용창출효과를 기준으로 공장건설비(부지 포함), 기계설비 구입비의 최고 50%까지 부상지원
 - 동 보조금은 타 지역과는 달리 비과세소득으로 인정, 세금이 면제됨.
- 창업초기 인건비 보조(Start-up Costs, Employment Grants)
 - 북아일랜드 투자로 인해 창출된 고용 인력의 규모에 대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지원규모는 창업기간 동안의 매출규모에 따라 달라짐.
 - 지원기간은 3년이며 고용인력 규모를 Invest NI 측에 보장하는 경우 3년 분의 보조금을 일시에 지원받아 투자 또는 운전자본으로 전환사용이 가능함.
- 이자감면(Interest Relief Grants)
 - 비 정부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해 최대 7년까지 금리보조
 - 최초 3년간은 상업금융기관 금리, 이후 4년간은 3%의 금리를 보조
- 공장임대료 보조(Factory Rents)
 - 공장 임대 시 임대료의 100% 범위 내에서 5년간 지원(Rent Grants)
- 시장 개척 비 보조(Marketing Development Grants, 40/60 Scheme)
 - 설립 후 최초 3년까지 시장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의 40%, 최대 60,000파운드 범위 내에서 보조

□ 세제지원

- 기계, 설비, 공장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Invest NI로부터 받은 보조금의 최대 45%까지 포함) 중,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연 25%, 공장건물에 대해서는 연 4%의 감가 상각을 허용
- 제조공장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 100%를 감면

□ 금융지원

- 운영자금을 비롯하여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자본에 대해 IDB 측이 정부 자금을 융자하여 줌. 동 자금은 무이자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담보 제공 등 채권보전 조치가 필요함.
- 특수한 프로젝트인 경우 Invest NI 가 직접 주식투자의 형태로 참여

□ 종업원 교육훈련 지원

- Invest NI 의 방계기관으로 훈련고용청(Training & Employment Agency)을 설립, 북아일랜드 투자기업에 대해 종업원 교육훈련 비용 (교육기간 중 임금, 교육비용, 여행비 포함)의 최대 50%까지 지원함.

□ 연구개발비 지원

- 시장지향적인 제품 및 제조공법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기획단계(Project Definition Phase)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50%까지 15,000파운드 범위 내에서 지원
 - 개발단계(Project Development Phase)에서는 최대 40%까지 (10% 추가 지원 가능: Green Bonus) 250,000파운드 범위 내에서 지원
 - Website: <http://www.investni.com>

3) 웨일즈 지역 투자인센티브

관할기관: Wales Development Agency(WDA)

□ 인센티브 제공

- 외국 기업이 투자 타당성 조사 단계 에서부터 최종 마케팅단계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사항을 WDA가 관련기관과의 협력 하에 패키지형태로 지원. 다른 지역과는 달리 TAX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세제지원

- 소득세(Personal Tax)
 - EU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처음 세전 이익이 3,000달러 10%부터 시작해서 그 이상일 경우 22% 소득세를 부과함. 또한 지방 소득세는 없음.
- 법인세(Corporate Tax)
 - EU 회원국 중 가장 낮은 법인세율 실시. 세금공제 전 경상이익의 30%. 배당 소득, 이자, 로열티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없음. 환전 및 해외송금에 대한 규제가 없음.
- 부가가치세(VAT)
 -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17.5%의 세금이 부과되고 연료 및 전기에 대해서는 5%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이러한 비율은 제한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해당되며 사업 목적으로 구매한 상품과 서비스 세금에 의해 상쇄될 수 있음. UK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조달한 물품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그 밖의 주요 인센티브

- 교육훈련 인센티브
 - 종업원의 채용, 교육,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 보조(지원범위는 개별 계약에 의함)
 - 종업원의 채용정보 제공 및 채용지원
- 부동산, 인프라 관련 인센티브
 - 공장시설 가동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건설 지원(공장부지까지의 전력선, 진입로, 상수도 등 관련 시설 건설지원)
 - 관련 웹사이트: <http://www.locate-in-wales.com>

4) 스코틀랜드 지역 투자인센티브

관할기관: Scottish Development International

□ 주요 인센티브 현황

- RSA(Regional Selective Assistance)
 - 지원 대상 지역(Assisted Area)에 지대 및 건물 임대료, 공장 및 기계, 소프트웨어 및 지적 재산권 등에 투자를 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 중에서 보조금이 지급
 - 보조금의 규모는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보통 예상 자본 경비의 10~20% 수준임. 그리고 이 보조금은 창출되는 일자리 한 개당 5,000~10,000파운드에서 조정됨.
- SMART
 - 두 단계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첫 단계는 경쟁을 통해서 선출된 개인과 소기업들이 6~18개월 동안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 지원금 4만 5,000파운드 내에서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급함.
 - 프로젝트의 첫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생산 전 단계의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해 총 프로젝트 비용의 35%를 지원. 두 단계를 합친 최대 지원금은 15만 파운드이며 두 번째 단계의 프로젝트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6개월 안에 완료되어야 함.
- SPUR
 - 상당한 수준의 기술 발전을 동반하는 신제품 생산이나 프로세스에 소요되는 프로젝트 비용의 규모가 최소 5만 파운드 이상인 기업을 지원함.
 - 통신이나 생명공학과 같은 고가의 첨단 기술을 요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비용의 규모가 최소 100파운드 이상이면 SPUR plus 대상기업이 되어 지원을 받게 됨.
 - 단, 이 때 지원대상 대상 기업은 방위산업을 제외한 기업에 한하며, 기술적인 리스크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되지 아니함.
- 연구개발비 지원
 - 종업원 수가 250명 이하이고 연간매출이 약 2,500만 파운드 이하이면서 대기업이 지분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중소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
 - 수익을 내는 기업의 경우 R&D 비용에 100~150%까지 세금을 면제
 - 수익을 내지 않는 기업의 경우 R&D 비용 100파운드마다 24파운드의 현금으로 지원
 - 대기업의 경우 세금 혜택 조건을 만족하는 R&D 비용에 대해 첫 해 100% 세금 공제와 25% 추가 세금 공제
- 부동산, 인프라관련 인센티브
 - 스코틀랜드 내 개발촉진지구, 중간지구내의 공장부지 사무실부지에 대한 정보제공 및 조성, 개발, 구입지원
 - 공장부지에 대한 상수도, 가스관, 전력선, 진입로 등 공장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건설 지원 (설비건설지원 또는 무상건설지원)
 - 스코틀랜드 내의 도심지 입주업체를 위한 사무 공간, 건물구입정보 제공 및 구입 지원
- 종업원 고용 및 훈련관련 인센티브
 - 미숙련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보조금 지원
 - 종업원 채용정보 제공 및 채용지원
- Website: <http://www.scottishdevelopmentinternational.co.kr>

7. 노무관리

가. 노동여건

1) 개요

영국 내 종업원 고용은 신문광고, 지역 직업 안정소(Job Centre), 전문 직업소개소(recruit agency)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 경제분석가 등의 고급인력 채용은 recruit consultancy로 불리는 전문업체를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2) 고용계약

□ 고용조건

종업원은 고용계약이 시작되기 전에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고용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장 일반적인 고용조건으로는 의료진단(medical examination), 영국 내 취업이 합법적임을 입증하는 여권사본, 노동허가증(work permit-비 EU 국민 해당) 제출 등이 있다.

□ 고용주의 고용조건에 대한 문서화 의무

고용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고용주는 고용조건에 관한 문서를 작성, 근무시작 후 2개월 내에 종업원에게 전달할 법적의무가 있다. (UK Employment Law)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사항이 없음을 명기해야 한다.

- 고용개시일
- 급여액, 급여계산방법, 급여지급일
- 근로시간
- 휴가
- 병가
- 연금
- 고용계약 만료를 위한 통지
- 직책(job title) 및 주요 업무
- 근무지
- 징계정책 및 불만사항 처리방법

상기 고용조건들을 보다 상세한 고용계약서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상세한 고용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고용주와 종업원간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고 보너스 지급의 재량권이 고용주와 종업원 중 누구에게 있는지 등과 같은 발생 가능한 분쟁사항도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 특히 상위직 종업원과의 고용계약 시 이러한 상세한 고용계약서의 작성에 권고되며, 고용 규모가 클 경우 법률회사로부터 계약서 내용을 자문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종업원의 법적보호권(mandatory rights)

영국의 고용관련 법령에 따르면 고용주는 고용조건에 관한 문서를 종업원에 전달해야 하며, 이러한 고용조건은 법령이 정한 최소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최소기준 또는 법적 보호권은 종업원의 국적에 관계없이 통상 영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에게 적용된다. 종업원의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다.

- 고용만료통지권(right to notice of termination): 1 개월 이상 근무한 종업원은 최소 1 주의 고용계약만료 통지기간을 갖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 한 통지기간은 2 년의 근무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매년 1 주씩 증가(최고 12 주까지)한다. 즉, 1 개월 이상 근무한 종업원은 최소 1 주의 고용만료 통지기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 평등지급권(right to equal pay for equal work): 지급평등법(Equal Pay Act 1970)에 따르면 모든 종업원은 동일한 업무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유급휴가권: 종업원은 최소 연 4 주의 유급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다.
- 최저급여(minimum wage): 2007 년 10 월 1 일부로 법정 최소 임금 인상
- 성인 근로자의 경우 현 5.35 파운드에서 5.52 파운드
- 18~21 세의 경우 4.44 파운드에서 4.60 파운드
- 16~17 세의 경우 3.30 파운드에서 3.40 파운드
- 현재 정규직 근로자들에 있어 연 20 일간으로 보장되어 있는 최소 유급휴가를 연 24 일로 확대되었으며 향후 2009 년 4 월 1 일부로, 28 일로 재차 확대 예정이다.

□ 명시조항(express terms)

법령에 강제된 종업원 법적보호권이 충족된다면 고용주와 종업원은 기타의 고용조건에 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명시조항에 대한 합의는 구두 또는 문서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문서를 통해 향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논란을 감소시킬 수 있다. 명시 조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비밀유지조항: 종업원은 업무상 지득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경쟁금지(non-competition) 조항: 종업원은 고용만료 후 고용주의 경쟁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종업원이나 고객을 유인해서는 안 된다.
- 지적재산권 조항: 종업원이 고용 중에 개발한 각종 권리에 대한 소유권을 고용주와 종업원 중 누가 보유하는가에 관한 사항이다.

□ 묵시조항(implied terms)

일부 조건들은 법령에 의해 계약서에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고용주와 종업원간 상호 신의성실 의무는 이러한 묵시조항 중 대표적인 것이다.

□ 위임조항(incorporated terms)

종업원의 고용과 관련된 조건들을 다른 문서의 고용관련 부분에 위임할 수 있다. 노동 조합의 단체협약에 위임한 것이 좋은 예다. 위임조항에 따라 노동조합은 종업원을 대신하여 급여 수준, 유급휴가일수 등을 협상할 수 있다.

3) 고용종료(Termination of employment)

고용주가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고용종료와 관련된 종업원의 권리이다.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종업원이 계약상 또는 법령상의 고용종료권을 갖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 상호합의에 의한 고용종료

- 법적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다
- 고용계약서상 고용기간의 종료이다.
- 고용계약서에 고용기간을 명시한 경우, 동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로, 종업원은 이에 불구하고 적법한 소송 제기 가능

□ 종업원의 자발적인 시작

- 종업원은 고용계약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통지절차를 거쳐야 함. 그러나 고용주가 종업원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 고용주가 계약상의 고용종료 통지를 하는 경우

- 고용주가 고용계약에 따라 종업원에게 고용종료를 통지하는 경우. 이에 불구하고 종업원은 적법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해고

- 고용주는 고용계약종료를 종업원에게 적절히 통지함으로써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법정최소통지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은 종업원의 근무기간에 따라서 달라진다. 통지기간은 계약상 통지기간이나 법정 최소 통지기간 중 긴 기간이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또는 계약서상 통지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종업원은 타당한 기간 동안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통지기간은 관련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항상 법정 최소 통지 기간은 준수되어야 한다.
- 고용계약에 의하여 통지기간에 대한 급여지급(복리후생비가 있다면 복리후생비 포함)을 함으로써 통지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실제로 고용주들은 종종 계약서상 언급이 없지만 통지기간 동안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함으로써 통지기간 없이 계약을 종료한다. 통지 없이 그러한 지급을 할 계약상의 권리가 없는 경우, 이는 기술적으로 계약위반이 되며 종업원에게 수당지급이 사실상 손해배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 종업원이 계약서상 의무를 매우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예: 중과실), 고용주는 통지수당 지급의무가 없이 즉시통지(summary notice)로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계약서상에 즉시 해고에 대한 특정한 상황을 기재할 수 있다. 종업원은 부당한 해고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 고용계약 종료 시 수당: 종업원은 정리해고에 의한 고용종료의 경우가 아니면 고용 종료 시 법정수당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종업원이 정리해고로 해고된 경우, 동일 직장에서 2 년 이상 근무한 경우, 법정정리해고 수당(statutory redundancy pay)을 받을 수 있다. 법정정리해고수당은 주급(현재 최고 270 파운드)에 근무연수(현재 최고 20 년)과 연령 요인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현재 최고 법정정리해고 수당은 8,100 파운드이다. 종업원은 또한 특정한 경우 고용계약종료수당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향상된 정리해고정책을 운영할 경우, 계약상의 권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있는 경우, 종업원은 법정정리해고 수당외에 퇴직수당과 같은 혜택을 갖게 될 수도 있다.
- 공정 해고 조건(이유)
 - 무능(capability). 예를 들어, 종업원이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바람직하지 않은品行(misconduct)
 - 정리해고(redundancy). 보통 고용주가 전체적으로 또는 특정지역에서 사업을 중단한 경우, 특정작업에 필요로 하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적어진 경우, 또는 특정위치에 필요 없는 경우)
 - 불법 행위(contravention of a statutory enactment)
 - 기타 해고를 정당화하는 상당한 이유(some other substantial reason)
- 부당해고
 - 고용주가 정당한 통지조치 없이 종업원을 해고하는 경우. 이러한 일방적인 해고조치가 종업원의 심각한 부정행위에 기인된 것이 아닌한 고용주가 고용계약을 위반한 것에 해당, 고용주는 통지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와 복리후생 급여는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종업원은 적법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인정해고(constructive dismissal)
 - 고용주가 고용계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종업원은 사임하고, 이러한 사임이 고용주에 의한 부당한 해고조치임을 주장할 수 있음. 이러한 고용주의 심각한 위반의 예는 직급의 하향조정 및 일방적인 급여 삭감 등이 있음. 종업원은 고용주의 고용 계약 위반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4) 노무관리 유의사항

영국에서 고용주와 종업원의 법적인 권리는 주로 영국의 판례법에서 파생한 계약법과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법령은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고용계약은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많은 영국의 법령이 EU지침의 요구에 따라 발효되었으며, 유럽법원의 판결이 영국에서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고용법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영국에서 고용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보편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며 반드시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5) 노동쟁의 발생 통계

기간(연도/월)	손실 업무 일수(천 일)	파업 횟수(건)	분쟁 노동자 수(천 명)
2004 01	32	16	23
2004 02	220	23	119
2004 03	132	19	13
2004 04	200	18	52
2004 05	62	17	11
2004 06	19	20	7
2004 07	94	15	40
2004 08	16	10	3
2004 09	7	16	3
2004 10	7	16	2
2004 11	114	15	133
2004 12	3	8	3
2005 01	1	7	1
2005 02	8	8	7
2005 03	4	7	3
2005 04	6	16	4
2005 05	32	19	27
2005 06	5	15	3
2005 07	15	16	6
2005 08	17	15	5
2005 09	29	21	7
2005 10	7	15	5
2005 11	19	12	19
2005 12	15	13	14
2006 01	77	14	47
2006 02	14	15	4
2006 03	482	19	577
2006 04	3	10	2
2006 05	83	15	49
2006 06	6	15	3
2006 07	11	31	9
2006 08	6	16	3
2006 09	23	17	6
2006 10	13	20	10
2006 11	23	16	8
2006 12	9	15	5

자료: 통계청

나. 사회보장제도

- 영국의 공적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와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로 나누어진다. 동 국민보험 등록은 종업원이 국민보험국의 지역 사무소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외국인도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국민보험

- 국민보험은 소득세와는 별도로 소득에 부과되는 강제보험으로 보험료는 국민보험국 (DSS)를 대신하여 국세청(Inland Revenue)에서 징수한다. 보험금 납입 후 65 세 이상 남자, 60 세 이상 여자로 당시 영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연금형태로 보험금 혜택을 받게 된다.
- 종업원 부담분
 - 국민보험 규칙에 따르면 외국회사에 고용된 종업원이 해외로부터 영국에 파견된 경우 영국에 도착 후 최소 52 주간에 대해서는 국민보험료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동 면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종업원이 영국 통상 거주자가 아니어야 한다.
- 고용주 부담분
 - 고용주 부담분은 종업원이 국민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 한다. 그러므로 최소 52 주간의 면제기간에는 고용주 부담분 납부의무가 없다.

8. 조세제도

가. 일반 사항

영국 재무부(HM Treasury)가 당해연도 세출규모 결정 등 조세정책을 총괄하며 국세청(Inland Revenue)이 소득세, 자본소득세, 인지세 등을, 관세청(HM Customs & Excise)이 부가가치세, 기타 관세, 사회보장세 등, 교통환경부가 도로 관련세 징수 행정을 맡고 있다.

영국 정부는 주요 세제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세제

- 소득 및 이윤에 대한 조세
 - 소득세
 - 법인세
 - 자산 매각 소득세
 - 석유세(PRT)
- 거래에 관한 조세
 - 부가가치세
 - 관세 및 물품세
 - 보험료세
 - 항공 통행세
 - 인지세
 - 상속세
- 재산에 관한 조세
 - 단일 영업세율

- 항공 통행세
 - 영국 공항에서의 여행에 대한 물품세
 - 영국과 EU 회원국내 기착지의 경우 승객당 5 파운드
 - 기타 지역이 기착지인 경우 10 파운드
- 기타 조세
 - COUNCIL TAX
 - 사회보장세

2) 소득세(Income Tax)

- 과세연도: 매년 4. 6 ~ 익년 4. 5 일
- 과세대상: 영국내 소득발생 내. 외국인
- 원천징수제도와 소득신고
 - 원천징수(PAYE): 대부분의 영국 납세자가 이에 해당된다. 근로소득과 경비. 후생적 급여 보고체계를 통해 전체 납부해야 할 세액이 원천 징수됨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종합소득신고: 고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 투자소득이 있는 자, 해외파견 주재원 등은 종합소득세신고서(SA 100)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
- 근로소득세율
 - 근로소득액에 따라 각각 아래 3 단계로 세율이 적용, 종합 산출된다
 - Starting rate (Lower Rate): 10%. 최초 소득 1,920 파운드에 한해 적용
 - Basic Rate: 22%. 1,920 파운드 초과 ~ 29,900 파운드 미만 소득에 대해 적용
 - Higher Rate: 40%. 45,385 파운드 이상 소득에 대해 적용
- 세금경감혜택
 - 각종 개인공제, 주택구입 대출금, 고령자에 대해선 일정 한도까지 세금이 공제된다.

3) 법인세(Corporation Tax)

- 법인신고
 - 회사가 영국 회사등기소(The Registrar of Companies)에 등록을 하면 동 사실이 영국 국세청(Inland Revenue)에 통보되며, 영국국세청은 통상 CT41-G 서식을 당해 회사로 발송한다.
 - 영국 내 해외법인의 연락사무소. 지정 및 영국 자회사의 법인세상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사무소가 지정, 대리인 또는 조세조약상의 고정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즉, 영업상의 계약체결권한이 없는) 연락사무소의 경우 영국에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 지정(Branch): 지점이 영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점의 소득에 대해 영국 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지점의 소득이란 영국에 귀속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 영국 내 자회사(Subsidiary): 해외법인의 영국 자회사는 영국 거주법인이므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영국에서 법인세를 부과한다. 단,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는 일정한도

내에서 외국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 설립되지 않은 회사라도 영국에서 주로 관리되고 통제되는 회사라면 영국 거주법인으로 간주되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영국에서 과세된다.

○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법인세 자진신고납부제도(Corporate tax self-assessment: CTSA)에 따라 법인이 회계기간(4.1 ~ 익년 3.31) 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 자진신고 제도로 변경 이후 이전세(Transfer Pricing)과 해외관계회(CFSs: Controlled Foreign Companies) 세액 등에 대한 책임은 신고회사가 지도록 되어 있어 진출법인들은 세금 신고 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데, 사전에 전문 회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법인세율

- Full Rate: 30%. 1,500,000 파운드 이상 기업이익
- Small companies' rate: 19%. 당해 연도 기업 이익 300,000 파운드 미만 회사
- Effective marginal rate: 300,001~1,500,000 파운드 기업이익 * 11/400
- 법인세 30%는 EU 국 중 최저세율로 영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일조하고 있다.

○ 세무조정사항(세금공제)

- 세무상 감가상각비(capital allowance)
- 접대비
- 자본적 지출(법률비용, 수선비, 특허, 상표권 관련비용) 등

나. 유의사항

- 한국기업 및 한국인이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현지의 법률이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의사 결정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회사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 및 회사의 관리 담당자는 연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련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외부용역비용에 대한 추가 부담 없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 회사 형태의 종류에 따라 관리 업무 대상범위는 조금씩 상이하지만 법인세, 부가가치세, 회계/감사,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원천징수 절차(PAYE), 국민보험 및 개인소득세 등 사업관리상 필요한 기본 사안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일반 사항

1979년 10월 24일부터 금융, 보험 등 서비스 부문의 흑자확대를 겨냥, 정부의 외환통제를 전면 철폐하고 시장의 자율조정기능에 의한 환율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누구나 목적에 관계없이 자유로이 외환을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자유로이 파운드화를 차입 또는 대여할 수 있으며, 금 또한 자유로이 매매될 수 있다.

나. 과실송금

영국은 외국투자가가 정당하게 취득한 이익금의 대외송금, 곧 과실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배당, 원본, 이자, 로열티의 송금이 자유롭다.

다. 현지에서의 자금조달 제도

1979년 10월에 외국외환 규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국내자금, 해외자금 모두 무제한으로 조달 가능하다. 이는 파운드에 한정되지 않고 유로, 미 달러 등 외국통화도 가능하다.

영국에서는 외국기업의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제한은 없다. 단, 금융기관과의 각각의 거래에 따라 조건은 다르고, 모회사로부터의 보증이나 그 외 다른 형태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다. 대외 차입에 대해서도 규제는 없고 영국 통화 이외의 외화로도 차입도 가능하다. 단, 국제연합이나 구주연합의 정치적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와의 거래는 금지되고 있다. 또한 통상의 유가증권이나 금융상품의 규제는 없고, 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한은 없다.

현지 은행이나 신용금고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신규사업등록자나 기 영업중인 사업체들을 상대로 폭넓은 사업자금 대출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지 자금조달 필요 시 현지 거래 은행이나 전국 상업금융중개인 협회(NACFB)에 등록된 브로커를 통하는 방법이 보편적이며 한국업체들의 경우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은행들의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국내은행 현지법인 및 지점들의 경우 보통 개설 3년 미만의 현지 업체에 대한 최초 대출 시는 한국본사의 보증을 요청하는 예가 많으며 향후로는 신용평가기관을 통한 등급에 따라 대출 사안을 결정하고 있다. 현지 지사의 경우 올 4월 말부터 시행되는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부과에 따라 대출 시 기존 대출 금리에 0.36%의 추가금리인상 효과가 있어 대출 부담이 더할 전망이다.

라. 주재 한국 은행 리스트

- 국민은행 런던현지법인
 - 6th Floor, Princes Court, 7 Princes Street, London EC2R 8AQ
 - 전화: 020 7710 8300 /팩스: 020 7726 2808
- 기업은행 런던지점
 - Leaf B, 38th Floor, Tower42, 25 Old Broad Street, London EC2N 1HQ
 - 전화: 020 7847 5582 /팩스: 020 7374 2693
- 신한은행 런던지점
 - 3rd Floor, 51-55 Gresham Street, London EC2V 7HB
 - 전화: 020 7600 0606
 - 팩스: 020 7600 1826
- 우리은행 런던지점
 - 9th Floor, 71 Fenchurch Street, London EC3M 4HD
 - 전화: 020 7680 0680
 - 팩스: 020 7481 8044

- 한국산업은행 런던지점
 - 99 Bishopsgate, London EC2M 3XD
 - 전화: 020 7426 3550
 - 팩스: 020 7426 3555
- 한국 수출입은행 런던현지법인
 - Boston House, 63-64 New Broad Street, London EC2M 1JJ
 - 전화: 020 7562 5500
 - 팩스: 020 7588 3642
- 한국외환은행 런던지점
 - 30 Old Jewry, London EC2R 8EB
 - 전화: 020 7606 0191
 - 팩스: 020 7606 9968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 특성

가. 소비자 특성

- 보수적이고 전통을 중시하는 국민성의 영향으로 브랜드 충성도와 비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었으나, 수입규모의 확대와 유통 채널 간 가격경쟁으로 시장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이다.
- 구매시즌
 - 영국이 식품류 및 서적류, 아동의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17.5%의 높은 부가 가치세와 고마진 유통구조로 인해 물가가 비싼 관계로 소비자들은 부활절, 성탄절, 여름과 겨울의 정기 대바겐 세일 시즌을 많이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한다.
 - 정기 대바겐세일: 여름(6 월말~8 월말), 겨울(11 월말~1 월말)
 - 시즌 특수: 부활절(4 월), 학교 개학시기(1 월과 9 월), 성탄절(12 월)

나. 한국상품 인지도

- 한국의 국가적 브랜드 이미지의 상승과 더불어 상품에 대한 인지도도 수직상승하고 있다.
- 삼성, LG 가 핸드폰과 LCD/플라즈마 TV 시장에서의 연이은 판매 성공을 거두며 전자제품 시장을 중심으로 인지도를 극대화시키고 있으며 현대차와 기아차의 경우도 자사 제품들도 고객평가에서 호평을 누리고 있다.
- 그 외 기업 및 상품에 대한 인지도에 있어서도 단순히 저가의 아시아 국가 생산품이라는 인식보다는 품질에 기반을 둔 가격경쟁력을 갖춘 제품들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이다.

다. 유통 채널

- 최대 소비지인 런던을 중심으로 한 남동부지역, 맨체스터 및 버밍엄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 글라스고우 등 북부지역으로 상권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시장성격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국 유통 시장 특징으로서 다음 다섯 가지를 꼽을 수 있겠다.

1) 대형 유통체인에 의한 시장지배 경향

대표적인 유통체인인 M&S 가 1930 년 런던 시내 중심가 Oxford Street 에 대형 매장을 연 이후 특히 의류 및 식품부문에서 대형 유통회사들이 속속 설립되어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지면서 가정용 소비재 전분야에 걸쳐 대형 유통체인들의 시장지배력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브로드밴드 보급 등의 영향으로 인터넷 쇼핑이 급증하고 있는데, 극히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몰 매출 상위업체들도 테스코 등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의 강자로, 인터넷 쇼핑의 보급확대가 ‘대형 유통체인에 의한 시장지배 경향’을 바꾸기는 커녕 오히려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고 마진 시장

전통적으로 유통단계가 복잡하고 마진이 높아 유럽국과 가격 비교 시 동일제품일 경우 평균 30% 이상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로 인한 소비자 불만 고조에 따라 영국정부도 자동차 및 유명브랜드 제품의 회색수입시장(Grey import) 규제 완화 등 유통마진 축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펴고 있다.

3) 보수적인 거래관행

기존 거래 선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수입선을 바꾸지 않으며, 또한 최종 계약까지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인내가 요구된다. 그러나 일단 수입상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면 안정적으로 거래 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한다.

4) 소비자의 개방적인 구매태도

상품거래 시 상품의 질과 내용을 중시할 뿐 어느 특정지역의 제품 또는 자국 상품을 선호하는 등의 배타 감정이 없으며, 개성 있는 상품구매를 선호하여 대부분의 거래는 소량, 소액, 다품종 주문 형식을 띠고 있다.

5) 제 3 국 조달시장

과거 광범위한 식민지를 경영했던 국가로서 현재까지도 영연방국가들과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구매조달시장으로 막강한 영향력과 비중을 가지고 있다. 조달품목은 중고 자동차, 건설 자재를 비롯하여 의류, 모조장신구, 신발 등 일반 비내구재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품목이 대상이 되고 있으며 바이어들은 해당국가에 본사를 두고 런던에는 1~2 명의 구매 담당자가 buying office 를 운영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 바이어들과 거래 시에는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L/C 계약체결이 바람직하며,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유통 구조

- 영국 소매시장 분류는 기준 산업 분류(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에 따라 소매상을 Division 52 (Retail trade, except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Personal and household goods)로 분류되며 취급품목에 따라 7 개의 소그룹으로 세분화된다.
 - 52.1: Retail sale in non-specialised stores
 - 52.2: Retail sale of food, beverages and tobacco in specialised stores
 - 52.3: Retail sale of pharmaceutical and medical goods, cosmetic and toilet articles
 - 52.4: Other retail sale of new goods in specialised stores
 - 52.5: Retail sale of second-hand goods in stores
 - 52.6: Retail sale not in stores
 - 52.7: Repair of personal and household goods
- 52.1 그룹에 포함되는 소매상을 일반적으로 Grocery Store 라 칭하며 이중 대형 소매 유통점을 Leading Grocery Multiples, Major Multiples 또는 Multi-outlets 으로, 중간 소매 유통체인점을 Smaller Multiples 으로, 소규모 개인 상점을 Independent Grocery Store 로 분류된다.
- 52.1 그룹을 제외하고 52.2, 52.3 또는 52.4 그룹에 포함되는 전문점들은 주로 Specialised Convenience Multiples 로 호칭된다.
- 최근까지 영국 소매시장은 유럽대륙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적고 마진이 높은 분야로 인식되어 왔으나 소매시장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라. 2007년 히트 상품 및 2008년 히트 유망 상품

1) 게임 콘솔

게임산업의 번성과 그 중 콘솔게임이 주를 이루고 있는 영국의 게임산업 특성상 XBOX, PS, Gamecube등의 판매가 연이은 성황을 이루고 있다.

최근 출시된 닌텐도의 신제품 Wii는 PS3나 XBOX360 등 다른 게임콘솔에 비해 절반 가격 정도의 수준으로 이러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이 시도된 무선 기술을 통한 생동감 넘치는 게임 기능을 통해 게임기능위주의 콘솔로 큰 히트가 예상되며 이는 기존 동사의 게임 큐브와의 네트워킹 또한 기능확대또한 가능해 그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소니의 야심작 PS3의 경우는 게임기를 넘어선 총체적인 홈엔터테인먼트 중추장비로서의 이러한 기능적 이노베이션은 PS자체의 브랜드 인지도에 큰 힘을 더해 기존 PS, PS2 게이머들의 업그레이드성 구매뿐만 아니라 신규 게임콘솔 구매 증가를 이끌어내 게임콘솔 시장 확대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2) 디지털 일안렌즈 카메라 (DSLR)

2006년 총 630만 개의 디지털 카메라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는 이미 약 10억 파운드 가치를 넘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이는 올해 들어 소형제품 시장이 둔화된 반면 디지털 SLR 제품 및 주변기기 시장의 폭발적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들이 아직까지 전체 디지털 카메라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 3년 간 약 65%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디지털 SLR 시장의 경우 그 가격 인하와 함께 수요층이 전문가에서 일반 대중으로 확산됨에 따라 시장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지난 2003년 7만대 판매에 그쳤던 디지털 SLR 제품은 2005년 20만 대를 판매하면서 185.7% 성장세를 보였으며 시장 점유를 5.2%까지 높인바 있으며 2006 말 기준 약 30만 개의 판매실적을 올려 지난 3년 간 4배수 성장을 기록하였다.

3) 휴대폰

영국 내 휴대폰 사용자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이동통신사 및 단말기 판매업체의 다양한 단말기 판매 옵션 및 기기 업데이트 기회 제공으로 인해 현지 휴대폰 단말기 판매는 급속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단말기 시장은 인터넷 접속이나 이메일 송수신 기능 및 각종 사무 네트워킹 기능이 강화된 PDA/스마트폰 제품시장과 휴대성 및 디자인적 요소에 비중을 둔 슬림형 카메라폰 시장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전자는 주로 비즈니스맨들이 후자는 여성고객들이 선호하고 있다.

4) 초경량 친환경 전기 자동차

최근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가 지구촌 최대의 걱정거리가 된 상황에서 정부기관의 환경오염 억제 및 친환경 정책 추구, 친환경 기술개발 노력 등이 다양한 형태로 상품화되고 있다.

특히 영국 내 런던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최근의 친환경 교통정책은 차량의 배기가스량 별 차별화된 자동차세, 도심 혼잡세, 주차비 징수를 계획하고 있어 향후 차량 판매/구매 패턴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또한 최근의 계속된 물가상승에 따른 대중교통비 및 차량 관리비용의 인상 또한 경차 및 전기차 구매증폭의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선두 제조업체들이 친환경 차량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Ford사의 경우 향후 10억 파운드를 투입하여 자사 브랜드인 Ford, Jaguar, Land Rover, Volvo 등 전 차종의 친환경적 기술개발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도심형 전기승용차의 경우 배기가스 0%의 친환경 차량으로 자동차세(Road Tax) 면제, 런던 내 혼잡세 면제 및 주차비 면제/할인 혜택, 저렴한 운송비용(1.5펜스/마일)을 내세워 런던 시민을 중심으로 큰 호응이 있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5) 모터사이클

최근 교통 혼잡을 피할뿐더러 기술적 발달로 보다 쾌적한 승차감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 절약 및 전반적인 유지비용의 경제성, 그리고 런던 지역에 부과되는 교통 혼잡세 면제 등 경제적 실익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의 부각으로 모터 사이클의 인기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

시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모터사이클 시장은 고가의 고성능 슈퍼스포츠 모델들과 저가형 통근용 소형 모델들 간의 양극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영국 모터사이클 및 모페드 시장은 2006년 안정 국면에 접어들 뒤 2007년 이후 점증적 성장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동 시장은 향후 2010년까지 2.2% 성장을 이어가 3억 7,400만 파운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이유에서의 도시 통근자들의 모터사이클 제품들에 대한 관심 및 구매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모터사이클의 경우 운전시 안정성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인 것을 감안할 때 안전성이나 디자인이 우수한 제품들이 히트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유망 상품

품목명	추천 사유	경쟁국
의료기자재	○ 영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Bio 산업 보유 - 유럽 전체 바이오 기업의 25%인 270 개사, 종사자 4 만 명 ○ 의료기기 시장규모 확대 추세 - 영국의 의료기기 수입액(2004 년): 52 억 달러 - 한국산 수출액: 1 억 6,000 만 달러 ○ 세부 유망품목: 의료용 모형, 의료용 재료, 의료용 또는 수의용기기, 의료용 소모품, 기타 의료용기기 등	- 고가: 독일, 미국, 영국 - 저가: 중국
조선기자재	○ 영국 내 수리 조선 관련 조선 기자재 및 선박 부품 수요 다대 ○ 한국 선박 수출의 후방효과 모색 - 한국의 선박 대영 수출액(2004 년): 4 억 4,900 만 달러 ○ 유망품목: 선박건조 부자재, 관련 기기, 수리조선 관련 밸브, 펌프류, 엔진 부품, 와이어 로프류, 선박용 소화기기 등	- 노르웨이, 스페인, 일본 등
디지털 라디오	○ 급격한 보급 속도 - 영국의 디지털 방송 협회(DRDB: Digital Radio Development Bureau)는 처음 보급된 지 7 년을 맞는 오는 2008 년경 영국 가구의 28%정도가 디지털 라디오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	- 영국인 원천기술 보유, 다른 제조국 통해 소싱
공예 도기 제품 (Craft Ceramic ware)	○ 영국의 Ceramic Ware 전체 시장은 성장세가 둔화된 반면, 공예품(Craft Pottery) 시장만은 지속적인 상승세 - Ceramic Ware 의 주종인 식기류 소비 감소 이유는 영국 소비자들의 선호가 종전 formal dinner set 에서 individual piece 로 변화됨에 따른 것으로 공예품의 증가는 공 예품을 선물 용품으로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 변화에 주목	- 고가: 영국 현지 업체, 독일 - 저가: 중국 등
GPS 이용한 위치 추적 장치	○ GPS 기술을 응용한 감시 장비 관련기술의 발달이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안심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자유권의 제한 등 반론이 있음에도 GPS 기술을 이용한 아동 추적 장치는 시장에 출시될 경우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며 미래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미국

2. 물가정보

가. 런던(영국) 기초 통계자료

	2003	2004	2005	2006	2007
명목 1 인당 GDP (USD)	30,689	36,257	37,303	39,681	45,575
명목 물가상승률 (%)	1.3	1.4	1.6	1.9	2.4
명목 임금상승률 (%)	3.7	4.9	4.7	5.0	4.9
미화 대비 연평균 환율	0.61	0.55	0.55	0.54	0.50

나. 런던(영국) 물가정보(1 USD = 0.50533 GBP)

번호	항 목	가격(USD)		
1. 식재료			6. 과일	
1.1	쌀 1kg	5.50	6.1	사과 1kg 2.75
1.2	밀가루 1kg	2.47	6.2	오렌지 1kg 3.94
1.3	백설탕 1kg	2.16	6.3	레몬 1kg 3.92
1.4	스파게티 면(엔젤헤어) 1kg	2.97	6.4	바나나 1kg 2.95
1.5	계란 12 개	5.50	7. 채소	
1.6	햄 1kg	9.89	7.1	양배추 1kg 1.35
1.7	베이컨 1kg	13.20	7.2	양상추 1kg 5.40
2. 육류			7.3	당근 1kg 3.48
2.1	쇠고기 등심 1kg	33.60	7.4	양송이 버섯 1kg 4.67
2.2	쇠고기 안심 1kg	26.89	7.5	감자 2kg 1.84
2.3	돼지고기 목살 1kg	5.44	7.6	양파 1kg 2.18
2.4	돼지고기 등심 1kg	12.66	7.7	토마토 1kg 3.74
2.5	닭고기 가슴살 1kg	13.63	8. 과자 및 당류식품	
3. 어패류			8.1	스낵과자 130g 1.66
3.1	냉동새우(중간 크기) 1kg	20.58	8.2	초콜릿 100g 3.92
3.2	대합조개 1kg	27.70	8.3	씨리얼(콘플레이크) 375g 3.01
3.3	연어(생) 1kg	19.69	9. 음료	
3.4	냉동참치 1kg	18.21	9.1	탄산음료 250ml 캔 6 팩 5.03
4. 낙농품			9.2	생수 1L 1.35
4.1	우유 500ml	0.69	9.3	오렌지주스(100%) 1L 2.35
4.2	요거트 150g	0.99	9.4	아메리카노 커피(전문점) 3.46
4.3	치즈(슬라이스) 500g	4.45	9.5	카페라떼 커피(전문점) 4.06
4.4	버터 500g	3.92	9.6	인스턴트커피 125g 4.51
4.5	마가린 500g	3.84	9.7	Ground 커피 500g 10.39
4.6	바닐라 아이스크림 473ml	4.33	9.8	홍차 티백 25bags 1.25
5. 유지			9.9	코코아 250g 3.96
5.1	식용유 1L	2.51	10. 주류	
5.2	올리브오일 1L	12.45	10.1	맥주 355ml 캔 6 팩 12.96
			10.2	스카치 위스키(750ml) 1 병 53.41

10.3	와인 750ml	21.67	16.5	해열제 100 정	2.55
11. 담배			16.6	흉부 x-ray 비용 1 회	무료
11.1	담배 1 갑	5.64	16.7	치과 방문 1 회(스켈링 1 회)	172.24
12. 패스트푸드			16.8	제왕절개수술	무료
12.1	햄버거 1 개	4.33	17. 자동차 및 차량유지		
12.2	치킨 런치세트 1 개	7.50	17.1	경승용차 900~1,299cc	12,791.61
12.3	치즈피자 라지 1 판	19.77	17.2	소형승용차 1,300~1,799cc	32,263.99
13. 잡화			17.3	중형승용차 1,800~2,499cc	37,599.10
13.1	치약 150g 1 개	4.51	17.4	대형승용차 2,500~3,500cc	129,815.84
13.2	샴푸 400ml	3.96	17.5	초대형 3,500cc 이상	146,123.95
13.3	칫솔 1 개	2.73	17.6	무연휘발유 1L	2.26
13.4	화장비누 1 개	0.42	17.7	LPG(단위부피당)	1.09
13.5	면도기 1 개	9.87	17.8	경유 1L	2.14
13.6	전기 면도기	375.56	17.9	자동차 등록비(2,000cc 신차)	568.40
13.7	건전지 AA size 4 개 1 세트	6.83	17.10	자동차보험료 의무(2,000cc 신차)	1,385.23
13.8	미용용 화장지 1 통	2.65	17.11	자동차보험료 임의(2,000cc 신차)	2,411.41
13.9	화장실 롤 티슈 12 롤	9.34	17.12	엔진 오일 1 회 교체 비용	13.58
13.10	세탁용 세제 3L	4.16	18. 교통비		
13.11	섬유 유연제 1L	3.30	18.1	도심 1 시간 주차료	7.92
13.12	주방용 세제 750ml	2.18	18.2	지하철 기본요금(1 구간)	7.32
13.13	살충제(스프레이 식) 330g	3.94	18.3	시내버스 기본요금	3.96
13.14	전구 60W 2 개(백열등)	2.35	18.4	택시 기본요금	7.58
14. 의류 및 신발			18.5	택시 1km 당 추가요금	3.96
14.1	남자정장	1,959.11	18.6	철도이용료(100km)	10.49
14.2	여자정장	1,494.07	19. 통신이용료		
14.3	여성핸드백	1,088.40	19.1	전화 개통비 1 회선	258.33
14.4	아동복	32.65	19.2	전화 사용료 월 기본요금	39.56
14.5	청바지	267.15	19.3	전화요금(시내) 3 분	0.32
14.6	남자코트	1,959.11	19.4	국제전화 3 분	3.44
14.7	여자코트	2,572.57	19.5	휴대전화 개통비	무료
14.8	티셔츠	138.52	19.6	휴대전화 사용료 월 표준 1 분	0.59
14.9	신사화	504.62	19.7	인터넷가설비(최소 DSL)	296.84
14.10	숙녀화	514.51	19.8	인터넷 월 사용료(최소 DSL)	49.45
14.11	드라이클리닝(정장 한 벌)	39.56	19.9	국내우편 일반편지 1 통	0.69
15. 가구			19.10	국제우편 일반편지 1 통 (현지~서울)	1.48
15.1	소파 3 인용(패브릭)	1,187.32	19.11	특급우편 1kg 이하(현지~서울)	86.08
15.2	침대 쿤 사이즈 매트리스	791.54	20. 주택환경 및 공공요금		
16. 의료비			20.1	아파트 월 임차비용 150 m ²	5,856.28
16.1	의료보험료 4 인 가족 1 년	무료	20.2	단독주택 월 임차비용 150 m ²	5,856.28
16.2	병원진료비(의료보험 X)	137.79	20.3	중개수수료 월 임차료의 % (단독주택)	10%
16.3	병원진료비(의료보험 O)	무료	20.4	임차보증금 월 임차료의 %	150%
16.4	진통제 10 정	2.55			

	(단독주택)		24.4	특급 호텔(5성급) 조식	86.12
20.5	가정용 전기요금 kWh	0.75	24.5	중급 호텔(3성급) 조식	51.67
20.6	가정용 가스요금 m³	0.34	25. 스포츠		
20.7	가정용 수도요금 m³	5.72	25.1	골프장 그린피(퍼블릭)	172.24
20.8	케이블 TV 1 달(기본)	23.75	25.2	골프공 1 다스(12 개)	39.56
21. 가전제품			25.3	피트니스 클럽 1 년 이용료	1,978.90
21.1	LCD TV 40 인치	1,775.07	26. 임금		
21.2	DVD Player 범용형	692.60	26.1	사무직 일반 초임(대졸)	4,353.58
21.3	냉장고 600 리터급	2,374.68	26.2	사무직 비서 초임(대졸)	3,562.02
21.4	세탁기 10kg(드럼형)	1,187.24	26.3	생산직 일반 초임(학력 무관)	3,364.13
21.5	전자레인지 20 리터급	296.80	26.4	가정부 시간당 임금(주중)	14.84
21.6	에어컨	494.71	26.5	베이비시터 시간당 임금(주중)	11.87
21.7	토스터기 1 개	98.93	27. 이미용 서비스		
21.8	식기세척기 24 인치(폭)	751.88	27.1	여성 헤어컷 1 회	49.47
21.9	데스크탑 본체	1,306.05	27.2	남성 헤어컷 1 회	29.68
21.10	노트북	890.51	28. 화장품		
21.11	컴퓨터 프린터기	296.82	28.1	바디로션	8.89
22. 문화서비스 및 도서			28.2	영양크림	197.89
22.1	복사용지 1 권 250 매 (A4 또는 Letter Size)	17.22	28.3	스킨로션	35.62
22.2	개봉극장 입장료 1 회(성인)	23.75	28.4	밀크로션	59.37
22.3	DVD 타이틀 1 개(신작 기준)	49.47	29. 관공서 요금		
22.4	도서 1 권(신작 소설)	13.85	29.1	여권 발급 비용	41.56
22.5	공연 best seat (유지컬, 대형극장 기준)	237.47	29.2	신규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 비용	89.05
22.6	CD 앨범 1 장 (대중음악 신작 앨범 기준)	29.68	30. 노무환경		
22.7	해당국 유력 일간 신문 1 년 구독료	158.31	30.1	주당 법정근무시간	40 시간
23. 교육			30.2	출산휴가일수	26 주
23.1	유치원 수업료 1 년(사립)	13,852.30	30.3	연간 국경일수	8 일
23.2	초등학교 수업료 1 년(사립)	12,862.85	30.4	토요일휴무제	시행
23.3	중학교 수업료 1 년(사립)	18,799.55	* 비교		
23.4	고등학교 수업료 1 년(사립)	23,351.02			
23.5	국공립 대학교	4,947.25	8.1	200g	
23.6	사립 대학교	7,915.60	9.1	330ml	
23.7	전문대학	3,562.02	16.1	사회보장비에 포함	
23.8	외국인 학교 초등 수업료 1 년	24,114.08	16.2	거주자 무료	
23.9	외국인 학교 중등 수업료 1 년	34,448.69	16.5	10 정	
23.10	외국인 학교 고등 수업료 1 년	41,338.43	18.4	병산제 실시	
24. 외식 및 숙박			21.4	7kg	
24.1	패밀리레스토랑 4 인	156.33	23.5	연간	
24.2	특급 호텔(5성급) 1 박	821.24	23.6	연간	
24.3	중급 호텔(3성급) 1 박	316.62	23.7	연간	

3. 바이어 발굴

가.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영국 내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방법으로써는 각 산업별 전문 협회나 기관, 그 외 전문 잡지 등 매체 그리고 전시회 등을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며 이와 관련 된 산업별 대표 기관의 연락처 등은 보통 영국의 상공부라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기업/규제개혁부(BERR;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 Regulatory Reform) 사이트(<http://www.berr.gov.uk>)나 CBI의 'Trade Association Forum' 사이트(<http://www.taforum.org>) 등을 통해 산업별, 이름별로 확인 가능하다.
- 영국에서 개최되는 연중 전시회 정보와 관련해서는 'Trade Fairs & UK Exhibitions' 사이트(<http://www.exhibitions.co.uk/index.html>) 등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나.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보통 영국 내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은 각 종 비즈니스 검색 사이트 및 회사 디렉터리 제공 사이트를 통해 진행된다. 그 외 각 산업이나 제품별 제조업체 및 판매업자 협회나 기관의 사이트를 통해서도 회원 리스트나 관련 업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대표적인 비즈니스 검색 & 회사 디렉터리 서비스
 - Kompass: www.kompass.com
 - 1st Directory: <http://www.the1stdirectory.com/>
 - Kelly Search: www.kellys.co.uk
 - Ask Alix: www.askalix.co.uk
 - Yellow Page: www.yell.co.uk
 - Apple Gate: www.applegate.co.uk

다. 참고사항

영국의 바이어들은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 신규 오퍼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단기간에 공략하기보다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비즈니스 에티켓

1) 상담 전 준비사항

- 먼저 바이어조사를 시행한 후 세일즈 출장을 실시
 - 영국은 심지어 동일 품목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유럽국가와는 시장성이 전혀 다를 수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 부품류 수출업체의 경우, 영국의 제조업이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고 생산라인에 투입되는 각종 부품을 직접 수입하지 않고 디스트리뷰터나 에이전트를 통해 공급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모가 있고 유능한 디스트리뷰터나 에이전트 발굴이 중요하다.

- 세일즈 출장 시에는 기계 및 도구의 경우는 제품성능을 시현하기 위해 (핸드캐리가 가능할 경우) 샘플을 지참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그 밖에 모조장신구, 안경테 등 잡화의 경우에는 바이어가 선호하는 디자인 및 재질위주로 샘플을 구성하여 지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철저한 회사 및 제품소개 자료 구축필요
 - 영국 바이어를 처음 접촉할 경우 항상 요구하는 것이 영문카탈로그, 가격표 및 샘플, 영문 홈페이지 주소 등으로 이와 같은 회사 및 제품을 소개할 자료가 없을 경우, 비즈니스 진행에 차질이 있으므로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영문카탈로그나 영문홈페이지 등은 반드시 구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료 상의 영어표현은 반드시 Native Speaker의 감수를 받아 오타나 이해가 안 되는 표현으로 회사의 격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 상담 시 영어표현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부정적인 상담결과를 초래하는 예가 많다. 따라서 필요시 현지사정에 밝고 영어가 유창한 통역원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통역원 이용은 코트라의 '세일즈 출장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현지 학생 커뮤니티 홈페이지나 각 대학교 한인학생회 등을 통해 직접 통역원을 찾을 수 있다. 상담 장소(이동 거리)나 시간, 난이도, 통역 지원 범위 등에 따라 통역비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보통의 경우 일일 통역료는 100~150 파운드 수준이다. (9~5 시 근무시간 기준, 교통비/숙식비 별도)

□ KOTRA 가 추천하는 바이어 선물

- 대부분 영국인들은 사업 상 파트너나 동료들과는 선물을 주고받지 않으나,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기념하기 위한 선물을 하는 경우는 있다. 이 경우에는 금, 은, 자기에 기념 문구를 새겨서 선물하거나 기념 문구를 새긴 펜, 책, 꽃, 와인 또는 샴페인 등의 품목부터 식사대접 및 공연 관람 등도 좋은 선물이 된다.
-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의 경우 카드를 보내는 것이 좋으며, 만약 영국 업체로부터 먼저 선물을 받았을 경우는 저녁을 초대하거나 고급 와인 또는 샴페인을 선물하도록 한다.
- 영국 가정에 초대를 받았을 경우 와인, 꽃, 초콜릿을 선물한다. 양주의 경우는 취향의 차가 심한 편이어서 좋은 선물 품목은 아니다. 꽃을 선물할 시 되도록이면 빨간 장미, 하얀 백합 또는 국화는 선물하지 않는다.
- 영국인 가정에 머물 경우라면 한국에서 기념품을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미처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영국인 가정에 필요하거나 어울릴만한 선물을 추후 우편으로 보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귀국한 후 영국인 가정에 감사 편지를 보내는 것도 예의 중의 하나이다.

2) 상담 시 비즈니스매너 및 유의사항

- 충분한 명함과 사전 마케팅 자료 준비는 필수이다.
- 사전 약속 없는 회사 방문은 결례이다.
 - 대부분의 회사들이 주 5일제 근무를 하며,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5시, 점심시간은 오후 12시에서 2시사이이다(은행의 경우 오전 9시 30분부터 4시 40분까지임). 약속은

보통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내에 하는 것이 좋으며 약속을 하지 않고 직접 회사를 방문하는 것은 큰 결례이다. 또한 부활절 (3월 말 ~4월 중순), 여름휴가 기간(7~8월)과 크리스마스와 새해 (12월 중순~1월 첫째 주)에는 약속을 피하는 것이 좋다. 약속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만찬과 같은 Social Event에 초대받을 경우에는 시간보다 15분 정도 늦게 도착하는 것이 좋다. 대중교통 시설이 노후화된 관계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약속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 복장은 검정, 진한 곤색 및 회색 계통의 줄무늬(pinstripe)가 좋다.
 - 주로 검정, 진한 곤색, 진한 회색과 같은 어두운 색상의 옷을 주로 입으며, 전통적인 세로의 가는 줄무늬도 자주 착용한다. 요즘은 금요일만 스마트 캐주얼(Smart Casual)을 허락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급호텔이나 음식점에는 식사를 할 경우에도 재킷과 넥타이를 착용해야 한다.
- 처음부터 이름을 부르면 결례이며 신분에 따른 호칭을 제대로 부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영국인들 사이에서는 주로 이름을 부르지만, 처음부터 이름을 부르면 큰 실례이므로, 상대방이 이름을 부르자는 제안을 해 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한다. 여왕, 주교, 장군 등과 같은 신분에 따른 호칭이 있는 경우나 공식 행사의 경우 (예, Mr. Chairman, The Commander-in-chief, The Prime Minister)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명함에 나와 있는 이름을 부르도록 한다.
 - 일반적으로 남성의 경우는 Mr. 여성의 경우는 결혼 관계가 확실치 않을 시 Ms라는 타이틀을 사용하며 작위를 받은 남성의 경우 'Sir', 부인은 'lady'라는 호칭을 쓰며 작위를 받은 여성의 경우 Dame을 붙인다. 그 외 Dr. Professor 등의 타이틀이 있다면 그대로 칭하는 것이 예의다.
- 중요한 사업상 면담은 점심 때 하라.
 - 예전과는 달리 중간 경영자들은 스텝들과 함께 직원식당에서 식사하거나 자신들의 자리에서 샌드위치와 물로 점심식사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 공공자리에서는 중대한 사업상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대부분의 여흥은 레스토랑, 펍, 카페 등에서 이루어진다. 펍에 갈 경우 보통의 경우 1 파인트, 원할 경우 하프(1/2) 파인트를 주문한다. 보통 순차적으로 번갈아가며 한 사람씩 돈을 지불한다. 가격은 1파인트에 약 3파운드 수준이며 대표적인 맥주로는 스텔라, 크로넨버거, 포스터, 기네스 등이 있다. (pub 에 따라 카드지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현금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 한국과는 달리 선채로 이야기하면서 마시는 경우가 보통이며 푸짐한 안주보다는 가볍게 땅콩이나 칩스(크리스프스)를 선호한다. 식사 시간대에는 저렴하고 맛도 괜찮은 요리를 제공하는 펍들도 많다. 상대방을 초대할 시에는 비슷한 환경과 비슷한 직급의 사람들을 초대하며 초대 받은 사람이 언급하지 않는 한 사업과 관계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 상대방이 좋아하는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자
 - 좋은 주제 예) 날씨, 운동(특히, 축구나 럭비) 동물(상대의 취향 확인 필요), 영국의 역사, 문화, 문학, 예술, 대중음악. 현재의 시사, 영국에서의 좋은 경험, 음식. 맥주
 - 피해야 할 주제 예) 북아일랜드, 종교, 영국왕실과 왕족, 극우/좌파적 정치, 유럽 연합, 중동, 개인의 배경, 계급과 계급 시스템, 인종과 이념 관계, 성(특히 동성애 관련)
- 영국인들은 특별한 형식이나 방향 없이 자유분방하게 회의를 진행하는데 이는 영국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전통에 입각한 것이다.

- 영국 기업인들은 선례를 따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상담에 임하기 전에 해당 기업의 프로필 등을 미리 조사해 보는 것도 좋다
- 영국인들은 통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이에 따른 확실한 예들을 기준으로 협상에 임하므로 개인적인 친분이나 개인적 감정 등을 개입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상담 시 만약 회의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직설적 표현은 절대 자제해야 하며 지나친 의사표출이나 강제적 답변은 관계 자체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 영국인들은 제 3 자를 통해서 소개 받는 것을 좋아하나 만약 그것이 불가피한 경우 스스로 소개를 하는 것이 좋다. 보통 남성끼리는 자연스레 악수를 하며 상대 여성이나 남성과는 주로 유럽식(뺨을 대는 인사) 인사나 가벼운 악수를 건넨다. 상대 여성이 취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대처하면 되며 유럽식의 경우 두 손으로 양 어깨를 가볍게 감싸고 양쪽 뺨을 번갈아 대며 가벼운 입술음을 낸다.

나. 문화적 금기사항

- 영국의 지역별 차이를 이해하라.
 - 우리가 알고 있는 ‘대영제국 또는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를 포괄하는 나라이다. 위의 지역들은 각각 특이한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 이유로 갈등 관계에 있기도 하다. 따라서 스코틀랜드인, 웨일즈인 그리고 북아일랜드인에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잉글리쉬’라고 말하는 것은 큰 결례가 된다. 상대방의 출신지역을 확인한 후 적절한 단어(스코티쉬, 웰쉬, 아일랜드쉬) 사용 및 이야기 소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통칭으로는 ‘브리티쉬’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 영국인은 중립적이고 내성적이다.
 - 중립적인 성향으로 타인의 일을 간섭하는 것을 꺼리며 특히 간섭받는 것을 불쾌하게 여긴다. 따라서 상담 및 대화 시 어떤 경우라도 중간에 끼어드는 일이 없도록 한다. 부득이 한 경우라면 반드시 양해를 구하도록 한다. 또한 대부분의 영국 사람들은 내성적이어서 대화 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몸짓을 많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정 거리를 유지 하는 것을 좋아함으로 너무 큰 몸짓을 하거나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거부감을 줄 수 있다. 대화 시는 서로 눈을 맞추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보수적 경향으로 사업간 장기적 신뢰 관계 선호
 - 영국 기업가들은 협력 업체 선정 시 지속적이고 장기간 쌓아온 관계를 선호한다. 따라서 1회성 계약을 위한 상술보다는 장기적 관계 형성을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다. 상담/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정확한 담당자 파악이 중요하다.
 - 정확한 수입(구매) 담당자를 파악하여 동 담당자의 개인 이메일 주소 및 직통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를 알아내야 한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영국기업은 세일즈, 마케팅, 구매 부문의 담당자가 별도로 있으며 품목에 따라 또는 지역에 따라서도 담당자가 다를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자를 파악하는데 만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영국 에서는 담당자하고 접촉 없이는 일의 진행이 전혀 안되며 (담당자부재 시, 휴

가 시 다른 직원이 대신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음) 담당자에게 권한이 많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담당자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규모가 작은 영국 기업 접촉 시에는 구매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Managing Director(대표)를 직접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첫 접촉 시에는 우편으로 모든 자료를 송부한다
 - 대부분의 한국 업체는 첫 바이어 접촉 시 팩스 1장이나 이메일로 간략한 회사 소개 및 일반적인 인사말 등을 보낸 후 관심 있을 경우 연락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첫 접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영국업체에게 좀처럼 관심을 끌기가 어렵다. 영국에서는 각종 광고물 등이 수시로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되기 때문에 보통 중요한 서류 등은 번거롭지만 대부분 우편으로 주고받고 있다. 따라서 좀 번거롭더라도 첫 회사 소개서 또는 거래 제의서를 영문 카탈로그, 가격표, 필요 시 샘플 등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훨씬 격식 있고 영국기업에게 관심을 끄는 효과적인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격식을 차린 모든 관련 자료를 우편으로 송부, 약 3주 후 팩스, 전화, 이메일 등으로 자료의 접수여부를 확인하면서 검토결과를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 영국 바이어들의 관심사는 가격, 품질(인증 획득 유무), 딜리버리 기간 등 객관적 지표이다.
 - 첫 접촉 시 회사소개서를 할 경우 CE마크나 ISO, BSI 등의 인증을 획득한 제품일 경우에는 반드시 동 인증획득에 대한 언급을 해야 하며 항상 유럽 산 제품구매와 비교 시 비용 상의 유리한 점과 딜리버리 상의 문제가 없는지를 고려하므로 CIF가격 및 딜리버리 기간에 대해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영국 바이어들은 CE마크 획득 여부를 가장 많이 문의하며 일부 제품의 경우는 CE마크보다 획득이 더 까다로운 BSI(영국 표준협회)의 KITE마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어느 제품은 ISO 인증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인증이 없을 경우에는 거래여부를 결정할 때 아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또한 회사소개 시 선진국시장에 수출한 경력, 전문제조기술 보유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그밖에 일반적으로 회사규모, 설립연도, 연간 매출액, 제조 설비 등이 명기된 회사 소개서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첫 교신부터 첫 오더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인내가 필요하다.
 - 일반적으로 영국 업체들은 제품검토서부터 첫 구매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기존 공급업체와 비교, 확실한 거래상의 이점이 있을 경우에만 거래 선을 전환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기존 공급업체 제품의 가격, 품질, 딜리버리 및 A/S지원여부까지 세밀히 검토한 후 거래 선을 정하기 때문에 관심표명 후 첫 거래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꾸준한 접촉을 해야 된다. 무리하게 검토결과를 재촉하는 것은 관계자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하며 너무 재촉하지 않는 것이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는 방법이다. 또한 다품종 소량 주문이 많은 관계로 첫 거래부터 최저 주문량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 바이어는 거래를 쉽게 포기하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가. 문화와 언어의 상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

국내영업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자사의 제품을 외국에 팔아야 하는 해외수출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마케팅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상대 업체와의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이다.

비즈니스가 결국 어느 한 쪽이 아닌 서로의 이익을 위한 관계이지만 간혹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투자에 있어 아주 소홀한 업체들도 있다. 하지만 언어가 다르고 또 그 내면에 깔린 문화가 다르기에 여러 가지 오해나 실질적인 사업/제품 설명 부족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해외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테지만 유감스럽게도 막상 직접 업무를 수행 시 그와 관련된 크고 작은 실수를 범하는 예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영국에 살아본 적이 있거나 국가 정보를 접한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그 성향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다. 그 보수성은 사회적/문화적 우월감에서 기인한 것이라 단순화해서 보면 무척 오만해 보이는 예가 많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어떤 만남에서고 쉽게 상대방에게 인상을 구기거나 싫은 내색은 하는 경우가 거의 없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일명 영국 신사들이지만 막상 그 반응을 지레 오버해서 받아드렸다면 낭 패보기 심상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영어의 경우도 영국이 원산지임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영어가 부족한 사람에 대해 은근히 답답함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 영국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다. 본인들이 필요할 때야 기를 쓰고 들으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별 그릴 필요 없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나. 브랜드 인지도가 약한 제품(특히 소비재)의 경우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많음

영국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구매행태를 지켜보면 특히나 IT 상품에 대해서는 특정상표에 대한 선호도가 무척 분명한 편이며, 브랜드가 생소한 제품은 구매를 꺼리는 경향이 짙다. 이는 영국의 보수적인 국가성향과도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시 말해, 구매에 있어 서도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모험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좀 더 고가라 하더라도 본인이 쓸 물건은 좋은 걸 쓰는 경향이 있어 Apple i-Pod 같은 제품의 경우 시장에 서 별다른 경쟁자가 없는 형편이다. 또한 제품의 국가 기원(NATIONAL ORIGIN, 원산지와는 별도)에도 비중 있는 관심을 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판매업자들은 누구나 그러한 소비자들의 행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의 제품을 꺼린다. 우선 별도의 많은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야 할뿐더러 그 연후에도 판매 성장에 대한 개런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제품의 시장성이 아주 탁월할 경우라도 바이어들이 선뜻 제품을 구입하는 예는 없다. 마케팅 비용을 발미로 터무니없이 가격을 다운시키려 하기가 예사인 것이다. 그 속에서 판매상은 일단 리스크를 포함한 충분한 고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초도 진출 및 마진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영국 시장의 특성상 회사 및 제품의 브랜드화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과 해외영업 인원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시장개척 지원이나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을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성공사례

1) 기술적 우수성 입증

M사는 디지털 사인 시스템과 POP(Point of Purchase)업계의 선두주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현재 모바일 관련 특허를 포함, 모두 120여 개의 지적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이다. 연속된 GD마크 획득 및 다수의 수상경력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는 K사 등 주요 통신사들과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국을 포함한 1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동사는 자사 주력상품에 대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기능대비 가격경쟁력 및 품질 안정성을 바탕으로 수출 성공을 이끌고 있으며 지속적인 첨단 신제품 연구개발에 전력하고 있다.

디지털 셋톱박스 개발업체인 H사의 경우도 기술력으로 영국시장 진출에 성공한 기업의 또 다른 예라 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방송매체의 디지털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97년 제 1세대 셋톱박스를 유럽에 판매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 H사는 유럽, 중동, 미국, 아시아에 걸친 전 세계적인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북아일랜드에 현지법인을 세우고 마케팅 기능과 생산기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유럽시장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H사의 이런 성공 비결은 가격정책에 따른 성장전략보다는 축적된 뛰어난 기술력에 근거한 고품질의 자체 브랜드 제품 판매를 통한 시장개척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보안통합솔루션 제공업체인 S사가 차별화된 홍채인식 제품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영국에 1,350만 달러 수출계약을 성사시킨 바도 있다

2) 디자인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

영국의 경우 디자인 산업에 있어 ‘실용적 디자인’을 강조하는 미국과는 달리 ‘공학과 디자인이 결합된 고품격 디자인’을 모토로 디자인 특화전략을 수립해 디자인 선진국으로 서의 면모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실제 구매 담당자나 소비자들의 행태 또한 어느 나라 못지 않게 디자인적 요소에 비중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성공 적 영국 진출을 위해서는 영국 현지의 디자인 트렌드에 적합할 수 있는 디자인의 개발이 끊임 없이 요구되어야 한다.

한 예로, 한국의 대표적 도자기 회사인 H사는 ‘도자기 명품화’를 선언 한 후 명품 도자 기 세트를 출시 국내는 물론 도자기의 본고장인 영국에도 수출을 성공하였다. 이 회사는 우수한 디자인 이너 육성을 위해 지난 95년에 디자인 스쿨 ‘프로아트’를 오픈했으며 각종 첨단 장비인 컴퓨터 색 분해기, 드럼스캐너 등의 장비 지원과 디자인 부문의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해 왔다. 그러한 노력 끝에 디자인 분야에서 최고의 상인 ‘디자인 포장’을 수여 받음으로써 디자인 경쟁력을 대내외적으로 평가 받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동양적 분위기의 십장생시리즈와 아라베스크 문양의 유럽스타일은 이 회사만이 갖고 있는 디자인의 특징으로 유럽의 디자인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들은 현재 영국 주요 도자기 브랜드의 OEM을 비롯 50여 개 국에서 안정적인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전자통신 시장에서도 점차 한국업체들의 디자인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특히 휴대폰 단말기 시장에 있어 삼성과 LG 제품의 디자인이 명성을 얻고 있다. 올해 들어서 영국 내

많은 언론매체들은 이미 LG 샤인(Shine)을 히트예감상품으로 선정한 바 있다. 동제품은 뛰어난 디자인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으며 경쟁제품인 모토롤라사의 RAZR스타일 보다 디자인 부문에서 더 높은 평점을 받고 있어 지난해 역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현지에서 '올해의 휴대폰'으로 선정된 바 있는 동사의 초콜릿폰에 이어 히트상품 등극이 유력시 되고 있다. 한편 삼성의 올 봄 출시 예정인 U100모델의 경우도 5.9mm 두께의 세계 최슬림형 디자인으로 관련 전시회를 통한 소개 이후 세계 주요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3) 현지 거점확보를 통한 빠른 딜리버리와 A/S 시스템 구축

부품 시장의 경우 가격경쟁력이나 제품경쟁력도 물론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구매자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나 수요가 발생할 경우 재빠르게 대비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빨리 조달 가능한 지역에 스톡이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제품에 하자가 생겼을 때 빠르게 A/S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필수요소이다. 그러나 한국의 중소기업체 들은 이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투자에 따른 위험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건 설장비를 납품하는 P사의 경우 적극적인 유럽시장 개척을 위해 유럽 내 거점을 확보하여 만족할 만한 애프터서비스 보장, 신속한 딜리버리 등 바이어가 가장 관심 있어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영국시장 진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나. 무역 거래, 투자 진출 시 실패사례

1) 영문자료 미비로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부터 열세에 몰리는 한국기업

영국 바이어들은 매우 자존심이 강하고 보수적일 뿐만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 치밀한 사전준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존심 강한 특성은 미국식 영어보다는 영국식 영어로 제작된 카탈로그를 선호하고 있으며, 거래 상대방의 영문 카탈로그에서 오자나 탈자, 잘못된 표현 등을 발견하면 그 기업의 능력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보수적인 성격은 아직까지도 이메일을 통한 자료 제공보다는, 특히 첫 거래를 위해 접촉할 경우 제품에 관한 인쇄물 카탈로그, 가격명세서, Spec 에 관한 자료 등 세트화 한 일련의 자료를 우편으로 송부 받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협상테이블에 앉기 전 상대방이 제시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고자 하며, 이를 경쟁사들이 제시한 제품들과 비교해 보고 협상에 나서고 있다.

A 기업은 지자체 시장개척단 일원으로 참가가 결정된 뒤 곧바로 무역관이 영문 카탈로그 등 자료 제공 요청 및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위해 연락을 하였을 때, 이제야 영문 카탈로그 제작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면서 A 기업이 시장개척단 일원으로 현지를 방문하는 때에 바이어에게 제시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였으며 이에 영문 홈페이지는 있느냐고 문의하였더니 영문 홈페이지는 제작할 여력조차 없다고 하였다.

이에 무역관은 영국 바이어들은 사전에 자료검토를 충분히 한 후 협상테이블에 앉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이나 상담장에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나서, A 기업의 국문 카탈로그를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영문 제품설명서를 만들어 바이어와의 상담주선을 이행하였다.

일단 무역관이 임시 제작한 영문 제품 설명서와 A 사의 국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그림 파일을 기초로 상담주선은 3 개 바이어와 이루어졌으나, 상담을 마친 이후 바이어들의 추가적인 자료요청 등에 대응을 못한 A 기업은 영국시장 개척에 실패하였다.

한국 중소기업들은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거래에 기본적인 영문 카탈로그, 영문 홈페이지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경향이 있으며 이는 곧 시장개척의 실패로 이어진 예가 대다수이다.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바이어에게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는 바이어가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고 하지 않으며, 설사 제품에 대한 호기심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하더라도 이런 국내기업 중 대다수는 추후 거래 성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뛰는 열성이 부족한 사례가 많이 있다. 수출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Native Speaker 가 감수한 영문 카탈로그와 영문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결국 철저히 준비하는 수출기업만이 바이어 책상에 하루에도 수건의 거래 제의가 쌓이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수출에 성공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주택 물색

주거용 주택은 부동산(estate agency)을 통해 구한다. 부동산은 각 동네마다 쉽게 찾을 수 있는데, Hawes & Co 등 큰 부동산은 전국에 체인을 두고 전국적인 영업을 하는 곳도 있다.

주택 매입 시에는 변호사를 통해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 임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는 8~12%로 집주인이 내도록 되어 있으며, 임차인에게는 계약서 작성비 명목으로 100~150 파운드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택 임차 시에는 특히 향후 임대계약기간 만료 후 원상 복구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 전에 비품목록(inventory list)를 작성, 주인과 임차인이 각각 1부씩 보관, 퇴거 시 상호체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국의 주택은 크게 개인주택(House)와 연립주택(Flat)으로 나뉘어지며, 개인주택도 건물 형태에 따라 완전 단독주택인 Detached House, 두 가구가 한 건물을 절반씩 나누어 사용하는 Semi detached House, 여러 가구가 사는 Terraced House 등으로 나뉜다.

나. 거주지 확정 후 행정절차

현재 한국인은 외국인 등록대상에서 면제되어 있으며, 주거가 확정되는 대로 주영 한국 대사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마치면 된다.

다. 구좌개설

부동산거래 및 각종 계약 시 은행에서 발급하는 credit report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과금 자동이체를 위해 구좌를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주거 확정 후 소속회사 거래은행 또는 접근이 편리한 은행을 선택, 구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다. 전국지점망이 잘 확충되어 있는 바클레이즈, HSBC, Natwest, Halifax 등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며, 계좌 개설 시 직불 카드도 함께 신청하도록 한다. 신용카드는 일반적으로 바로 발급되지 않으며 일정기간(1년 이상) 은행 거래를 이상 없이 하여 신용이 쌓이면 발급한다.

라. 전화신청

전화는 국영 BT(British Telecom)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일반주택의 전화번호 발급 및 라인개설 등의 자세한 문의는 영국 전역에서 국번 없이 152번 BT Residential Service로 전화하여 요청하면 기 전화선이 있는 경우 전화국원의 직접가정 방문 없이 자동으로 신청 3일 내에 개통된다.

마. 비품구입

영국 주택은 가구 및 기본 생활비품 비치여부에 따라 furnished와 unfurnished로 나뉘어 진다. furnished house/flat의 경우 침대를 비롯, 그릇 등 기본 생활비품들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별다른 비품구입은 필요 없으나, unfurnished의 경우 가구가 전혀 없으므로 현지 부임 /이주 전 주거하게 될 주택의 종류를 확인한 후 출국 전 이에 맞게 물품구입을 하도록 한다.

가전제품의 경우 플러그 모양과 헤르츠가 한국과 달라 특히 모터가 달린 제품은 사용수명이 단축되거나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한국에서 무리하게 전자제품을 완비해서 이주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영국이 가전제품을 비롯, 전 공산품의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임으로 헤르츠 차이 등에 큰 관계가 없는 물품은 준비해오는 것도 좋다.

영국은 유통구조가 대형체인위주로 형성되어 있으며, high street라고 불리는 동네의 변화가 상점들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전자제품, 가구, 생필품 등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Sainsbury's, Tesco, Waitrose 등의 대형 슈퍼에서도 웬만한 생필품은 구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슈퍼들은 거의 대부분의 동네에 있다.

바. 주거환경

현지 주재원들은 기차 및 지하철 이용시간 1시간 내외의 교외에 주로 거주하고 있으며 자연 환경이 양호한 편이며, 큰 불편 없이 임차주택을 구할 수 있으며 직원의 경우 임대료는 월 1,000~1,500파운드 내외가 보통이다.

임차주택 입주 시 1.5개월 임차료를 보증금으로 선납하게 되는데, 임차 계약 해약 시 주택 파손 부분에 대해 변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 보증금 회수에 따른 시비가 일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주인과 타협을 하게 된다.

사. 한국식품 조달여건

런던 시내 지역 및 교포 밀집지역인 뉴몰든 등에 상당수 한국식품점이 있어 한국식품은 구입이 가능하다. 보관상태 및 재고처리상의 문제로 한국식품점들이 다양한 품목들을 구비하고 있지는 못하나 주곡, 라면, 양념류, 국산차 등 기본식품들은 현지조달이 충분히 가능하다.

아. 병원·약국

1) 의료보험

National Health Service(NHS, 국립보건기구)제도로 인해 전국민(체재 외국인 포함)이 간단한 질병에서부터 수술까지 무료로 의료 혜택을 보고 있다.

주재 및 거주 목적으로 영국에서 거주지를 정하면 집 근처의 GP(일반의, General Practitioner)에 등록을 하도록 한다. GP(일반의)는 거의 모든 동네에 있고 일차적으로 모든 질병을 진료하며, 전문적인 치료 및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종합병원 등으로 환자를 인계한다.

2) 병원

GP는 주말 및 공휴일에는 진료를 하지 않으나 긴급 환자의 경우 특별진료를 하며, 위급한 경우 종합병원의 EMERGENCY 치료를 이용할 수 있다.

3) 약국

원칙적으로 의사처방에 의해서만 약을 조제해 주며, 약은 어린이 및 노인은 무료이고, 그 외에는 유료이며, 일주일에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항상 문을 연다(09:00-17:00). 붕대, 반창고 등 의사처방이 불필요한 약품은 의사 처방 없이 약국 외에도 테스코, 부츠 등 대형 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자. 레저 여건

전통의 나라로 불리어지듯이 많은 역사적 유적, 유물, 유산 등이 있다. 박물관과 공원들이 특히 많으며, 많은 음악회, 미술전시회, 연극들이 연중 공연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별로 많은 축제들이 개최되고 있다.

성(Castle), 정원들이 많으며 많은 여행코스 및 피크닉 장소들이 있어 주말과 휴가철에는 대부분이 여가활동을 하고, 각 커뮤니티 단위로 스포츠센터가 있어 주민들이 부담 없이 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골프의 발상지로서 많은 Public Course (일반대중을 위한 비회원제 골프장) 및 Private Course(회원제)들이 있다.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축구, 크리켓, 테니스 등을 많이 하고 있다.

차. 치안상태

야간에 혼자 산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치안상태가 좋은 편이나, 최근 런던 시내에서는 총기 사고를 포함한 강력사건들이 가끔 발생하므로 방심은 금물이며, 특히 실업증가와 더불어 도난, 강탈사건 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카. 현지인들의 한국인 인식

서울올림픽 개최, 한국 대기업들의 현지투자, 급속한 경제성장 등으로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이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가전제품 등 기술집약적 제품을 수출함에 따라 이미지가 크게 제고되었다.

타. 자녀 교육여건

연령에 따라 영국학교에 입학하게 되며, 정원 내 공석이 있는 한 입학신청서 및 여권 사본 제출로 곧바로 입학이 된다. 공립학교를 다닐 경우 의무교육으로 인해 고등학교까지는 학비가 무료이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부터 상당히 비싼 수업료를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도 차별을 하지 않으며, 능력과 적성에 따라 객관적으로 학생들의

진로를 안내하며, 학교가 많아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교육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자녀교육 환경은 양호하다.

현재 영국에는 전역에 걸쳐 7개의 한인학교가 있으며, 초, 중, 고등학생(1학년)을 대상으로 한국의 정규 교과 과정을 학습시키고 있다(토요일에만 수업)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영국의 기후는 연중 내내 큰 기온 변화 없이 온난하지만, 남서풍과 대서양을 가로질러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하루 중에도 변화가 심한 편이다.

기온은 대체적으로 최고 32 도를 넘거나 최저 영하 10 도 이하로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으나, 남쪽과 서쪽이 북쪽이나 동쪽보다 조금 더 따뜻하다. 동절기인 12 월, 1 월, 2 월, 3 개월간의 월 평균 기온은 8~4.9 도이며, 하절기인 6 월, 7 월, 8 월 3 개월간의 평균 기온은 14.1~ 16.2 도이다. 그러나 영국의 10 월부터 4 월까지는 가랑비가 계속 내리며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가 매우 낮은 바 동기간 중 여행하는 경우 코트나 스웨터 등 겨울 옷이 필요하다.

연중 강수량은 웨일즈, 스코틀랜드 등 북서 산악지방의 경우 1,600mm, 중부지방과 남. 동부지방의 경우 800mm 정도이다. 대체적으로 연중 고른 강수량을 보이고 있으나, 평균적으로 3~6 월 중이 가장 건조하며, 9 월부터 1 월 중에는 강수량이 더 많은 편이다.

연중 일조시간은 지형에 따른 지방차가 있으나 5, 6, 7 월 북부 스코틀랜드의 경우 5 시간, 남부지방의 경우 8 시간 정도이며, 일조시간이 가장 짧은 11, 12, 1 월 중에는 북부 스코틀랜드 1 시간, 남부 해안지방 2 시간으로 겨울의 영국은 상당히 습하고, 햇볕이 적다.

□ 출장 시 추천복장

계절에 따라 4~6 월/7 월 초와 9~10 월간에는 춘추복, 7~8 월간에는 하복, 11~3 월에는 동복을 착용한다. 봄, 가을, 겨울에는 일교차와 비가 내릴 것에 대비해 적합한 방수용 코트나 점퍼, 스웨터 및 우산을 준비토록 한다.

여름에도 크게 기온이 올라가는 일이 드물어 여름 출장 시에도 가급적 긴 팔 와이셔츠를 착용하는 것이 좋으며, 열은 색상과 콤팩트장은 많이 선호되지 않으므로 참고 하도록 한다.

나. 시차/근무시간

1) 시차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한국시간 -9 시간이며, 일광시간 절약기간(SUMMER TIME)에는 한국 시간 -8 시간이다. 일광시간 절약기간은 매년 3 월 마지막 주 일요일부터 10 월 마지막 주 일요일까지이다.

2) 근무시간

관공서 및 일반기업의 근무시간은 대개 09:00-17:00, 은행은 09:00-16:30 까지이며 주 5 일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일부 은행의 경우 지정위치에 따라 평일 오후 5 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에도 업무를 보는 곳도 있다. 슈퍼마켓은 점포마다 차이가 있고 24 시간 영업점들이 생겨 나고 있으나 대체로 평일은 08:00-20:00 까지, 토. 일요일은 10:00-16:00 시까지 영업을 한다. 의약품 및 위생용품점, 일반 상점들은 평일 09:00-17:00 까지, 토요일 10:00-16:00 까지 개점하며, 일요일은 대부분 휴점하므로 비상약 등은 출장 전 미리 준비하도록 한다.

다. 주요 단위 (도량형)

- 공식적으로는 Metric System 이나 인치, 파운드 등을 사용하는 UK Imperial System 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EU 통합에 따라 EU 의 미터법 통일 법규 (European Union Legislation on Metrication)가 발효되어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파운드, 온스 등 UK Imperial System 이 점차 미터법으로 변화되고 있다.
- 2000 년부터 모든 식품은 미터제에 의해 판매되고 있음.
- 그러나 거리는 아직도 마일로 표시되며 몸무게는 파운드로 표시되는 등 미터법 사용에도 불구하고 관습적으로 UK Imperial System 이 생활 속에서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The U K (Imperial) System of Measurements

Length		Area	
12 inches	= 1 foot	144 sq. inches	= 1 square foot
3 feet	= 1 yard	9 sq. feet	= 1 square yard
22 yards	= 1 chain	4840 sq. yards	= 1 acre
10 chains	= 1 furlong	640 acres	= 1 square mile
8 furlongs	= 1 mile	Capacity	
5280 feet	= 1 mile	20 fluid ounces	= 1 pint
1760 yards	= 1 mile	4 gills	= 1 pint
Volume		2 pints	= 1 quart
1728 cu. inches	= 1 cubic foot	4 quarts	= 1 gallon(8 pints)
27 cu. feet	= 1 cubic yard	Troy Weights	
Mass (Avoirdupois)		24 grains	= 1 pennyweight
437.5 grains	= 1 ounce	20 pennyweights	= 1 ounce(480 grains)
16 ounces	= 1 pound(7000 grains)	12 ounces	= 1 pound(5760 grains)
14 pounds	= 1 stone	Apothecaries' Weights	
8 stones	= 1 hundredweight [cwt]	20 grains	= 1 scruple
20 cwt	= 1 ton(2240 pounds)	3 scruples	= 1 drachm
Apothecaries' Measures		8 drachms	= 1 ounce(480 grains)
20 minims	= 1 fl.scruple	12 ounces	= 1 pound(5760 grains)
3 fl.scruples	= 1 fl.drachm	1 yard	= 0.9144 metres
8 fl.drachms	= 1 fl.ounce	1 pound	= 0.453 592 37 kilograms
20 fl.ounces	= 1 pint	1 gallon	= 4.546 09 litres

의류 사이즈

Men's Suits and Coats								
미국	36	38	40	42	44	46	48	50
유럽	46	48	50/52	54	56	58/60	62	64
영국	36	38	40	42	44	46	48	50

Women's Dresses and Suits								
미국	6	8	10	12	14	16	18	20
이탈리아	38	40	42	44	46	48	50	52
스칸디나비아, 프랑스, 독일	34	36	38	40	42	44	46	48
스페인, 포르투갈	36	38	40	42	44	46	48	50
영국	8	10	12	14	16	18	20	22

Men's shirts								
미국	14	14½	15	15½	16	16½	17	17½
유럽	35	36/37	38	39/40	41	42/43	44	45
영국	14	14½	15	15½	16	16½	17	17½

Men's shoes							
미국	7	8	9	10	11	12	13
유럽	40/41	42	42/43	43/44	45	47	48
영국	7	8	9	10	10½	12	13

신발 사이즈

		35½	36	37	37½	38	38½	39	40	41	42	43	44	45
U.K.	M	3½	4	4½	5	5½	6	6½	7	7½	8	8½	10	11
	W	3	3½	4	4½	5	5½	6	6½	7	7½	8	9½	10½
Korea(mm.)		231	235	238	241	245	248	251	254	257	260	267	273	279

모자 사이즈

UK	61/2	65/8	63/4	67/8	7	71/8	71/4	73/8	71/2	75/8	73/4	77/8
미터식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기타		S		M		ML	L		XL		XXL	

라. 출입국/비자

1) 출입국

□ 출입국절차

- 공항 도착 후 입국 인터뷰를 위한 입국 심사대는 여행자의 국적에 따라 EU, Others 등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한국인은 Others 쪽 심사대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영국 외 다른 EU 국 방문 후 영국에 오는 경우에도 EU 가 아닌 Others 심사대를 이용함.)

- 입국심사는 입국심사원에게 여권과 입국카드(Landing Card), Visa(단기체류 시 생략)를 제시하고 심사원의 질문에 따라 영국 방문 사유와 체재기간을 설명하여 입국허가 도장을 받는 것으로 완료된다.
- 입국심사를 마치면 세관신고대를 통과하게 되는데, 세관에 신고할 물건이 없는 경우에는 녹색, 세관에 신고할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적색 통로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 주류, 향수, 선물용품, 스포츠용품 등 개인 휴대품에 대해 일정한도 내에서 무관세 통관이 허용되며, EC 역내 구입품은 역외 구입품에 비해 무관세 허용한도가 크다.

□ 출입국 유의사항

- 영국의 출입국관리 시스템은 여행객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여 잘 정비되어 있으나,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자국민 실업 유발과 범죄 증가 등을 방지키 위해 비자발급 및 입국허가 등에 있어서는 확고하고 엄격한 지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유에서 공항 Immigration Office 는 인터뷰 시 현지 체재사유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항에서 입국을 불허하거나, 체재허가기간을 임의로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다.
- 위의 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6 개월까지의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국 인터뷰 시 불필요한 설명과 얼버무리는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나쁜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현지 파트너가 없는 비즈니스 출장의 경우 의심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특별한 영업소득을 발생치 않는 단순한 시장조사 또는 업무처리를 위해 6 개월 정도 체재할 계획이라면 불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여권 분실 해결절차

- 여권을 입국 절차 전이나 도중 분실했을 경우는 아예 입국 자체가 거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조심하도록 한다. 정황 설명이 잘 전달되어 혹시 입국이 허용된 경우라면 바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대사관을 통해 ‘여행자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며 장기 체류 목적일 시에는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도록 한다. 여행자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경찰서 신고확인서, 여권용 사진 2 장, 사진이 부착된 한국 신분증(여권 사본을 따로 지참하는 것이 편리함), 비행기 티켓(분실 시 복사본 또는 확인 이메일도 가능)이 필요 하며 보통 3 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 휴대물품

- 테러 위협 이후 영국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은 하나의 기내 반입용 가방을 가지고 공항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도록 허용된다. 이 가방의 크기는 바퀴, 손잡이, 옆 포켓 등을 포함해서 최대 가로 35 cm, 세로 45 cm, 높이 16 cm(약 13.7 인치 X 17.7 인치 X 6.2 인치)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핸드백 같은 다른 가방들은 한 개의 기내용 가방 안에 넣어져서 반입될 수 있다. 승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은 X-레이로 검사를 받게 된다. 유아용 우유나 액체식품, 필요충분조건을 구비한 처방약(당뇨병 약 등) 확인된

몇 개 품목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종류의 액체도 공항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 하도록 허용되지 않으므로 병, 플라스크, 튜브, 캔, 플라스틱 용기 등은 기내용 가방에 넣어 두지 않도록 권장한다.

- 여행 관련 사항이나 공항에서 시행되는 보안 검색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공항 당국이나 항공사 등에 출발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불편을 예방할 수 있다.

□ 샘플/브로슈어 통관절차

- 입국 심사 시 짧은 출장의 경우 출장 관련 설명 없이 일반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예가 있으므로 입국 심사대를 통과한 후 개인수하물을 찾는 것을 감안한다면 오해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내용 휴대품에는 샘플이나 브로슈어를 적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량의 샘플을 소지한 경우 실제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우선 제품이 판매용이 아닌 샘플용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하며 따라서 “가치가 없다(Samples of negligible value)”는 것을 우선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에 흡을 내거나 특별한 마크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 외 동 제품이 일회성 판매(소비용) 가 아니라는 것을 설득시켜야 하며 그 수량 제한도 필요하다. 제품에 따라 샘플용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품목들도 있으니 확실치 않을 시 미리 관세청에 문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 공항 입국 시 샘플을 휴대(in baggage)했다면 원칙적으로 Customs Red Channel 이나 Red Point 에서 세관 자신 신고를 해야 하며 따로 적재했다면 (as freight) 해당서류(SAD;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Form C88)에 내용을 기재해서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관세를 지불한 후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세 부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항의절차를 거칠 수 있다. (Notice 990 Excise and Customs Appeals)

□ 식품류 반입

- 한국으로부터의 육류, 가금 및 동 부산물 수입은 식품위생검사를 필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금지되어 있으며, 수삼 등 비가공상태의 기타 식품류의 경우도 반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 관세 관련항의 및 문제해결 연락처

- The Adjudicator's Office
 - Haymarket House, 28 Haymarket, London, SW1Y 4SP
 - 전화: (020) 7930 2292 / 팩스: (020) 7930 2298
 - 이메일: adjudicators@gtinet.gov.uk
 - 웹사이트: <http://www.adjudicatorsoffice.gov.uk/>

2) 비자

- 일반 여행 및 방문객: 6 월 무비자
 - 하지만 영국 입국 심사 시에는 영국 체류에 필요한 충분한 비용과 방문지(숙소 주소) 및 여행 계획, 그리고 한국 귀국일정 등에 관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입국 허가 여부와 체류기간에 관련된 사항들은 이때 결정된다.

- 6 개월 이상 장기체재를 원할 경우
 - 출국 전에 영국해외공관(주한 영국대사관)으로부터 직접 장기체재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체류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체류기한 만료 전 소정의 신청서를 등기우편 또는 등기배달로 Home Office(Immigration Dept.)에 송부하거나, 여권을 지참하여 각 지방 이민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연장요청을 해야 한다.

□ 출장자

영국에서의 회의 참석, 사업상 협상 또는 재화/용역 구매 계약체결, 사실관계조사 등 일시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여행객과 같이 6 개월간은 비자 없이 체류 가능하다. 만약, 재화나 용역을 직접 일반에게 판매하는 등의 생산적인 노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노동허가(Work Permit)가 필요하다.

□ 일인사무소(sole representatives) 운영

영국 내 자사 지점 등 다른 사무소가 없는 해외업체를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1 년 내에 등록된 지점(registered branch)이나 자회사(wholly-owned subsidiary)를 설치하여 대표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급직원(senior employee) 자격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비자는 다른 경우와 같이 주한 영국대사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다.

□ 투자자(investors)

투자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자기 통제 하에 영국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1,00 만 파운드 이상이 되고, 이중 최소 750,000 파운드 이상을 영국에 투자할 것이며, 주요 주거지를 영국으로 할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투자입국을 위해서는 주한 영국 대사관을 통한 사전입국허가가 필요하며 신청절차는 같다.

□ 비자발급처

- 주한 영국대사관
 - 주소: 서울시 중구 정동 4
 - 전화: (대사관) 02-3210-5500 / (비자과) 02-3210-5653
- HOME OFFICE
 - 담당부서: Immigration Department
 - 주소: Lunar House, 40 Wellesley Road, Croydon, Surrey CR9 2BY, UK
 - 전화: 087-0606-7766
 - 업무시간: 09:00-16:00 (Bank Holiday 제외)
- 처리기간: 약 8 주, 직접 방문 시 당일 처리(구비서류: 여권, 재정증빙서류)

마. 환전

1) 화폐단위

화폐단위는 파운드(Pound Sterling)로 '£'로 표시한다. 1 파운드는 100 Pence 이며 pence 는 소문자 'p'로 표시하고 '피'라고 불리기도 한다. 지폐에는 5, 10, 20, 50 파운드가

있으며, 주화에는 펜스단위로는 1, 2, 5, 10, 20, 50p 짜리가, 파운드 단위로는 1, 2 짜리가 있다. 가계수표 및 직불카드(Debit card), 신용카드(Credit Card)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어 50 파운드짜리 고액권은 일반적으로 많이 소지하지 않는 편이다.

2) 환율

파운드화의 현재 환율은 2008 년 5 월 30 일 매매기준율 기준으로 1 파운드= 2,032 원, 1 파운드= 1.9720 달러이다.

3) 환전

달러화 또는 EU 국가 화폐의 경우 공항, 은행, 우체국, 국제수준 호텔 등에서 쉽게 환전할 수 있으며, 시내 중심가에도 환전소가 있기 때문에 환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 환전환율은 은행 간에는 비슷하며, 시내 환전소가 다소 유리한 것처럼 보이거나 수수료를 감안하면 역시 은행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호텔은 은행, 환전소보다 약간 불리한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로 원화 환전은 되지 않으므로 한국에서 환전해가거나, 여행자수표(Traveler's Cheque)를 발급받아 오도록 한다. 영국 전역에서 대부분 신용카드가 통용되기 때문에 많은 액수의 현금을 환전할 필요는 없으므로 적당한 금액만큼만 환전해 오는 것이 좋다

바. 교통/통신

1) 교통

□ 항공

대한항공이 매일 서울-런던 직항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아시아나 항공도 일주일에 4 회 (화, 목, 토, 일) 직항을 운행하고 있다. 비행시간은 11 시간 정도 소요된다. 그 외 네덜란드 항공(KLM)과 에어프랑스가 암스테르담과 파리를 각각 경유하는 런던-서울왕복 항공편을 운행하고 있으며, 경유노선이어서 요금은 직항노선에 비해 다소 저렴하나 두 시간 정도 더 소요된다.

런던 인근의 Heathrow, Gatwick, Luton, Stansted, City 등 5 개 국제공항 및 맨체스터, 글라스고, 애버딘, 에딘버러 등 주요 지방도시의 국제공항 등을 통해 유럽은 물론 세계 주요 도시들과의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라이언에어(www.Ryanair.com)와 이지젯(www.Easyjet.com)등이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로 인기를 끌어오고 있다.

항공권 구매는 보통 미리 예약할수록 가격이 저렴해지며 특히 각 항공사의 수시/시즌 특가 판매나 전문 여행사들의 할인 티켓 구매를 통하면 보다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다.

□ 영국 내 한인 여행사 리스트

- 대한항공 런던지점
 - 66/68 Piccadilly, London W1J 0HJ
 - 전화: 020 7495 2299/3377 / 팩스: 020 7495 1616
 - 홈페이지: www.koreanair.com
 - 이메일: lonso@koreanair.co.kr

- 아시아나항공 런던지점
 - 2nd Floor, 7/8 Conduit Street, Mayfair, London W1S 2XF
 - 전화: 020 7514 0209 / 팩스: 020 7514 0207
 - 홈페이지: www.flyasiana.com
- 유니마스터 여행사
 - 1st Floor, 115 Praed Street, London W2 1RL
 - 전화: 020 7402 0077 / 팩스: 020 7402 1511
 - 홈페이지: www.unimaster-travel.com
- 박 여행사
 - 15 Hanover Square, London W1S 1HS
 - 전화: 020 7495 2525 / 팩스: 020 7493 6952
 - 이메일: parktravel@parktravellondon.com
- 보라 여행사
 - 91 Burlington Road, New Malden, Surrey KT3 4LR
 - 전화: 020 8241 7987 or 8949 1279 / 팩스: 020 8949 3132
 - 홈페이지: www.boratravel.com
 - 이메일: boratravel@hotmail.com
- 써니 투어즈
 - 17 Rear of Coombe Road, New Malden, Surrey KT3 4P
 - 전화: 020 8336 5866 / 팩스: 020 8336 5865
 - 홈페이지: www.sunnytours-london.com
 - 이메일: sunnytours@btconnect.com
- 코리안 서비스 여행사
 - 17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 전화: 020 8949 1177, 5976 / 팩스: 020 8949 7681
 - 홈페이지: www.kstravel.co.uk
 - 이메일: kstravel1177@yahoo.com

2) 국내교통

- 오랜 대중교통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런던 전역에는 지하철과 버스가, 시 외곽에는 지역 버스와 기차가 잘 발달되어 있다. 시설 노후로 최근 잦은 운행지연 및 결행으로 이용객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나 도심 주차난으로 대중교통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 런던지역의 대중교통 정보는 Transport for London 웹사이트(www.tfl.gov.uk) 검색 또는 런던전화 020 72221234 로 문의하면 요금과 운행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월 정기권 및 연 정기권은 인터넷 온라인으로도 구입할 수 있을 만큼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지하철(Tube)

- 'Underground' (속칭 Tube) 라고 불리며 9 개의 노선으로 런던 시내 어느 곳든지 갈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다. 요금은 런던을 1~6 존(zone)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1 존이 시내 중심부를 나타내며 그 외곽으로 갈수록 숫자는 커진다. 또한 이용시간대에 따라서도 가격차가 있다.
- 티켓은 역사 내 티켓판매기나 창구에서 카드 구매도 가능하나 보통 시간 소요가 크므로 잔돈을 필히 지참하고 판매기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오이스터(Oyster)라 불리는 전자교통카드 사용의 확대를 위해 카드사용요금과 현금요금의 차이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로 실제 편도 성인요금의 경우 현금 지불 시(일회용 패스 사용 시) 1~6 존 내 이동 시 편도 4.00 파운드를 부과하는 반면 오이스터 카드 사용 시는 존, 이동 시간(Peak Time(평일 낮시간), Off-Peak Time) 간 차등을 두고 1.50~3.50 파운드 까지 큰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 참고로 출장 시 히드로공항에서 런던 시내로 지하철 이동 시는 1~6 존용 티켓을 구매하여야 하며 이는 현금 구매 기준 편도요금 4.00 파운드이다. 장기 출장자의 경우는 도착 시 공항에서 선불(Pre-pay) 오이스터 카드를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며 용도에 따라 하루 종일 전철과 버스를 회수 제한 없이 탈수 있는 일일교통카드(one day travel card; 현금 구매 시 구역에 따라 6.60~13.20 파운드(off-peak 5.10~ 6.70 파운드 정도), 오이스터 카드 이용 시 6.10~12.70 파운드(off-peak 4.60~6.20 파운드 정도) 또는 주말 이용권(3days Travelcard; 16.40~39.60, off-peak 20.10 파운드) 등을 구입하는 것도 경제적이다. 한편 전철역 및 전철 내에서의 흡연은 전면 금지되어 있다.

□ 시내 버스

- 런던 시내의 버스는 더블데크(Double Deck)라고 불리는 2 층 버스가 주류로 역시 흡연은 금지되어 있다. 2 층 버스의 맨 앞좌석은 처음 런던을 방문하는 여행객에게는 또 다른 관광방법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구형 더블데크들이 사라지고 차량 2 개를 연결한 굴절버스들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이다.
- 요금은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1~6 구역까지 구분되며 현재 런던 시내요금 편도 2.00 파운드(오이스터 카드 이용 시 1.00 파운드)이며 티켓은 승차 전 정류장의 자판기에서 미리 구매하여야 한다. 일일버스패스의 경우 어른은 3.00 파운드, 16~17 세는 1.50 파운드이며 16 세 이하는 무료이다. 오이스터 카드의 경우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전철과 버스 다 통용되므로 사용이 편리하다.

□ 택시(Black Cab)

- 옛날 마차를 연상케 하는 중후한 디자인으로 런던의 명물이다. 최근에는 노란색, 은색 등 색상이 다양해졌지만 검정색이 압도적으로 많아 일명 'BLACK CAB'으로 불린다.
- 시간거리 병산 제로 요금은 상당히 비싼 편이나, 합승제도가 없고 런던택시 운전사들은 엄격한 런던지리 및 교통법규 시험을 통과한 다년간의 경험을 갖춘 운전수들이어서 최단 시간에 편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 운전사 옆자리는 짐을 싣는 곳이며 뒷좌석에 5 명까지 승차가 가능하다. 빈 택시는 'TAXI'라고 쓴 부착물에 노란 불을 밝히고 다니므로 쉽게 식별가능하며 아무 곳에서나 손을 들어 세울 수 있다.
- 택시를 잡은 후 먼저 목적지를 말하고 운전사의 행선지 확인을 받은 후 승차한다. 택시 요금은 기본이 2.20 파운드이며, 1 마일당 20p 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계산되는데, 예전에는 탑승자 수나 짐 추가에 따른 할증요금이 부과되었으나 이는 더 이상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대신 Off-Peak Time, Peak Time, 심야로 구분되는 3 단계 시간 할증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주말/공휴일에도 추가 할증료가 부과된다. 탑은 보통 10%를 지불한다.
- 평균 요금을 살펴보면, 평일 낮시간(06:00~20:00) 1 마일(약 5~12 분) 이동 시 4.20~6.20 파운드이고 평일 20:00~22:00 나 주말의 경우 4.60~7.40 파운드, 심야(22:00~06:00)나 법정 공휴일의 경우 5~7.40 파운드가 부과된다.
- 히드로 공항에서 런던 시내까지 택시 이용 시는 대략 30 분~1 시간이 소요되며 요금은 40~70 파운드가 부과된다.

□ 미니캡(MINI CAB)

- 일종의 자가용 CALL TAXI 형태로 당국의 정식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운행되는 경우도 많으며, 특히 여성과 초심 여행자들에게는 안전치 못할 경우가 있으므로 야간에는 이용치 않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승차 전 요금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용하기 전 미리 미니 캡 회사에 전화하여 예약하거나 역주변이나 번화가에 위치한 사무실을 통해 직접 이용 가능하며, 일반택시보다는 저렴하므로 런던시내-공항, 런던-외곽 등 장거리 이용 시 유용하다. 미니 캡 회사는 각 지역의 전화번호부(yellow page)에서 해당 지역의 우편번호(postal code)를 보고 인근 회사를 찾아, 이용하는 것이 편하다.

□ 기차

- 런던 시내에 Waterloo, Victoria, Paddington, Kings Cross, Euston 등의 주요 역에서 영국 전역으로 가는 기차를 탈 수 있으며, 기차시간 및 요금은 National Rail Enquiries 사이트 (<http://www.nationalrail.co.uk>)를 통해 검색 가능하다.
- EuroStar-워털루(Waterloo)역에서 운행되는 런던-유럽 본토(파리, 브뤼셀)간 고속철도. 런던-파리간 소요시간은 3 시간 30 분임

□ 교외/ 고속/ 대륙횡단 버스

- 런던시내의 Victoria 역 근처에 위치한 Victoria Coach Station 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영국 내 주요 도시 및 대륙 횡단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버스 정보사이트인 내셔널 익스프레스(<http://www.nationalexpress.com/>)를 이용할 수 있다.

3) 통신

□ 국제전화

호텔에서의 국제통화료는 상당히 비싸며 야간, 공휴일 할인요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중 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한국으로의 다이얼링방법은 00-82-지역번호-개인번호

순으로 한다. 국제전화카드(International phone card)를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이 카드로 시내통화도 가능하므로 여러모로 편리하다. 5, 10, 20 파운드짜리가 있으며, 시내 중심가의 신문 파는 곳(news agency), 전화카드 전문 판매코너, 동네 슈퍼 등에서 구입 가능하며 카드의 종류가 무척 다양하나 보통 한국 통화의 경우 4~5p/분 정도의 시내통화료 수준으로 국제 통화가 가능하며 차이나 타운 등지에서는 20 파운드 카드를 15 파운드 수준으로 할인 구매가 가능하며 구입 시 25 파운드치를 사용할 수 있다.

□ 국내전화

시내 공중전화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와 달리 동전을 투입구에 걸어놓고 상대방이 연결되면 동전을 넣어서 통화가 시작되며 통화 도중 뚜-뚜- 하는 신호가 나면 계속 동전을 넣고서 통화를 계속할 수가 있다. 최소 20 펜스짜리 동전부터만 가능하다. 또 한 가지는 먼저 동전을 집어넣고 통화를 할 수 있으며, 많은 양의 동전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다. 오른쪽 게시판에 액수가 기록되며 모든 동전을 쓸 수 있다. 장기체류일 경우는 동전이 필요 없는 전화카드(BT Phone Card)를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우체국과 news agency 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2, £4, £10 짜리가 있다. 그 외 국제전화카드를 이용해서도 통화가 가능하다.

□ PC 방 이용

영국에는 한국 개념의 PC 방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대신 주로 메일, 정보 검색 등을 위한 인터넷 카페들은 산재되어 있다. 큰 규모라기보다는 컴퓨터 20 대 안팎의 소규모 서비스 공간들이 많으며 그 외에 좀 큰 규모의 것으로는 'Easy Everything' 이라는 인터넷 카페가 있다. 런던에도 몇 개의 체인점이 있는 데 점포 규모는 상이하지만 보통 100~200 대의 컴퓨터가 비치되어 있으며 주로는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이 메일확인 정보 검색 등을 위해 활용하는 공간이다. 이용 대금은 보통 30 분에 1 파운드 정도의 수준이며, Easy everything 같은 곳은 별도로 시간대별로 가격을 달리 측정하여 예를 들어 peak-time 에는 30 분에 2 파운드, Off-peak 인 경우, 4 시간에 1 파운드 일 경우도 있다. 원활한 한글 사용을 원한다면 한인 인터넷 방 이용도 가능하다.

□ 노트북 이용

최근 브로드밴드 통신망의 증가로 대부분의 호텔 객실에서도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외 무선인터넷 Hot spot 이 설치 된 점포나 쇼핑공간들도 확대되어 Vodafone, T-mobile 이동통신사들의 계정 구입을 통해서 스타벅스(Starbucks)나 기타 커피전문점 등에서도 노트북 사용을 통한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다.

□ 핸드폰 구입 안내

Carphone Warehouse 나 Vodafone, O2, Orange, T-mobile 등의 점포 방문을 통해 핸드폰 구매가 가능하다. 보통 Pay-as-you-go, Pay-as-you-Talk 등으로 불리는 선불카드 충전 방식으로 단말기와 함께 심(SIM)카드라 불리는 칩을 통해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일정 금액만큼의 크레딧을 구입하여 그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언제든지 충전(pop-up)가능하다. 보통의 경우 크레딧 소멸 이후에도 수신은 가능하며 가격대는 단말기 종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저렴한 기종은 보통 30 파운드부터 구입 가능하다.

□ 표준 전압 및 주파수, 콘센트 모양 안내

전기규격은 220/240 볼트, 50 헤르츠로 한국과 달라 모터 장착 가전제품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전기플러그도 earth 선이 하나 더 있어 3 개 핀으로 되어 있는데 어댑터는 공항 및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가격은 대략 5 파운드 수준이다.

사. 호텔/식당

1) 호텔

관광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영국을 여행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숙박형태로는 일반적인 호텔과 B&B 를 들 수 있다. B&B 는 BED & BREAKFAST 의 약자로 숙박과 다음날 아침을 제공하는 소규모의 간이 호텔 또는 여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편의시설은 다소 불편해도 가격이 호텔에 비해 저렴하다.

런던을 비롯하여 전국 전역에 각 등급의 다양한 호텔이 있는데, 방문 전 인터넷을 통해 미리 정보를 검색하여 예약하는 것이 편리하고 저렴하다. 유용한 사이트로 영국관광진흥청 (www.visitbritain.com), 런던 시 관광정보 공식사이트인 www.visitlondon.com 또는 www.londontown.com 등을 들 수 있다.

런던 시내에서 고급 비즈니스 출장자를 위한 호텔들은 Piccadilly Circus ~ Green Park, Hyde park 부근에, 중급 호텔은 Hammersmith, Notting hill Gate 부근에, 그리고 관광객이나 출장자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호텔들은 Bayswater, Russell Square, Paddington 부근에 많이 있다.

호텔명	등급	주소	연락처	가격
힐튼 파크레인	☆☆☆☆☆	22 Park Lane, London, W1K 1BE	(+44)20 74938000	Single £ 200~350 Double £ 200~400.
르네상스 찬스리코트	☆☆☆☆☆	252 High Holborn, London, WC1V 7EN	(+44)20 78299888	Single £ 150~300 Double £ 180~400
노보텔 런던 유스톤	☆☆☆☆	100-110 Euston Road, London NW1 2AJ	(+44)20 76669000	Single £ 110~200 Double £ 150~250
로얄내셔널	☆☆☆	Bedford Way, London, WC1H	(+44)20 76372488	Single £ 60~90 Double £ 70~100
아이비스 런던 엘스코트	☆☆☆	47 Lillie Road, Earl's Court, London, SW6 1UD	(+44)20 76100880	Single £ 50~90 Double £ 70~100
시타딘 아파트 호텔	☆☆☆	18-21, Northumberland Avenue, London, WC2N 5EA	(+44)20 77663700	Single £ 60~90 Double £ 70~100

위 호텔의 가격 정보는 호텔 요금표 기준 대략적인 금액이며 이는 주중과 주말 요금 등을 포함한 성수기/비수기 요금에 큰 차이가 나며 또한 예약시기(투숙 몇 일 전)나 투숙 일수에 따라서도 요금이 크게 달라진다. 보통의 경우 비즈니스 전문여행사나 인터넷 특별요금 등을 통하면 큰 폭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식당

다양한 종류의 각종 레스토랑과 패스트푸드점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으며, 큰 어려움 없이 각국의 다양한 음식들을 즐길 수 있다. 중국식당의 경우 런던 시내 SOHO 지역부근에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어 있으며, 일본식당도 Piccadilly Circus, Oxford Street 등 시내에 여러 개가 있다. 한국식당은 런던 시내에 20 여 개, 교민 밀집주거지역인 런던교외의 NEW MALDEN, KINGSTON 지역에 20 여 개가 성업 중이다.

식당명	메뉴	주소	연락처	가격(파운드)
카페 네로	커피 샌드위치	영국 전역에 287 개의 점포를 가진 커피 체인점	N/A	커피/티: 2£ 내외 빵/샌드위치: 2~3
사카나테이	일식	11 Maddox Street, London, W1S 2QF	(+44) 08710757855	8~15£
피노	스페인	33 Charlotte Street, W1T 1RR	(+44)20 78138010	식사 £38.00 와인 £16.00 샴페인 £42.00
가야	한식	42 Albemarle Street, London W1S 4JH	(+44)20 74990633	메뉴당 약 10~15£ 내외 (저녁식사시 1 인당 40£)
로얄 차이나	중식	24-26 Baker Street, W1U 3BZ	(+44)20 74874688	메뉴 당 5~10£, 세트 메뉴는 1 인 평균 30~40£ 수준 (세트 메뉴.
벨고	벨기에	50 Earlham Street/29b Shelton Street, Covent Garden London WC2H 9LJ	(+44)20 78132233	메뉴당 10~15 파운드 수준, 맥주 3~5 파운드
란	한식	58-59 Great Marlborough Street, London, W1F 7JY	(+44)20 74341650	메뉴 당 10 파운드 수준 (인당 30~40 파운드)
아사달	한식	227 High Holborn, WC1V 7DA	(+44)20 7430 9006	메뉴 당 10 파운드 수준 (인당 30~40 파운드)
브라운즈	영국식	47 Maddox Street, London, W1R 9LA	(+44)20 74914565	-점심:£15.00 -저녁:£25.00(음료제외)
심슨스	영국식	100 Strand, London, WC2R 0EW	(+44)20 78364343	-점심:£35.00 -저녁:£35.00(음료제외)

□ 기타 런던 시내 위치 주요 한국 식당

- 한강식당
 - 02076371985
 - 16 Hanway St, London, W1T 1UF
- 한강포차
 - 02076371410
 - 16 Hanway St, London, W1T 1UF
- 우정
 - 02078363103
 - 59 St. Giles high St, London, WC2 8LH

- 아랑
 - 02074342073
 - 9 Golden Square, London, W1F 9HZ
- KOBA
 - 02075808825
 - 11 Rathbone St. London W1T 1NA
- 키타로 스시
 - 02074374549
 - 26-27 Lisle Street, London WC2H 7BA
- 포장마차
 - 02073797381
 - 56 St. Giles high St, London, WC2 8LH
- 뉴서울
 - 02072788674
 - 164 Clerkenwell Road, London EC1R 5DU
- 아리랑
 - 02074376633
 - 31-32 Poland Street, London W1 3DB
- 나라
 - 02072871110
 - 9 D'arblay Street, London W1F 8DR
- 비원
 - 02075802660
 - 24 Coptic Street, London WC1A 1NT
- 명가
 - 02077348220
 - 1 Kingly Street, London W1
- 진
 - 02077340908
 - 16 Bateman Street, London W1D 3AH
- 앳싸
 - 02072408256
 - 53 St. Giles high St, London, WC2 8LH
- 가마
 - 02074309006
 - 135 Wardour St, London

아. 관공서 관행

- 일반인에게도 친절하며 뇌물수수 관행 없이 원리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에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다. 반면 간단한 사안이라도 모든 의뢰는 서류로 작성, 편지를 보내야 하므로 번거롭고, 문서업무처리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 따라서 관공서 업무는 반드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하며, 면담 필요 시에는 예약 후 방문토록 한다. 또한 서류(서한) 발송 시 수신인을 미리 확인해서 정확하게 지정 하는 것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다.

자. 공휴일

1) 2008년 영국(웨일즈 포함) 공휴일

New Year's Day	1월 1일
Good Friday	3월 21일
Easter Monday	3월 24일
Early May Bank	5월 5일
Spring Bank Holiday	5월 26일
Summer Bank Holiday	8월 25일
Christmas Day	12월 25일
Boxing Day	12월 26일

2) 현지 축제 등 장기 휴일로 주재국 방문을 피해야 할 시기

- 부활절휴가(3 월 말 ~4 월 중순), 여름휴가 기간(7~8 월)과 크리스마스와 새해(12 월 중순~1 월 첫째 주)에는 약속을 피하는 것이 좋다.

차. 여행시 유의사항

1) 위험지역 및 금기사항

- 런던은 생각보다 상당히 안정적이고 안전한 편이다. 그러나 런던 시내 SOHO 유흥가에서는 바가지요금과 폭력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으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으며, 관광객으로 붐비는 런던 시내 중심가와 전철 등에서는 간혹 소매치기를 당할 우려도 있으므로 고액권 지참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 한편 각종 운동경기(특히 축구)가 열리는 기간에는 축구팬들이 많이 모이는 술집이나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응원하는 팀이 다를 경우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그 외 최근 몇 년 새 흑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총기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조심하도록 한다.

2) 팁 관행

- 팁 관행이 엄격하지는 않으며 요금에 팁이 미리 포함되어 청구되는 경우 별도로 주지 않아도 된다. 서비스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음식값의 10% 정도를 팁으로 주면 무난하다.

3) 식수

- 영국인들은 수도물(Tap water)을 식수로 그냥 이용한다. 물에 석회질이 포함되어 불편하다면 별도로 생수(미네랄 워터)를 구입해야 한다.

카. 유용한 연락처

1) 주요 관공서

- 비즈니스/기업/규제개혁부(BERR)
 - 020-7215-5000
 - 020-7215-0105
- 관세청(HM Customs & Excise)
 - 020-7620-1313
 - 020-7895-5005
- 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 020-7238-3000
 - 020-7238-6591
- 기업등록소(Companies House)
 - 0870-3333-636
 - 02920-380-517
- 공업표준관리청(BSI)
 - 020-8996-9000
 - 020-8996-7400
- 통계청(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 020-7533-6363
 - 01633-812-863

2) 한국기관

- 한국대사관
 - 60 Buckingham Gate, London SW1E 6AJ
 - 020-7227-5500
- 한국무역관
 - 1st Fl, Brettenham house North, 12/13 Lancaster Place,
 - London, WC2E 7EN
 - 020-7520-5300
- 재영한인회
 - 1st Fl, Thames House, 63 Kingston Road, New Malden, Surrey, KT3 3BP
 - 020-8605-0050

- 한국관광공사
 - 3rd Fl., New Zealand House, Haymarket, London, SW1A 4QT
 - 020-7321-2535
- 대한항공
 - 66-68 Piccadilly, London W1V 0HJ
 - 020-7495-2299

타. 기타 유용한 정보

1) 비즈니스 쇼핑

□ 해로즈(Harrods) 백화점

- 위치: 87-135 Brompton Road, Knightsbridge, London, SW1X 7XL
- 가까운 지하철 역: 나이트 브리지(Knightsbridge)
- 주요 취급상품: 식품, 의류, 생활 잡화류 일체 (고급품 위주)
- 전화: (+44)20 77301234
- 1889 년 개점 이래 상류층 고객들을 위주로 한 영국 최고급 백화점으로 성장하였고 구 왕실납품 백화점이었다. 1985 년 이집트 부호 화이드 형제가 인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 아들이 다이애나비와의 영문을 남기고 함께 숨진 것으로도 유명함.

□ 포트넘 앤 매이슨(Fortnam& Mason) 백화점

- 위치: 181 Piccadilly, London, W1A 1ER
- 가까운 지하철 역: 피카딜리 서크스(Piccadilly circus)
- 주요 취급상품: 식품, 와인, 고급 생활용품, 액세서리 등
- 전화: (+44)20 77348040
- 1707 년 오픈한 300 년 전통을 자랑하는 백화점. 차, 소스, 와인을 비롯한 고급 기호품 이 유명하며 또한 전통 잉글리쉬 티를 즐길 수 있는 장소임.

□ 버버리 팩토리 샵(Burberry's Factory shop)

- 위치: 29-53 Chatham Place, Hackney, London, E9 6LP
- 가까운 지하철 역: 베쓰널 그린(Bethnal Green)
- 가까운 기차역: 해크니 센트럴(Hackney Central)
- 전화: (+44)20 89853344
- 기타 특이사항: 11a-6p Mon-Fri; 10-5p Sat 11-5

□ 릴리화이트(Lillywhite's)

- 위치: 24 Lower Regent Street, SW1Y 4QF
- 가까운 지하철 역: 피카딜리 서커스(Piccadilly circus)
- 주요 취급상품: 각 종 스포츠 용품
- 전화: (+44)20 78132233
- 기타 특이사항: 1863 년 개점 이래 1925 년로 현 자리로 이전. 6 층 규모의 대형 스포츠 전문매장으로 맨체스터나 토트넘을 비롯한 다양한 세계 유명 클럽의 축구 유니폼과 크리켓, 럭비 등 전통 영국 스포츠 장비 등을 저렴한 할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음.

□ 스톡-온-트렌트(Stoke-on-Trent) 도자기 마을

- 위치: 스톡-온-트렌트(Stoke-on-Trent)
- 각 팩토리 샵 위치: <http://www.thepotteries.org/factory.htm>
- 주요 취급상품: 각종 영국 전통 브랜드 고급 도자기 (Portmerion, Royal Doulton, Wedgwood 등)
- 연락처: Stoke-on-Trent Tourist Information Centre Victoria Hall, Bagnall Street, Stoke-on-Trent, ST1 3AD
- 전화: +44 (0)1782 236000
- 기타 특이사항: 런던에서 160 마일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 이동 시 약 3 시간 소요되며 도착 시 관광안내소에서 마을 지도를 수령하고 각 팩토리숍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다. 보통 차량 이동 시 5~10 분 거리 내에 여러 상점이 산재되어 있다.

□ 비스터 빌리지(Bicester Village)

- 위치: 50 Pingle Drive, Oxon, OX26 6WD
- 주요 취급상품: 각종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 할인 아울렛 (버버리, 던힐, 발리, 아쿠아스쿠텀, 페레가모, 베르사체 등)
- 전화: +44 (0) 1869 323 200
- 방문 방법:
 - 런던 말리본(Marylebone) 역에서 Chiltern Railways 기차를 이용(매 30 분 간격, 08:30 ~17:30)하여 Bicester North Station 에 하차 후 셔틀버스 이용(약 1 시간 15 분 소요)
 - 차량 이동 시 런던에서 고속도로(M40)를 이용하며 Exit 9 에서 A41 방향으로 진입하여 비스터(Bicester)방향으로 2 마일 직진하면 'Village Retail Park', 'Bicester Village Outlet Centre'사인을 확인할 수 있다. (약 1 시간 20 분 소요)
- 기타 특이사항: 처칠생가로 유명한 블렌하임 팰리스(Blenheim Palace), 셰익스피어 생가가 있는 스트라포드-어폰-아본 (Stratford-upon-Avon)과 인접하여 관광코스로 유명함.

2) 특산물

- 버버리, 아쿠아스쿠텀, 닥스, 던힐, 바버 등으로 대표되는 각종 면모 의류제품들이 유명
- Portmerion, Royal Doulton, Wedgwood 등으로 대표되는 도자기 제품이나 크리스탈 제품들 그리고 British Sterling silverware 들은 세계적으로 그 명성이 높다.
- 대표적인 농축산업국가이기도 한 영국은 감자 등 각종 농산물과 축산(가공)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섬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수산자원 또한 풍부하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제품들 부문 또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 세계 최고 수준의 관광산업을 통해 다양한 관광기념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보통 영국적 특색을 담은 인형들이나 수집품 등이 대부분이다.

파. 관광명소

1) 런던 시내 관광

런던 시내관광은 최소 2 박 3 일, 교외관광 2 박 3 일 등 평균 1 주일 정도가 소요되나 개인의 사정에 맞추어 조정, 취사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1 일 시내 관광은 1 인당 15~20 파운드

선인 순환관광버스(Hop-on, Hop-off)를 이용하는 것도 좋는데 시내 주요 명소별로 순환하며, 원하는 곳에서 내려서 관광한 후 다음 번 버스를 타고 계속 구경할 수가 있으므로 경제적이다. 빅버스(Big Bus), 오리지널 버스(Original bus)가 대표적이다.

한국인 관광 가이드 서비스 이용 시 승용차 1 대당 런던 시내 120 파운드, 시외 150 파운드이며 공항마중은 40 파운드 정도이다. 옥스포드 대학, 처칠 생가, 윈저성 등 런던 교외 관광 시 런던에서 기차나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당일 여행도 가능하며 관광버스의 경우 약 30 파운드이다.

템스 강변의 유람선 관광선도 빼놓을 수 없는 일정이며 시티 크루즈(City Cruise)가 웨스트민스터 다리 옆의 웨스트민스터 피어(Westminster Pier)에서 출발하여 그리니치 피어(Greenwich pier)를 왕복하며 시간은 편도 1 시간 15 분이 소요되며 성인 왕복 요금은 9 파운드(편도 7.50 파운드)이다.

영국 및 런던에 관한 관광 안내지도 책자는 영국의 관광공사 (British Tourist Authority: 64, St. James's Street, SW1, 전화 629-9691)에서 무료, 유료로 구할 수 있으며 "Time Out", "What's on" 등의 주간지도 유용하다.

□ 대영박물관(British Museum)

1753 년 한스 슬로안 경이 평생 수집한 골동품을 국가에 헌납하면서 설립되었으며, 1847 년 개축되었다. 박물관 운영에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면서도 입장료가 없다. 상형문자를 해독하게 된 로제타 스톤(Rosetta Stone), 헨델의 메시아원본, 이집트의 미이라 및 라머니즈 2 세 석상,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대헌장(Magna Carta), 셰익스피어의 친필원본,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본 등이 있다. 소규모지만 한국관도 설치되어 있으며 사랑방 건축물과 고려청자, 청화 백자, 철보 자개함 등 국보급자료와 조선시대 초기 작품으로 사천왕상등이 전시되고 있다.

□ 버킹검 궁(Buckingham Palace)

버킹검 궁은 1837 년 빅토리아 여왕이후 영국 왕 및 여왕의 런던관저이다. 원래는 1703 년에 건조된 버킹검 공작(Duke of Buckingham)의 사저였으나, 조지 3 세가 1762 년 왕비 사르롯을 위하여 버킹검 하우스(Buckingham House)를 매입, 관저가 아닌 사저로 이용하였으며 현대의 왕궁 건축은 조지 4 세가 채용한 존 나쉬(John Nash)의 설계에 따라 1825 년 시작되었으며 기본적인 골격은 House 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버킹검 궁 앞 정면 도로 중앙의 금빛 동상은 빅토리아 여왕의 기념비로 빅토리아 왕조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버킹검 궁 앞 오른쪽의 공원은 460 년 전에 조성된 왕실 공원으로 장미꽃이 특히 잘 가꾸어졌으며 세인트 제임스 공원(St. James Park)으로 불린다.

□ 수상 관저(No.10 Downing Street)

다우닝 가를 건설한 17 세기 크롬웰 시대의 정치가이며 외교관이었던 조지 다우닝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조지 2 세가 당시 수상 월폴(Sir Robert Walpole)에게 관저로 기증, 1735 년 월폴 수상이 입주한 이래 많은 수상(웰링턴, 디즈레일리, 레드스톤 등)이 이곳을 관저로 사용하였으며 1902 년 발포어 수상 이래는 모든 수상이 정식 수상 관저로 사용하고 있다.

□ 국회의사당(House of Parliament)

의회 민주주의의 산실, 영국 정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사당 건물은 원래 약 1,000 년 전 참회왕 에드워드를 위하여 궁전을 지은 것이 시초이다. 그 후 1,500 년대 초 헨리 8 세 때까지 왕궁으로 사용되었으며, 지금의 건물은 1834 년 화재로 전소된 뒤 찰스 배리 경(Sir Charles Barry)의 설계로 1840 년에 착공하여 요크셔 산 석회석을 재료로 1888 년 완공되었다. 웨스트민스터 다리 쪽에 빅벤(Big Ben)으로 불리는 큰 시계탑이 15 분 마다 타종을 하며, 국회가 개원중일 경우 낮에는 빅벤 반대편의 빅토리아 타워에 영국기가 게양되고 밤에는 빅벤에 전등불이 켜진다.

□ 웨스트민스터 대사원(Westminster Abbey)

1065 년 참회왕 에드워드가 교황의 후원으로 왕위에 오른 다음 그 답례로 성지순례를 약속하였으나 지키지 못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건립하였다. 잉글랜드를 정복한 노르망디 공 윌리엄이 1066 년 이곳에서 대관식을 가진 이래 역대 영국 국왕이 이곳에서 대관식을 가진다. 중세에는 베네딕트 승려들의 수도원으로 사용되었으며, 지금도 매일 미사가 거행된다. 역대 국왕 및 그 가족 32 명과 영국이 배출한 위인들의 무덤 또는 기념판(아이작 뉴턴, 찰스 다윈, 제프리 초서 등의 무덤과 윈스터 처칠, 셰익스피어등의 기념 판)이 있다.

□ 성 바울 성당(St. Paul's Cathedral)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성당으로 원래는 이 자리에 목조교회가 있었으나 1666 년 대화재 때 다 타 버리고 그 자리에 유명한 옥스퍼드대학 출신의 천문학자이자 건축가인 크리스토퍼 렌(Christopher Wren)경이 르네상스 양식으로 1675 년 착공, 35 년간에 걸쳐서 1710 년에 완성한 17 세기 건축의 걸작이다. 로마의 산 피에트로 사원, 피렌체의 두오모 사원과 함께 세계 3 대 사원으로 불리며 특징적인 거대한 돔의 높이가 120m, 직경 34m 에 달한다.

이 성당에서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 비가 결혼식을 올렸으며,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웰링턴, 넬슨 제독 등 영국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빛낸 위인들이 지하실 납골당에 잠들어 있다

□ 타워 브리지(Tower Bridge)

런던타워 앞쪽에 있는 빅토리아 식의 우아함이 뛰어난 아름다운 다리인 타워브리지는 1894 년에 완성되었으며, 250m 길이에 올려지는 다리 하나가 1,000 톤의 무게로서 완전히 올려지는데 90 초가 소요된다. 100 여 년 전에 이런 다리가 필요하게 된 이유는 템즈강이 조수 간만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밀물 때와 썰물 때의 수심 차이가 최고 6m(다리와 강 수면과의 차이는 10m)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배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다리를 들어 올리게 된 것이며 현재도 종종 다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 런던타워(Tower of London)

총면적 22,000 여 평에 지어진 런던타워는 1078 년 정복 왕 윌리엄이 노르망디로부터 건너와 왕위를 차지한 다음 런던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시티 지역에 세운 성으로서 260 여 년 간 증·개축되어 에드워드 1 세 때 현재의 외벽이 완공되었다.

런던 타워는 모두 20 개의 탑으로 이루어져 있고, 왕궁, 동물원, 화폐주조창, 문서보관 창고, 감옥 등 그 용도가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천되어 왔다.

□ 빅토리아알버트 박물관(Victoria & Albert Museum)

이탈리아 르네상스식의 건물로 1851 년 영국 대 박람회를 기념하여 1866 년에 지어졌으며 런던에서 미술품박물관으로서 유명하다. 빅토리아 여왕과 그 남편인 알버트 공의 이름을 따서 빅토리아알버트 박물관으로 명칭 하였다.

박물관은 크게 2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Primary Galleries'는 여러 가지 다른 작품을 시대 스타일 별로 전시한 이른바 일반 취향의 컬렉션이며, 'Study Galleries'는 특히 흥미 있는 분야를 좀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한 컬렉션으로 되어 있다.

□ 국립미술관(National Gallery)

1823 년 조지 뷰몬트경은 영국정부가 'National Gallery'를 짓는다는 조건으로 그의 소장품을 기증하겠다고 했는데 1824 년 오지리가 예기치 않게 전시 부채를 상환하자 영국정부가 그 돈으로 존 줄리어스 앵거스틴이 소유하고 있던 유명작품 38 점을 매입한 것이 National Gallery 의 기초가 되었다. 현재는 2,000 여 점이 넘는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장소에 비해 작품이 너무 많은 관계로 일시에 전시하지 못하고 타 미술관에 대여를 해주기도 하며, 일부는 창고에 보관하면서 순환전시 하고 있으며, 초기 르네상스 시기의 이탈리아, 네덜란드, 17 세기 스페인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교외 관광

□ 윈저성(Windsor Castle)

1090 년대 초에 윌리엄 1 세가 런던 외곽 지역을 방위하기 위하여 지었으며, 처음에는 목조로 건축되었으나 헨리 2 세 때 석조로 개축되었고 19 세기 초 조지 4 세 때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되었다. 현 엘리자베스 2 세 여왕은 주로 주말 휴식처로서 윈저성을 사용하고 있으며 윈저성은 외국 국가원수를 맞이하는 영빈관의 역할도 하고 있다. 성 중앙의 라운드 타워에 여왕의 집무실이 있으며 그 곳에 왕실깃발이 게양되어 있으면 여왕이 성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표시이다.

□ 이튼 칼리지(Eton College)

윈저성에서 템즈강을 건너 약 10 분 거리에 있다. 1440 년 헨리 6 세에 의해 주변 마을의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설립되어 70 명의 장학생들이 4 개의 기숙사에서 공부한 것이 이튼 칼리지의 시초이다. 그 후 영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립 중고등학교로 변모하였고 영국의 귀족과 상류 계층의 자제들이 모여 공부 1,200 명으로 정원이 늘어났으나 70 명의 왕실 장학생은 유지되고 있다. 학생 전원이 기숙사생활을 하고 있으며 행사 때는 나비넥타이에 연미복을 입고 까만 구두를 신은 예비신사로 변모한다. 이튼 출신의 웰링턴 장군이 '워털루 전투의 승리는 전장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튼의 교정에서 얻어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윌리엄 왕자도 이 학교를 졸업하였다.

□ 옥스퍼드와 캠브리지(Oxford & Cambridge)

유서 깊은 대학도시로 유명한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는 전형적인 대학가로서 런던에서 1 시간 정도 소요되는 서부, 동북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옥스퍼드는 도시 전체에 42 개 칼리지(College)가 흩어져 있으며 옥스퍼드의 11 만 5,000 명의 인구 중 1 만 3,000 명이 학생이고 2,000 명이 학교의 직원이다. 두 도시 다 고색창연한 각 대학건물이 볼거리를 제공하며 특히 캠브리지는 캠(CAM)강의 펀트(PUNT)뱃놀이가 유명하다.